4 독일통일 총서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4 독일통일 총서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4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레드클립 (전화 02-324-7881)

CONTENTS

I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인프라 재건의 의미 12

제1절 논의의 필요성과 의미 12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4

제2장 통일 전 동서독 국토관리의 특징 비교 19

제1절 분단기간 사회주의 동독의 국토발전 과정 19

제2절 사회주의 동독 국토계획체계의 특징 22

제3장 동서독 인프라 재건의 과정과 내용 25

제1절 통일 당시의 동서독 인프라 상황 25

제2절 통일과정에서 결정된 인프라 분야 주요 정책 28

제3절 통일 이후 독일 인프라 재건의 주요 과제 31

1. 소유권 정립 및 토지주택의 사유화 31

2. 주택개발 및 주거지원 44

3. 도시정비 51

4. 농촌정비 62

5. 교통 인프라 개발 64

6. 통일 수도 70
7. 산업입지 개발 77
8. 수자원 87
9. 환경개선 89
10. 접경지역 94
11. 제도통합 99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03
제1절 인프라 재건의 성과와 과제 10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2

Ⅱ 구 동독지역 인프라 구축과 동부 재건 프로젝트

들어가며 124

제1장 문제점 및 배경 128
제1절 구 채무와 소유권의 문제 129
제2절 수입과 지출의 문제 136
제3절 철도와 우편 137

제2장 동부 도시재건 139
제1절 동부 도시재건 배경 139
제2절 연방정부–연방주 공동사업 “동부 도시재건” 143

제3장 동부 재건 프로젝트 148
제1절 동부 재건 사업의 조정, 계획 그리고 협력 148
제2절 동부 재건 사업의 경과보고서와 평가서 154
제3절 사업 준비단계에서의 예측과 잘못된 계획 158
제4절 동부 재건 사업의 전망 160

제4장 결어 166

CONTENTS

III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70

문서 요약 182

1. 소유권(문서번호 1a~11) 182
2. 주택건설과 주택수당 지원(문서번호 12~21) 191
3. 도시 개량(문서번호 22~25) 197
4. 농촌지역 개량(문서번호 26~28) 201
5. 사회기반시설 발전(문서번호 29~39) 204
6. 통일독일의 수도(문서번호 40~48) 212
7. 산업지원(문서번호 49~53) 219
8. 수자원(문서번호 54~55) 224
9. 환경정화(문서번호 56~71) 226
10. 경계지역(문서번호 72~76) 240
11. 연관체계의 통합(문서번호 77~80) 245
12. 추가 자료(문서번호 81~100) 249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1–1〉 통일 당시 동서독의 주요 지표 비교(1989) 26
표 1–2〉 토지소유권 관련 규정 및 법률 37
표 1–3〉 통일 초기 주택 사유화 실적(1991–1994) 39
표 1–4〉 구 동독 연방주별 프로그램 수혜 대상 지자체 수 59
표 1–5〉 '구 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의 지원금 규모와 지자체 선발기준 59
표 1–6〉 '구 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 평가기준 및 도시개발구상의 목차 61
표 1–7〉 구 동서독 교통시설 비교 65
표 1–8〉 통일독일의 수도이전 과정 71
표 1–9〉 연방정부 기능의 본–베를린 분산배치 73
표 1–10〉 본과 베를린 간의 일자리 이동과 이주 73
표 1–11〉 연방기관의 건설 비용 76
표 1–12〉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산업입지 여건 79
표 1–13〉 통일 이후 구 동서독의 고용구조 변화 비교 79
표 1–14〉 통일 초기 구 동독의 고용구조 변화(1989–1994) 80
표 1–15〉 구 동독에 대한 주요 경제지원 수단 81
표 1–16〉 구 동독에 투자한 기업들의 입지조건 평가 86
표 1–17〉 집합하수시설과 정화시설의 공급비율 88
표 1–18〉 통일 당시 동서독의 환경기반시설 비교 92
표 1–19〉 구 동독의 인구 전출입 변화(1990–2002) 104
표 1–20〉 부문별 동서독 변화의 특징 105
표 1–21〉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주요 지표 변화 106
표 1–22〉 통일 이후 구 동서독의 인프라 수준 비교(2000–2001) 107
표 1–23〉 독일통일 비용 내역(1991–2003 추정치) 111
표 1–24〉 분야별 시사점 종합 118

표 2–1〉 신연방주의 최상위 도시개발계획관청 149
표 2–2〉 지역계발계획을 위한 구 동독지역의 담당기구 150
표 2–3〉 신연방지역의 지역개발계획 현황(2008년 3월) 153
표 2–4〉 경제지수(서독을 기준으로 본 신연방주의 상황–서독을 100으로 볼 때) 157
표 2–5〉 신연방지역에서 서독으로의 인구이동–1989년에서 2011년까지 165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1–1〉 구 동독 도시들의 낙후된 주거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51
그림 1–2〉 구 동독 주요 도시의 교외지역 인구 변화 53
그림 1–3〉 독일의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의 분포 55
그림 1–4〉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거지의 개선 사례(Eberswalde) 56
그림 1–5〉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 대상도시 57
그림 1–6〉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 적용사례 58
그림 1–7〉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 추이 58
그림 1–8〉 '구 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 지원대상 도시들의 분포 60
그림 1–9〉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VDE)'의 내용 67
그림 1–10〉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부(BMU)의 지원(1990–1992) 94
그림 1–11〉 1989~2009년 동서독지역 간 인구이동 104
그림 1–12〉 구 동서독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만족도 비교 108
그림 1–13〉 라이프치히 북부 교외지역의 BMW자동차공장 109
그림 1–14〉 대도시지역 작센삼각주(Die Metropolregion Sachsendreieck) 110
그림 1–15〉 도심 공가 철거와 녹지 공간 확보 112
그림 1–16〉 구 동독의 주민 1인당 건설투자 추이(구 서독=100) 114
그림 1–17〉 통일 이후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주민 1인당 투자액 추이 114

그림 2–1〉 위기단계와 대응조치 125
그림 2–2〉 독일 도시의 빈곤 위험도 비교 140
그림 2–3〉 주거환경의 변화에 관한 평가 146
그림 2–4〉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146
그림 2–5〉 2011년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게마인데의 수 147
그림 2–6〉 실행된 프로그램의 수(2011년도 포함) 147
그림 2–7〉 지원된 프로그램의 수(2011년도 포함,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분류) 147
그림 2–8〉 신연방주의 생산성 수준–서독의 생산성과 비교(1995–1998) 156
그림 2–9〉 독일에서 신연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율–1996년 기준 161

지도 1〉 연방주 별 수입 고용 안정도 163

독일통일 총서 4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준
(국토연구원)

제1장

인프라 재건의 의미

제1절 논의의 필요성과 의미

1990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통일 직전까지도 금세기 안에 통일이 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통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독일 학자들은 한국이 통일에 미리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점을 큰 기회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에 대비한 정책 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의 준비측면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올 지도 모르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는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각 분야별로 통일상황을 전제로 어떻게 상황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교통 인프라의 개발, 주택 및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국토분야에서 제기될 많은 정책과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개발을 위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관련 정책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통일을 전후한 정부의 정책 관련 문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우리

에 맞는 정책을 미리 개발함으로써 향후 통일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정책개발에 있어서 독일의 사례는 매우 많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관련된 분야는 주택 등 생활 관련 기반시설, 도로 및 철도 등 생산 기반시설 등 물리적 시설의 이용과 산림, 하천 및 연안지역 등을 포괄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토를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국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과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토분야의 남북통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간의 경제적 통합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 기반시설(infrastructure)[1]은 경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영역으로서 한 국가의 경제체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다.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경제적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제도적 통합과 함께 물리적 통합이 완료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분야의 통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 간의 사회적 통합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분단된 지역이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정상화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도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경우 통일 이후 구동독 주민들이 구 서독지역 주민들과 비슷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동서독 간의 사회심리적 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물리적 환경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이질성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완성은 국토분야의 통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이다.

셋째, 통일국가의 국토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분단된 국가의 공간적 통합은 통일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동서독의

[1] 이 글에서는 기반시설이라는 용어와 인프라,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경우 통일을 통해 독일의 중동부유럽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바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국토통합은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국토분야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통일독일에서는 어떠한 정책수단들이 발굴되고 시행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단의 효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개되는 독일의 관련 제도들은 우리의 통일대비 정책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독일과 국내에서 진행된 독일의 인프라 재건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에서의 주요 연구결과

통일 이전까지 독일 내에서 통일에 대비한 국토분야의 논의나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통일의 가능성을 그 누구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토분야 통합 관련 연구는 통일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주로 도시 및 지역 개발, 산업입지 개발, 인프라 개발,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독일 내에서 국토분야 통합 관련 연구는 한국의 국토연구원과 유사한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독일연방건설청(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BBR)[2]의 정책연구부서(2009년 이후 독일

[2] 독일 연방건설청은 독일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 및 조사, 역사

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로 개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기관에서 1990년대에 발간한 '신연방주의 지역지표(Regionalbarometer neue Länder)'는 구 동독의 국토분야 변화를 모니터링한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이 기관이 통일 20년을 맞아 국토분야의 공간변화와 과제를 다룬 '독일통일 20년의 회고(20 Jahre deutsche Einheit-zwei Dekaden im Rückblick)'도 통일의 성과와 과제를 기술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외에도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독일통일에 대한 연차보고서(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도 국토분야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분야를 포함한 독일연방정부의 공공투자 관련 주요 연구결과물로서 최근에 발간된 '지역별 공공투자 및 세입(Regionalisierung von öffentlichen Ausgaben und Einnahmen-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Neuen Länder)'도 구 동독 개발의 성과와 통일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U. Blum and J. Ragnitz ed.(2009)).

지역개발 및 산업입지 정책과 관련한 주요 연구들에서는 통일 이후 구 동독을 독일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구 동독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요 연구들에서는 노후 시가지의 재개발, 유휴주택의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서 다루어졌다. 특히 노후 주택과 시가지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구 서독 등 타 지역으로의 이주와 교외화현상으로 인해 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생활 기반시설이 유휴시설이 되는 새

건축물의 관리, 재외공관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98년 이 기관은 독일 연방지리공간연구원(Bundesforschunsanstalt für Landeskunde und Raumordnung)과 건설부의 건축관리청과 통합되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국토공간정비보고서를 2~3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2009년에 독일연방건설청의 연구기능이 독립적인 공공연구기관인 독일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로 재편되었다.

로운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처도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독일의 인프라 개발 정책과 관련한 주요 연구들에서는 구 동독의 도로, 철도망의 확충과 동서독 간의 연결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노후된 구 동독의 인프라를 구 서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와 관련된 주요 연구들에서는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사유화는 통화 통합 및 사회복지 통합과 더불어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과제로서 다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 독일의 국토분야 연구들은 통일 이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구 동독 개발을 독일 내 지역균형 차원의 과제로서 다루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들은 지난 20년 동안 국토통합의 성과를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성장동력 약화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2.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 주요 결과

국내의 인프라 재건 관련 독일사례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토 및 지역 정책, 도시 정책, 산업입지 개발 정책, 인프라 개발 정책,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 정책, 인구이동 안정화 관련 정책, 통일수도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토 및 지역 정책 전반의 동향에 대한 주요 연구들에서는 통일 이후 국토분야의 주요 과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자료 부족으로 세부적인 정책수립 관련 문건과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주독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부 관련 문건들이 입수되어 소개된 바는 있지만 인프라 재건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하였다. 독일사례가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배경이 된

논의와 관련된 문건과 담당부처의 계획수립, 실행과 관련한 문건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통일 독일의 도시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주요 연구들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일부 관련 문건을 번역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적인 도시개발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문건 등의 구체성 있는 자료 확보가 미진하였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립되기까지 이루어졌던 관련부처의 논의와 관련한 문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문건 확보가 당시에는 부족하였다.

1990년대까지 통일독일의 산업구조 재편과 기업민영화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산업입지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극히 미약하였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입지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기본적인 여건 차이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통일 이후 구 동독 산업입지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교통개발 등 인프라 개발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요 연구들에서는 교통부문의 성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인프라 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배경, 추진 과정, 실적 평가 관련 연구가 부족하였다. ‘통일교통 프로젝트’ 등 교통분야의 관련 정책 소개 외에 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타 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된 편이고 비교적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독일의 관련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관련 논의 등 정책적 배경과 추진실적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통일 수도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포괄적으로 수도이전의 경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전결정 관련 절차와 과정, 이전의 실적과

평가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외에도 독일의 국토분야 관련 세부 분야 가운데 농촌, 산림, 수자원, 환경 관련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이다.

독일의 국토분야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수준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각종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독일정부의 관련 문건 등 추가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2장

통일 전 동서독 국토관리의 특징 비교

제1절 분단기간 사회주의 동독의 국토발전 과정

통일 이전의 분단기간 동안에 동독이 어떠한 국토발전을 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 당시의 동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1949년에는 각각 서독정부와 동독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시점부터 동서독은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걷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해 간 반면에, 동독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해 왔다.[3]

서독의 경제발전은 산업의 특화(Spezialisierung),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생산지향적 서비스의 확대, 국제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데 반해 동독의 경제발전은 대규모 생산구조(콤비나트), 자급경제 지향, 세계 경제시장과의 단절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이상준, 1997). 동독정부는 1960년대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정책을 추진하였다. 행정체계를

[3] 이하 제1절의 주요 내용은 이상준 외, 통일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국토연구원, 2000, pp.7-10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중앙집중형으로 재편하기 위해 기존의 5개 주(Länder)[4]를 15개 관구(Bezirk)로 변경하고 지방의 자치기능을 상당부분 제거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구획화'를 위해 각 도별로 산업특화를 추진하였으며, 산업입지 정책에 있어서 자원생산지와 상품생산지를 최대한 근접시킴으로써 운송경로의 단축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철강, 석탄, 가스,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단일경제구조를 지닌 산업지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의 집단화를 위해 농업생산협동조합(LPG: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이 조직되었다.[5] 1970년대에는 공업화가 미약한 농촌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기존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정권수립 이전부터 농업중심의 낙후지역이었던 북부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과 노이브란덴부르그(Neubrandenburg) 일부 지역의 공업생산이 1975년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방식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지역균형 개발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는 특정 프로그램 형태로 기존 대도시 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추진된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은 상대적으로 주변 중소도시에 있는 주거지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에 농촌지역에서는 기존 농업생산협동조합들의 통폐합을 통한 생산단위의 대형화가 추진되었다.

---

[4] 5개 주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튜링겐(Thüringen),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등이다.

[5] 통일 직전인 1989년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은 농업인구의 84%를 고용하고 있었고, 전체 경작지의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Strubelt, Wendelin et. al., Städte und Regionen, 1997, p.226.)

전체적으로 볼 때, 분단기간 동안 서독과 동독에서 각각 수립되고 시행된 국토 및 지역 개발 관련 계획들은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생활여건을 창출한다'라는 공통적 상위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독의 국토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치·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청소재지 등 일부 도시에만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도시농촌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동독시절에 나타난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한 불균형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6]

동독 내에서 남부지역의 공업기능과 북부지역의 농업기능은 이미 사회주의정권 수립 이전인 20세기 초반부터 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지역경제 구조는 사회주의 시절 40년간 더욱 고착되었다.[7] 전체적으로 분단기간 동안 동독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 개발을 추진한 결과 공업중심의 남부지역과 농업중심의 북부지역 간 격차 문제가 심화되었다.[8] 반면에 서독은 연방체제 하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일정 수준 달성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였지만, 동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6] 현재 북한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과 기타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7] 독일제국 출범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산업화과정(1871~1914)에서 동독 남부지역에서는 공업이, 북부지역에서는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8]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동독에서는 높은 비율의 단일산업(중공업 및 농업) 중심지역 및 남부지역으로의 과도한 공업집중, 도시와 농촌 간의 심각한 주거지 격차 및 기존의 중심지에 대한 투자의 집중,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환경문제의 심화 등이 지역개발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2절 사회주의 동독 국토계획체계의 특징

통일 이전에 서독은 이미 '다핵적 주거지체계(polyzentrales Siedlungssystem)'를 기반으로 균형 있는 국토공간구조를 갖고 있었다.[9] 이것은 체계적인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분권적 행정구조와 '재정균형(Finanzausgleich)'제도 등을 바탕으로 이룩된 성과이다. 또한 안정적인 지역별 인구성장도 이러한 균형적인 국토공간 구조의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동독의 '국토계획(Territorialplanung)'은 서독의 국토계획인 '공간정비계획(Raumordnung)'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계획수단이었다. '국토계획'은 국가발전계획의 한 부분이었으며, 이른바 '민주적 집중주의(demokratisches Zentralismus)'의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10]

동독의 '국토계획'은 전체적인 국토공간 발전에 대한 국가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내각회의의 위탁을 받아 국가계획위원회(Staatliche Plankommission)에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부문별 내용들은 생산력의 입지배분(중·단기계획 및 예측), 5천만 마르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공간적 배분, 관구별 경제발전의 평가, 중앙 조직체들과 관구위원회들 간의 협조 등이다. 산업부문, 콤비나트의 입지계획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담당장관들과 콤비나트 경영층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국토계획'은 현지 행정조직들에 의한 지역 및 지방계획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관구건설국의 도시건설과, 관구교통국의 교통계획과 등이 수립한다.

---

[9] 서독은 프랑스(파리), 영국(런던)과 같은 단일 대도시 중심적 정주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12개 도시, 인구 10만 이상의 58개 도시, 그리고 수 많은 중소도시들로 구축된 다핵적 정주체계를 갖고 있었다. 동독의 경우에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분산적 정주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간 균형성은 낮았다. Bundesministerium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Raumordnung in Deutschland, Bonn 1996, p.13.

[10] 통일 이전인 1989년에 동독은 15개의 관구(Bezirke)와 7,56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 Gemeinde)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레닌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집중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한 것이었다.

통일 이전 동독의 '국토계획(Territorialplanung)'체계[11]는 서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동독시기에는 국토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전 국토에서 균형 있는 삶의 조건을 창출"한다는 서독의 국토정책의 목표와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기준의 균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12] 이 때문에 서독의 공간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상호보완원칙(Gegenstromprinzip)'에 따른 상하위 계획 간의 상호 조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서독과 비교해서 동독의 국토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가들은 기본적으로 중앙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동독 내의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동독의 지역생산은 사회주의정권 수립 이후 구축되기 시작한 농업 및 공업의 단일산업지대(집단농장 및 콤비나트)와 환경오염이 심한 구 산업지대에서 이루어졌다. 동독시기에 신규투자가 이루어진 콤비나트들과 구 산업지대 간의 성장 격차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국토계획'은 이러한 지역 간 균형개발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동독시절에 지역의 공간개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은 집권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과 관구 및 크라이스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역의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개발과제들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립이 야기되기도 하였

[11] 이 부문은 Heil, Karolus, Puck, Günter, Welch Guerra, Max(Hrsg.), Planung zwischen DDR und BRD, Berlin, 1992)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12] Strubelt, Wendelin, "Regionale Disparitäten zwischen Wandel und Persistenz", in: Städte und Regionen, Opladen, 1996, p.16.

다. 지방 행정조직의 재정은 항상 취약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였다. 계획 및 지휘체계에 있어서 현지 행정조직들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국토계획'은 이른바 위로부터 아래로 진행되는 '민주적 집중주의'의 구도 하에서 지방 행정조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1960년대 중반에는 '국토계획'에서 크라이스(Kreis)가 지방 행정 단위로서 어떠한 자치적 역할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계획체계의 비민주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의 크라이스를 포괄하는 '경제지역'이 설정되어 '국토계획'과 공간개발은 철저하게 경제계획에 종속되었다. 중앙정부에 의해 '경제지역'을 위한 국토계획이 추진되었는데, 경제정책에 치우친 정책과제들이 '국토계획'에 부과됨에 따라 '국토계획'의 고유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61개의 '경제지역'들은 관구 및 크라이스 등의 행정영역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제3장

동서독 인프라 재건의 과정과 내용

제1절 통일 당시의 동서독 인프라 상황

공식적인 통일(1990) 직전인 198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동서독의 전체 인구는 약 7,868만명, 면적은 356,840㎢ 였다. 동서독 간의 비교에 의하면, 인구에서 동독은 서독의 약 1/4, 면적은 약 44% 수준이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서는 동독이 서독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산업구조도 동독은 1, 2차 산업 중심으로 3차 산업 중심의 서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통일 당시 동독의 산업구조는 농림업 및 중공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미약한 구조로서, 서독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비슷하였다. 서비스업이 미약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유재산권과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민생활 서비스시설들을 국영기업이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까지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선진적인 공업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통일 후 실사결과 동독의 산업시설은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 직전 동독기업들의 전체 가치는 1,200조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일 후 은폐되어왔던 많은 부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계설비의 노후, 공장건물의 노후, 생산방식의 비효율 등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국영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으로부터 파생된 측면도 있다.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통일 당시 동독의 교통 인프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남북방향에 비해 동서방향의 교통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서독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크게 노후되었다. 그리고 통일 당시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시절 동안 은폐되었던 환경오염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표 1-1〉 통일 당시 동서독의 주요 지표 비교(1989)

구 분		서 독	동 독
인 구(천명)		62,063	16,614
면 적(㎢)		248,252	108,588
인구밀도(인/㎢)		250	153
전체취업자 수(만명)		2,774.2	888.6
고용구조	1차산업비율(%)	3.9	10.8
	2차산업비율(%)	39.7	50.4
	3차산업비율(%)	56.4	38.8
1인당 GDP($)		19,283	5,840
1인당 주거면적(㎡)		36	28
제2차세계대전 이후 건축된 주택비율(%)		70	35
가구소비재수준	전화보유비율(%)	99	17
	자동차보유비율(%)	96	54
	TV보유비율(%)	99	96
국토면적당 총도로연장(km/1,000㎢)		698.8	437.0
국토면적당 총철도연장(km/1,000㎢)		255.8	229.7
전철화율(%)		42	25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FAZ-Informationsdienste 1990, 1991.
배진영, 통일이 동, 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1994, p.85에서 재인용. 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1990, p.322에서 재인용.
통계청, 통독 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1996, p.143.
Wessel, Karin, "The German Unifica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astern Germany", 국토연구 제26권, 1997, p.181.
이상준 외, 전게서, 2000, p.28 재인용.

동독의 환경오염은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환경정보 비공개'와 석탄중심의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갖고 있었다.[13] 동독시절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적절한 환경정화시설 없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갈탄을 주 연료원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통일당시 동독은 서독에 비해 광공업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특유의 완전고용 등 체제의 비효율이 포함된 결과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시점에 동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로 체제전환을 맞게 되었다.[14]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 새롭게 시장경제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간 발전여건의 우열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절 중공업과 대규모 농업생산 중심지로 발전하였던 지역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 반면에 서비스, 관광, 연구·교육 기능이 발달했던 지역들은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 초기 구 동독의 개발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다. 통일 이후 6년 동안 공공부문에서만 1조 1,700억 마르크(640조원 가량)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사실상 구 동독 경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추산에 따르면 이 시기에 구 동독 사회생산(Sozialprodukt)의 2/3, 국내수요의 46%는 서독지역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5]

---

[13]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서방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을 본 동독은 자국 내 석탄생산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구축해갔다.

[14] 구 동독은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동유럽에 인접하여 지경학적 잠재력이 높고, 노동력의 양적, 질적 수준이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 높았으며, 저개발 지역에 대한 추가적 개발잠재력도 높았다. 반면에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준이 서독에 비해 크게 낮았고, 주로 농업과 중공업에 의존한 경제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15] 연간 서독지역 총 사회생산(Bruttosozialprodukt)의 6%가 동독으로 이전되어 구 동독주민 1인당 대략 11,000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제2절 통일과정에서 결정된 인프라 분야 주요 정책

1989년 11월의 베를린장벽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 10월의 공식적인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동서독은 통일국가의 골격과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은 우리의 통일 관련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서독정부는 1989년 11월 28일 발표한 10개 항의 통독방안에서 구 동독의 주민탈출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독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동서독을 통합하는 조심스러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 향하는 동독주민들의 이주자 수는 1990년에 40만명에 이르렀다. 동독 주민들은 단계적인 통일보다는 즉각적인 통일을 원한 것이다.

정치적인 동서독 통일의 토대가 될 사회·경제부문의 통합과정은 통일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1990년 5월 18일 체결되고 7월 1일부터 발효된 '동·서독 간의 통화·경제·사회 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m 18. Mai 1990)'은 화폐통합과 사회복지체제의 통합을 중심으로 양독 간의 실질적인 통일을 담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경제부문의 통합정책은 서독주민들에게는 과도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동독주민들에게는 대량실업[16]과 경제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안겨주는 문제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부문의 통합정책은 구 동독 주민들이 구 동독에서 낙관적 미래를 바라볼 수

[16] 통일 이후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구 동독지역의 근로자 수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890만명에서 610만명으로 약 31%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은 460%나 증가하여 1992년에는 연간평균 135만명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석탄광업, 섬유산업, 조선업부문의 근로자들이었다.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이에 따라 동독탈출의 이주추세를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1. 재산권에 관한 정책

통일의 과정 속에서 통화통합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 동독의 재산권 처리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독 시절에 부당하게 국유화되었던 부동산을 원소유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실적인 소유권회복이 힘든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독일의 통일에 대한 조약'에서는 공공목적 및 주택건설을 위해 이용되었거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지 및 건물들의 소유상태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이 조약 제25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이하 신탁법(Treuhandgesetz, 1990.6.17)'이 제정되어 국유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제시하였다. 이 신탁법에 따라 국영기업들의 사유화가 추진되었다.

독일의 신탁법에는 구 동독의 자산 사유화에 대한 기본 방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활동의 복원이 제시되어 있다. 민영화를 통해 국가의 기업적 활동을 가능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창출이다. 가능한 다수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함으로써 고용기회의 보장 및 신규창출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의 적정분배이다. 토지를 경제적 목적에 부합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유재산의 활용이다. 경제의 구조조정과 국가예산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 2012). 신탁청(THA)의 정책은 구 동독 주요 산업의 핵심분야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조선소, 철강, 자동차 분야, 예나(Jena)의 칼 자이스(Carl Zeiss)사 및 전기시설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민영화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지역들이 보존되었고 새로운 기업들의 투자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1993년까지 1만개 이상의 기업 및 기업들의 일부, 그리고 약 1만 건의 부동산이 민영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거의 1,600억 마르크에 달하는 투자보장과 130만 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유지가 가능하였다.[17]

2. 공간개발에 관한 정책

통일 과정에서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정책방향도 빠른 속도로 제시되었다. 1990년 5월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통화·경제·사회 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정서에서는 구 동독에서의 건설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들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통일(1990년 10월 3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서독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여 건설활동이 허가되었으며, 서독의 공간정비법(Raumordnungsgesetz)과 건설법전(Baugesetzbuch) 등의 공간개발 관련 제도들을 기준으로 구 동독에서 새로운 공간개발 계획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통일 직후 독일 공간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독일 전체에서 균형 있는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구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된 구 동독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통일 이전에 서독지역 내에서 추진되던 지역 간 균형발전이 통일 이후 독일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전환되었고, 구 동독의 사회경제적, 공간적 발전과 구 서독과의 균형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17] 민영화와 기업 개선을 통해 생존능력이 있는 기업의 신속한 경쟁력 창출에 의한 핵심산업의 보장 (2012년 12월 10일) 1990-1994년도 문서, 제11권, pp.706-713, 베를린: 신탁청, 1994(문서번호 50).

제3절 통일 이후 독일 인프라 재건의 주요 과제

통일 독일의 인프라 재건은 다음과 같이 11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분야는 통일 이후 인프라 재건의 핵심 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 소유권 정립 및 토지주택의 사유화
- 주택개발 및 주거지원
- 도시정비
- 농촌정비
- 교통 인프라 개발
- 통일 수도
- 산업입지 개발
- 수자원
- 환경개선
- 접경지역
- 관련제도 통합

(2012년 12월 10일) 1990-1994년도 문서, 제11권, pp.706-713, 베를린: 신탁청, 1994(문서번호 50).

1. 소유권 정립 및 토지주택의 사유화

1) 초기 상황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는 구 서독의 재산권 관련 법률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부동산시장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국유화되었던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들에 대해

원소유권 회복과 사유화가 추진되었다.[18] 이것은 또한 통일 이전 동·서독정부 간에 체결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19]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다. 통일 직전 결성된 초당파적 의회기구인 '원탁회의'에서 볼프강 울만(Wolfgang Ullmann)이 제안(1990. 2. 12)한 동독 국유재산의 관리방안은 전체의 25%를 동독주민 모두에게 바우처(voucher) 형태로 배분해서 사유화하고, 10%는 예술 등 비영리적인 산업부문에 배분하며, 65%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었다.

국가 소유분의 자산은 동독주민들의 의식주나 생존에 필요한 농업 및 경제 하부구조에 양도하거나, 기타 국가 채무 및 보상요구 등의 경제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 구 서독에서는 1990년 상반기부터 구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모델이 연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유화 및 국유재산 처리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된 바 있다. 연방재무부(BMF) 경제자문위원회는 특별평가보고서[20]를 통해서 동독의 콤비나트를 소규모로 분할한 후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1990. 1. 20)한 바 있다.

지방중앙은행의 경제분과위원인 페터 보핑거(Peter Bofinger)는 지주회사를 통해 동독생산자본 일체를 양도받아 5년 내 주요 기업을 분할한 후 지분을 주식시장에 매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M&A 전문 경영자문회사 대표인 그라프 마츠슈카(Graf Matuschka)는 기업의 신속한 사유화를 위해 국민주를 전체 지분의 49%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 개별 회사별로 지급하고, 51%는 서방의 투자자에게 매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서독 전문가들이 동독의 국유재산이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

[18] 통일 이후 이러한 부동산의 원소유권 회복과 사유화는 199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토지개혁판결(Bodenreform-Urteil, 1991.4.23)'에 따라 헌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19] 당시에 보상보다는 반환을 우선으로 하는 토지소유권 처리원칙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 이 보고서에는 동독주민들이 종업원 지분을 인수하거나 보통주를 우선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국유재산을 동독주민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논의들이 있었다. '즉시 민주주의(Demokratie Jetz(Democracy Now))'라는 단체는 국유재산의 약 1/4을 동독주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사민당은 3/4의 무상분배를 주장한 바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 2012).

2) 원소유권 처리

통일 당시에 소유권문제[21]는 통일조약 논의과정에서도 핵심적 사항이었는데, '보상보다는 반환우선(Rückgabe vor Entschädigung)'의 원칙이 결정되었다.[22] 이러한 소유권 반환 규정들은 1990년 9월에 통일조약의 일부로서 제정된 재산법(Das Vermögensgesetz(VermG) vom 23.9.1990)에 명시되어 있다.[23] 재산법에 따르면 시기별로 반환 및 보상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1933~1945년의 기간 동안에 국유화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환원칙을, 1945~1949년의 경우에는 반환 대신에 보상원칙을, 1950~1990년의 경우에는 반환원칙을 설정하였다.[24]

소유권 처리 문제에 있어서 통일 당시 보상 대신에 원소유권으로의 반환우선원칙이 관철된 것은 보상비용의 조달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25] 그러나 이러한 반환우선원칙은 통일과정에서 이루어진

[21] 소유권 반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재산(Verwaltungsvermögen), 재정재산(Finanzvermögen), 주택사업부문의 대지(Grundstücke der Wohnungswirtschaft), 복권재산(Restitutionsvermögen) 등 4개 부문이 주요 해결과제들을 지니고 있다.

[22] 이러한 원칙이 수립된 배경은 보상의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동독 당시에 있었던 불법(Unrecht)을 철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Bischoff, Bernhard, Grundstückswer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lin, 1996, p.21.

[23] 이러한 소유권 반환의 원칙은 이후 부분적으로 많이 수정되었지만 기본 골격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24] Häußermann, Hartmut, "Die Transformation des Wohnungswesens", in: Städte und Regionen, Opladen, 1996, p.293.

[25] Häußermann, Hartmut, Ibid., p.291.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다. 소유권에 대한 미해결 재산 처리문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조약에 따른 토지사유화의 추진은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토대구축과 민간자본의 투자유도 등 많은 성과들을 가져왔으나, 이와 함께 적지 않은 부작용들도 발생시켰다. 원소유권 반환의 원칙에 따라 통일 이후 223만 건의 부동산반환소송이 제기되었는데, 1996년 3월까지 이 가운데 63%만이 처리되었다. 이러한 반환소송은 지방정부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이 되었다. 1년에 25만 건 정도에 그치는 행정처리능력의 한계 때문에 전체 반환소송의 종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반환소송과 완만한 행정처리의 악순환은 원활한 토지활용과 도시개발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26]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손해배상 반환청구'라는 제도를 발의했다. 이에 따라 경제·도시건축·관광 또는 기타 개발정책상 중요한 특구(特區)에 대해서 퇴거명령권을 발동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27] 1992년 제정된 '재산권 반환청구 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법(투자우선법 (Investitionsvorranggesetz, InVorG))'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재산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정책수단이 되었다.[28] '반환이 보상에 우선(Rückgabe vor Entschädigung)'이라는 재산 반환 우선의 기본원칙은 재산권 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26] 대략 도시지역 부동산의 50% 가량이 반환대상이 되고 있다. Dübel, Achim, Privatisation and Restitution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New Länder of Unified Germany, unpublisched, 1996, p.9.

[27] 사민당 제안 : 신연방주 공동체 이니셔티브 1992년 6월 22일, 담당자/기관: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출처: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2/2874(문서번호 5).

[28] 일자리 확보 또는 창출, 주거공간의 신규 확충을 포함하여 미거주 주거공간에 대한 재건축, 투자가 유발하는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특별투자 목적이 적용된다. 기업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경우, 권리자가 해당 기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기업의 청산 또는 지급불능상태를 막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또는 확보를 위해 특별투자 목적이 적용된다. 투자우선 결정은 타 인허가 또는 동의를 대신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재산권 반환청구 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법(투자우선법 Investitionsvorranggesetz, InVorG)) 1992년 7월 14일(문서번호 6).

에 중요한 투자 계획의 실행을 보장하는 투자우선법(das Investitionsvorranggesetz)의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재산법에 따라 반환청구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토지, 건물 및 기업체들은, 투자우선법에 따라 특별한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구(舊) 소유권자)는 그 재산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투자우선 규정은 실행 계획된 어떤 조치가 특별투자 목적이어서 투자우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현재 그 재산 처분권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기업을 매각, 임대, 용역임대, 또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 만약 그것이 일자리 확보나 창출, 주거공간의 신규 확충을 포함하여 미거주 주거공간에 대한 재건축, 투자에 필요하거나 투자에 의해 유발된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되어 있을 때 특별투자 목적이 적용된다. 기업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경우, 만약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권리자가 해당 기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정상화한다는 보장이 없거나, 또는 기업의 청산이나 지급불능상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특별투자 목적이 적용된다. 투자우선 결정은 다른 인허가 또는 동의에 대신하여 효력이 발생한다.[29]

이 법은 토지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처분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별투자 목적에 따른 '시급한 개발'의 경우에는 보상을 통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특별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투자 목적이 성립된다. 특히 영업소나 서비스기업의 설립 또는 유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a) 새로운 주거공간의 창출, b) 퇴거되었거나 퇴거로 위협받는 주거공간의 재건축, c) 기존 주거공간이 갖는 사용가치를 지속적으

[29] 재산법에 의한 재산권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투자우선법, 1992년 7월 14일), 연방법률관보, 제I부, 1992, No.33, pp.1257-1286(문서번호 6).

로 올리고 통상적인 주거상태를 유지하거나 난방 또는 수도세를 지속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 도시건축 시행조치의 범위 내에서만 건축물의 현대화를 위해 수리하는 것 등이다.

제a호부터 제c호의 경우 1가구 주택 및 2가구 주택을 설립, 재건축 또는 개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투자를 위해 필요하거나 이로부터 유발된 기반시설 구축 조치의 실행도 포함된다. 토지나 건물은 투자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투자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이나 기업에 필요한 기업 소유 토지의 경우, 그것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투자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 a)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확보, 또는 투자활동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b) 권리자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거나 정상화할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못한 경우, c) 영업 평가시 지속적으로 지불불능이나 채무초과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청산이나 포괄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신청된 투자조치에 대해서 내리는 투자우선 결정은 토지나 건물의 매각 대신에 지상권의 설정이나 부분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의 입증과 양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

표 1-2〉 토지소유권 관련 규정 및 법률

구 분	주요 내용	제정일자
통일조약 21조, 22조	공공목적 및 주택건설을 위해 이용되었거나 이용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상태를 규정	1990년 8월 31일
재산법(VermG)	소유권반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통일조약의 일부/ 1990년 9월 23일
투자법(BInvG)	소유권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 관련사항 규정	통일조약의 일부/ 1991년 초 개정, 1992년 7월 폐지
투자우선법(InVorG)	원소유자의 권리보다 투자활동에 우선권을 부여 (투자절차의 간소화 등)	1992년 6월 14일, 투자법을 대체
자산귀속법(VZOG)	국유재산의 승계권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규정	1991년 3월 22일
신탁청법(Das Treuhandgesetz)	국유기업 또는 콤비나트의 토지소유권을 규정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의 25조에 따른 법

자료 : Bischoff, Bernhard, Grundstückswer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lin, 1996, p.22에서 재구성

요약하면, 일자리의 유지나 창출에 관련한 투자, 신규주택의 공급 또는 재고주택의 개·보수사업, 상기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되는 기반시설사업 등이 특별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 투자우선 결정은 재산가치가 소재하고 있는 크라이스 또는 자치시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우선 결정 전에 투자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투자계획서에는 최소한 계획실행자의 이름과 주소, 재산가치를 비롯하여 해당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때 드는 비용, 계획 방식 및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 매매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유형에 따라 계획의 실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보장되거나 창출되며, 얼마나 많은 주거공간이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1993년에 제정된 '투자용이화 및 주택건축 용지의 지정과 준비에 관한 법(투자용이화 및 주택건축용지법)'도 상업 및 산업용 투자목적과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된 계획 및 허가 절차 적용이 시급한 구 동독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이 되었다. 수요에 상응하는 주택건축 용지 사용을 목적으로 퇴거명령 및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 제한조건 완화가 이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30]

3) 토지 및 주택의 사유화

토지와 공공 및 조합주택의 사유화는 통일조약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통일 이후 1995년까지 56만호가 원소유주들에게 반환되었고 38만호의 국가소유 임대주택들이 개인에게 매각되었다.[31]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이 신탁공사(Treuhandanstalt)였다.[32] 통일과정에서 설립되었던 이 기관은 통일 이후 연방재무부 산하기관으로서 주로 동독국영기업 및 농경지를 관리, 매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33]

이러한 신탁공사의 사유화작업은 1994년 말로 종결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신탁부동산회사(TLG)'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회사는 각 연방주들과 공동으로 행·재정적으로 유리한 토지매각 조건들을 제시하며 토지사유화를 추진하였다.[34] 이 외에도 농림지의 사유화를 담당하는 '토지매각·

[30] 투자의 간이화 및 주택건축용지의 퇴거명령 및 공급에 관한 법률, 1993.4.22(문서번호 11).

[31] 주택조합(Genossenschaft) 및 (건설)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 보유주택 3,235,850호의 16.6%인 537,910호가 원소유권자에게 반환되었는데, 이 가운데 조합주택의 반환은 7천여호에 불과하였다.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ARL)(Hrsg.), Handwörterbuch der Raumordnung, Hannover 1995, p.1115.

[32] 1994년 말 기관 해체 시까지 신탁공사는 15,000개 이상의 기업체(분할된 기업체 포함)를 매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2,110억 마르크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다. 주독대사관, 1996, p.265. 신탁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훈,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33] 신탁공사는 총 190만ha의 농지를 관할하였는데, 주정부, 지자체, 원소유권자 등에 의해 반환소송이 제기된 60만ha를 제외한 130만ha의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Gerster, "Beratungsergebnis und Vorschlag für das fortgeschriebene Wiedereinrichter-Programm Verwertung ehemals volkseigener landwirtschaftlicher Flächen", 1992, Karsten Witt, Der Flächenerwerb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öln, 1996, p.5에서 재인용.

[34] 이를 위해 '토지취득 및 주거지 프로그램(Landerwerbs- und Siedlungsprogramm)'이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취득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

관리회사(BVVG)'가 별도로 설립되어 활동하였다.[35]

표 1-3〉 통일 초기 주택 사유화 실적(1991-1994)

년 도	매각주체					
	지자체소유의 공공주택			조합주택		
	전체	세입자매수(%)	제3자매수(%)	전체	세입자매수(%)	제3자매수(%)
1991	6,496	232(3.6)	6,264(96.4)	639	382(59.8)	257(40.2)
1992	11,646	4,909(42.2)	6,737(57.8)	1,285	1,103(78.8)	272(21.2)
1993	27,196	5,681(20.9)	21,515(79.1)	1,690	1,332(78.8)	385(21.2)
1994	16,100	7,370(45.8)	8,730(54.2)	4,200	3,330(79.3)	870(20.7)
전 체	61,438	18,192(29.6)	43,246(70.4)	7,814	6,057(77.5)	1,757(22.5)

자료: Bundestagsdrucksache 13/2501:14.

농지 및 임야의 사유화과정에서 매매가격은 1935년 토지단위가격의 세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35년 기준으로 평균 1,000 마르크/ha였던 농지는 3,000 마르크/ha의 매매가격이 설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가격에 일반인은 평균 50ha 정도, 법인은 평균 135ha 정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입규모를 제한하였다.[36] 이러한 부동산부문의 사유화와 함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통일에 따른 특별과업을 위한 연방청(BvS)'이 신탁법(Treuhandgesetz)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37]

한편 반환신청이 제기된 토지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독정권 때부터

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35 1995년 말부터 '통일에 따른 특별과업을 위한 연방청(BvS)'의 100% 출자자회사가 된 '토지평가 및 관리 주식회사(Bodenverwertungs-und-verwaltungs GmbH(BVVG)'는 '토지취득규정(Flächenerwerbsregelung)'에 근거하여 '구 국유재화(토지)(die ehemals volkseigenen Güter, VEG)'의 사유화를 담당하였다. 이 회사는 '보상 및 형평유지법(Entschädigungs-und Ausgleichsleistungs-gesetz)'에 따라 신탁농경지의 80% 이상을 최장 18년까지 장기임대 중이며, 1994년 이후 이들 신탁 농경지의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36 그러나 농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토지의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임야의 경우에는 단위가격이 농지의 절반정도였다. Witt, Karsten, Der Flächenerwerb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öln, 1996, p.63.

37 1998년 이후에도 BvS의 임무 중 계약관리, 환경보호·토양오염, 법률감독위원회(Rechtsdirektorats)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존재해 온 '토지거래허가(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가 시행되었다.[38] 이에 따라 투자우선법에 의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토지거래는 담당 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통일조약에 근거한 '토지거래시행령(Grundstückverkehrsordnung)'이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권은 자치단체장 외에 신탁청장도 갖고 있었다.[39]

연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들을 세입자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주택사유화를 추진하였다. 세입자들에 대한 주택매각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40]

-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매수의사와 매수능력에 대한 조사
- 주택의 법적 상태, 주택의 질적 상태, 세입자의 연령 및 수입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매각대상주택 선정
- 수선 및 개선사업비용, 매매가격 등을 조사, 재원조달계획 수립
- 세입자의 정보 추가
- 한 건물 내에서의 소유권분할과 예상비용 산정
- 세입자가 매각조건을 수용,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획득
- 계약서 작성

주택의 사유화를 위해 동독시절의 국가소유 주택 관리기업을 주택건설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제정된 것이 '인민소유 주택관리기업을 공익 주택건설회사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권을 주택 조합에 양도하기 위한 법(1990년 7월 22일)'이었다. 이 법은 구 동독 국영 주택관리기업들

[38] 재산법(das Vermögensgesetz)은 반환신청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 처분정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

[39] 거래허가 신청의 폭주로 보통 거래허가 처리기간이 몇 달씩 소요되기도 하였으나 신탁청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매각에는 몇 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40] Häußermann, Hartmut, 1996, p.313.

을 공익 주택건설회사로 전환하고 그 재산을 양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적으로 인민 소유의 재산으로 넘어갔던"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회복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먼저 국유 재산은 기초지자체, 시(市) 그리고 크라이스의 소유로 이관되었다. 주택건설회사의 활동은 1990년 6월 21일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 독일연방공화국 법규정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법률관보 제I권, 34호, 357쪽)의 기준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법에 상응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본 법규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기존 주택에 대해 갖고 있는 재산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처분하는 것을 중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국영 주택관리기업의 소유로 된 인민 소유 재산은 1990년 7월 6일자 '기초지자체·시·크라이스 재산 관련법(지자체재산법- KVG-)'(법률관보 제I권, 42호 660쪽)에 따라 주택건물, 건축시설 및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와 시(市)의 재산으로 이관되고, 시와 기초지자체는 인민 소유 주택관리기업이 전환되어 생겨난 공공 주택건설회사들의 지분 소유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건설회사들은 유상(有償)으로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경쟁력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대출 상환, 이자 지급 및 변제, 관리 및 유지, 지원 재원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주택 관리에 있어 가격상승으로 인해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와 지자체의 재원을 투입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보전(補塡)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주(州) 재무부가 소명이 담긴 지원서를 연방 재무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연방의 부채조정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41]

[41] 인민 소유 주택관리기업을 공익 주택건설회사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권을 주택 조합에 양도하기 위한 법(1990년 7월 22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법률관보, 제I부, 자료번호 49, 1990년 8월 9일자.

주택의 사유화과정에서 중요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기존 주택에 제기된 구 채무문제였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구(舊) 채무조정지원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주택사유화와 주택건설을 도모코자 하였다. '구(舊) 채무조정지원법'은 구 동독의 주택경영을 위해서 구 부채의 부분면제(기존의 구 부채를 주거면적 1평방미터 당 150 마르크 감액)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공급된 주택 및 주거면적의 최대 15 퍼센트를 임차인과 조합회원들에게 양도하여 사유화(私有化)하고자 하는 통일조약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42]

이 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사유화 및 개인 주거소유권의 형성을 동시에 도모코자 제정된 법으로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거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현존하는 주택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특히 신용능력과 투자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구 채무 조정지원(제4조 및 제7조)이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통일조약 및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해 공포된 법에 근거하여 기초지자체들에게 이관된 주거목적용 토지 및 그 밖의 주택재산을 귀속된 구(舊) 부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양도받은 지자체의 주택기업으로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 또는 확실하게 양도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목적용 토지와 그 밖의 주거재산의 규모가 작아서 기업경영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주택기업에게 양도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히 재산권 조정과 물권정리법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완전한 양도나 부분적인 양도가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주택기업은 매년 투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사유화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투자계획 또는 사유화에 대한 계획에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부분면제의 승인에 대한 결정은 전부 또는

pp.901-902(문서번호 4).

[42] 주택취득 지원 프로그램: 구(舊) 채무조정지원법(1993년 6월 23일) 연방법률관보, 제I부, 1993, pp.2407-2412(문서번호 20).

일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상속부채청산기금에 의해 지급된 이자를 포함한 부분면제 액수를 반환하도록 그 기업에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택기업은 1993년 1월 1일 현재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급량 가운데 최소 15%, 그 주거면적의 최소 15%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유화하거나,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임차인들이 개인적인 주택소유권을 갖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제정된 것이 '주택소유자에 대한 우선 매각을 위한 채무지원법(임대차인도법(引渡法))'이다. 이 법은 1995년 7월 1일자로 주택기업의 구 채무에 대한 이자 지원이 소멸됨에 따라 그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소득이 미약한 가구의 경우 주거보조금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의 부담을 사회친화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43]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의 사유화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였다(한국자산관리공사, 2012). 첫째, 세입자들에게 과다한 부담이다. 주택사유화의 가장 큰 문제로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과다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세입자들은 일차적으로 낙후된 주택을 보수하는 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능력은 취약한 상황이었다. 둘째, 구조조정정책과의 충돌이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세입자 등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권과 혜택을 제공하는 사유화정책은 주거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소유권 조정 절차의 문제이다. 주택의 소유권 회복 원칙에 따른 반환소송과 보상문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사유화에 부정적 영향이 미쳤다. 넷째, 주거환

[43] 주택소유자에 대한 우선 매각을 위한 채무지원법: 임대차인도법(引渡法 1995년 6월 6일) 연방법률관보, 제I부, 1995, 28호, pp.748-751(문서번호 21).

경의 악화이다. 반환소송 중에 있는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새로운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강제퇴거 사례 및 공가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2. 주택개발 및 주거지원

1) 초기 상황

통일당시 구 동독에서 주택부문의 주요 과제는 주택시장 재건과 수년 동안 방치되어왔던 주택들의 보수와 현대화였다. 통일당시 주택의 규모와 질 측면에서 동서독은 큰 차이가 있었다. 1991년 초 구 서독에서는 1인당 주거면적이 36.5m^2이었고, 주택당 평균 면적은 85.5m^2였는데, 구 동독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28.1m^2, 주택당 평균 면적은 64.4m^2였다. 구 서독에서 전체 주택수에서 자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나 구 동독에서는 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3년 기준으로 구 동독의 (194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비율은 52%로 구 서독의 2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44] 구 서독이 구 동독에 비해 주택노후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은 1949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있었던 활발한 주택건설활동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현재 구 서독 전체 주택의 55.3%가 건설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구 동독에서는 현재 주택 수의 29.5%가 건설되었다. 실내화장실을 갖춘 주택의 비율에 있어서 구 서독은 96%를 나타내고 있으나 구 동독은 76%에 그치고 있다. 난방시설에 있어서는 구 서독의 경우 현대식 난방시설인 층별 및 중앙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의 비율은 90%에 이르고 있으나 구 동독지역은 57%에 머물고 있다. 발코니나 테라스를 갖춘 주택의 비율이 구 서독지역은 74%인 반면에 구 동독지역은

[44] 이렇게 동독지역 주택의 노후도가 서독지역에 비하여 높았기 때문에 통일 이후 주택개선 및 수선사업은 주거부문의 가장 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45%에 이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통일 당시 구 동독 주택의 양적, 질적 수준은 주거면적, 위생설비, 건축자재 등의 측면에서 구 서독에 대략 20년 가량 뒤져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구 동독의 주택설비 수준이 구 서독에 비해 낮은 이유는 동독시기에 주택개선사업들이 대단히 미약하였기 때문이었다(이상준, 1997).

통일 직후 구 동독에서의 주택건설 및 개선사업들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주택소유권 문제와 세입자들의 빈약한 재정상태, 주택행정체제의 미흡 등으로 시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특히 주택소유권의 재분배과정은 구 동독의 주택개선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도시들의 노후주택들에는 대부분 원소유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반환이 비교적 단순하였고, 주택정비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후주택들이 대부분 임대주택들로서 소유권관계가 복잡하여 시급한 주택정비사업들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만 통일과정에서 합의된 연대협약의 틀 내에서 구 동독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 주택부문의 가장 큰 투자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통일이 구 동독의 주거환경에 가져온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주거비용의 부담증가라 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있어서 난방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임대료(Kaltmiete)가 1990년 월 51 마르크였던 것이 4년 후인 1994년에는 약 7.3배가 오른 월 370 마르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수입이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 신규 건설 및 주택개보수 지원

신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93년 4월 22일 '투자용이화 및 주택건축용지의 지정과 준비에 관한 법(투자용이화 및 주택건축용지법)'

을 제정하였다.[45] 이 법은 특히 구 동독 내의 상업 및 산업용 투자목적에 대해 법률상 명시된 계획의 절차 및 허가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규제완화 조치를 도입하였다. 추가로 수요에 맞는 주택건축용지 지정 및 활성화 목적으로 법적인 기본요건이 개선되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건축계획법 및 도시건축계획법의 규제완화, 오염방지 관련 허가 절차의 간소화, 도시건축법상의 계약 요소 강화, 공간정비(대지이용) 절차의 단축 및 이에 앞선 적용배제 가능성, 건축계획법과 자연보호권 간의 조화, 폐기장시설에 대한 허가의 촉진, 구 동독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분쟁 절차와 관련하여 한시적인 사법수단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규제완화 규정에 따르면, "주민들의 시급한 주택 수요가 발생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상업 지구와 산업 지구를 위한 건축계획을 작성, 개정 및 보완할 시, 건축계획에 의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초지자체의 참여 시 건축계획은 주민들의 시급한 주택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선언할 경우, 공공 요구의 실행책임자들은 건축법전 제4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내에 각자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와 같은 신속한 사업추진여건 조성과 관련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환경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연방오염방지법의 개정이 포함되었는데, "설치 및 운영상의 이유로 환경영향을 초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반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을 위협하고 그 지역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설 및, 폐기물을 이전 또는 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하면,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경제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공기오염이나 소음에 의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45] 투자용이화 및 주택건축용지의 지정과 준비에 관한 법(투자용이화 및 주택건축용지법 1993년 4월 22일), 연방법률관보, 제I부, 자료번호 16, 1993, pp.466-488(문서번호 11).

구 동독에서 임대주택 건설 투자는 처음 5년간 최고 50%까지의 특별 공제 혜택을 받았다. 직접 거주할 주택 소유주는 최고 4만 마르크까지의 현대화 비용의 10%에 대해 10년 동안 매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입지 보장법의 틀 내에서 이러한 한시적인 조세 혜택 공여가 1996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사회주택(Sozial Wohnung) 건설을 위해 1991년부터 연간 10억 마르크의 재정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세입자에 의한 주택 구입은 구입가의 2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장려하였는데, 상한선은 1인 가구의 경우 7,000 마르크이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씩 늘어날 때마다 보조금이 1,000 마르크씩 증가된다. 연방정부 소유의 부동산은 구 동독에서의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80%까지 가격이 할인되고, 러시아군의 서방 주둔부대가 사용했던 주택들은 무상 양도되었다.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재건금융청(KfW)을 통해 100억 마르크 규모의 주택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재건금융청의 이 프로그램은 주로 노후화된 주택에 10여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주택개선사업에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46] 이 프로그램에 의한 수선 및 개선사업은 주로 난방시설의 개선에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의 감소와 함께 주거만족도의 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1990년 10월부터 재건신용기관의 주택현대화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현대화와 보수가, 또 1991년 5월 1일부터 다락층 증축, 층을 높이거나 증축에 의한 확장 및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공간의 용도 변경 등이 촉진되었다. 1993년 6월 30일까지 신연방주들에서 재건신용기관 주택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건물 내의 약 1만 5,000호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위한 재원이 준비되었다. 이 수치는 개인 신청자만을 포괄한다. '공동과제 동독부흥(Gemeinschaftsaufgabe Aufschwung Ost)'의 자금지원 덕분에 기존 주택들에 약 3만 700호의 새로운 임대주택이 조성되

[46] 이 프로그램의 자금신청자는 대략 7:3의 비율로 개인신청자들이 공공단체들에 비해 많았으며 주로 농촌지역의 개인신청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었다.

기존 주택에서의 주거공간 형성을 위한 투자비용은 신축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 평균적으로 구 서독의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1호당 4만 9,200 마르크의 저금리 신용대부가 제공되는데, 이때 주택당 총 투자액은 9만 4,000 마르크이다. 이러한 주택개선사업은 주택건설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수단들 외에, '공동과제 동독부흥(Gemeinschaftsaufgabe Aufschwung Ost)'의 주택개선사업지원금으로도 시행되었다.[47] 특히 1970, 1980년대에 대량으로 건설되었던 조립식 아파트(Plattenbau)들의 보수사업을 위해서 100억 마르크의 저리융자금이 마련되었다.[48] 이러한 각종 지원을 통해 주택신축[49]과 보수부문에 총 1,560억 마르크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0] '공동과제 동독부흥'의 보조금과 연방 재건신용기관의 저금리 대부 등은 주택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원금의 약 50%가 난방시설 현대화와 단열, 약 3분의 1이 주거공간 보수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주택부문의 공공지원은 건설부문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효과 외에도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통해 기업입지의 유인요소로도 기능하였다.

3) 주택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

통일조약에서는 구 동독의 주택 임대료가 소득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장가격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10월 1일 제정된 제1차 기본 임대료 법령(Erste Grundmietenverordnung)과 관리비 할

47 주택개선부문에 대한 연방의 지원계획은 총 600억 마르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80억 마르크(80%)가 지급되었다.

48 주요 건물들의 보수와 대규모 주거단지의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도심재개발을 위해 1990~1995년의 기간 동안 총 49억 마르크가 지원되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도 각각 5억 2천만 마르크의 연방재원이 확보되었다.

49 구 동독에서는 통일 이후 1995년 말까지 30만호가 건설되었다.

50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Bilanz der Wirtschaftsförderung des Bundes in Ostdeutschland bis Ende 1995, BMWi-Dokumentation 자료번호 396, Bonn, 1996, p.6.

당액 법령(Betriebskosten-Umlagever-ordnung) 및 1993년 1월 1일자 제2차 기본 임대료 법령을 바탕으로 이런 방향으로 첫번째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제1차 임대료 개혁을 통해 1991년 10월 1일 이전에 주거면적 1m²당 약 0.80 마르크였던 난방비를 제외한 총 집세가 평균 3.50 마르크/m²으로 인상되었다.

가구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중앙난방식 신축 주택의 경우 제1차 임대료 개혁조치 이후 난방비가 포함된 총 집세(Bruttowarmmiete)가 6~7 마르크/m²로 인상되었다. 제2차 기본 임대료 인상 결과 주택이 1호 이상 들어있는 건물의 기본 임대료는 1993년부터 주거면적 1m²당 상태가 최악인 주택의 경우 최소 0.75 마르크(상태 수당 제외)가, 욕실/샤워, 자체 화장실을 갖춘 중앙난방식 주택의 경우 모든 허가되는 상태 수당을 징수할 때 최고 2.10 마르크/m²가 인상되었다. 1994년 1월 1일부터 0.60 마르크가 더 인상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제1차 임대료 개혁조치 이후 인상된 임대료 수준을 보면 기본 임대료는 주거면적 1m²당 평균 2 마르크가 인상되어 거의 4 마르크/m² 수준에 육박했다. 난방비가 포함된 총 집세의 평균치는 월 7.50 마르크/m²이다.

베를린에 위치한 도시 연구와 구조정책 연구소(Institut für Stadtforsc-hung und Strukturpolitik)가 독일 세입자 연맹(Deutscher Mieterbund)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난방비가 포함된 집세 부담률(주택 수당을 받은 후)은 1993년 1월 1일 임대료 인상 이후 18.6%에 달하고(1992년: 17.2%), 반면에 난방비를 제외한 집세의 부담률은 14%로 여전히 구 서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1991년에 '주거비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보조금특별법 도입과 주거보조금법 및 기타 주거보조금법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 및 사회법전 제I권의 개정에 관한 법, 1991년 6월 20일)'을 도입하였다. 이 법은 주거보조금청구의 방식 및 적용범위를 비롯하여, 보조금 신청권한, 소득조사(가구별 소득 및 연소득), 주거보조금 지급에 대한 각하 사유, 허가, 주거보조금 승인, 사례별 주거보조금 인상 및

지급제외조항(신청, 정보제공의 의무, 주거보조금 승인 기한, 주거보조금 지급 및 승인 제외, 행정법원 절차상의 상소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51]

이 법에서는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가족 단위 주거를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1993년 2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한해 본 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10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주거공간에 소요되는 비용 및 난방비와 온수 사용료에 대한 추가 보조금의 형태로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보조금은 본 법의 별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주거공간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또는 부채를 포함하여 난방비 및 온수사용료에 대한 임대료 및 부담금의 보조금으로서 제공된다.

주거공간에 대해서 임대료 또는 임대료에 준하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자와 자기가 사용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져야 하는 자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주거공간에 대해 이미 부채를 진 자도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주거보조금은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판단되면 지급기간은 이에 미달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급기간 동안에 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가 증가했거나, 임대료 또는 부담액이 15% 이상 오른 경우, 가구별 소득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난방비 및 온수사용료에 대한 추가보조금 책정 시에 고려할 거주 면적이 15% 이상 넓어졌거나 난방방식이 바뀐 경우에는 주거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1]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보조금특별법 도입. 주거보조금법 및 기타 주거보조금법 관련 법규 개정. 사회법전 제I권 개정에 대한 법, 1991년 6월 20일, 연방법률관보, 제I부, No. 37, 1991, pp.1250-1267(문서번호 16).

3. 도시정비

1) 초기 상황

구 동독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도심주거지의 낙후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건설이라는 특유의 도시개발양태를 나타내었다.[52] 이 때문에 통일 이후 구 동독 도시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낙후된 도심주거지 및 기존 대규모 주거단지의 주택설비 개선이었다. 특히 1945년 이전에 생성된 구 주거지역의 보전 및 여전히 구 동독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역의 활성화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

그림 1-1▶ 구 동독 도시들의 낙후된 주거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자료: Stadt Leipzig, Bericht zur Stadtentwicklung, Beiträge zur Stadtentwicklung 42, 2004, p.58.

구 동독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 도심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사업이었다. 구 동독의 중소도시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구 서독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의 보존사업도 도시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통일 이

[52] 동독시기에 있어서 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 이른바 '경제 및 사회정책의 통일'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주택건설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1990년까지 모든 가구들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 하에 도시의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도심의 낙후와 주변 중소도시의 개발침체를 초래하였다. Strubelt, Wendelin, "Regionale Disparitäten zwischen Wandel und Persistenz", in: Städte und Regionen, Opladen, 1996, p.26.

후 구 동독의 도시개발사업은 서독의 공간계획법들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를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시행정측면의 문제도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큰 장애가 되었다.[53]

통일 후 구 동독 도시정비에 있어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 것은 교외화 현상과도 연관이 깊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억제되었던 주거의 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교외화 현상은 도심 노후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3-2〉에서 보면, 구 동독 주요 도시들의 도심지역 인구가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크게 감소한 반면, 교외지역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53]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구 서독의 도시행정전문가들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구 동독의 도시행정체계 구축에 자문을 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구 동독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2▶ 구 동독 주요 도시의 교외지역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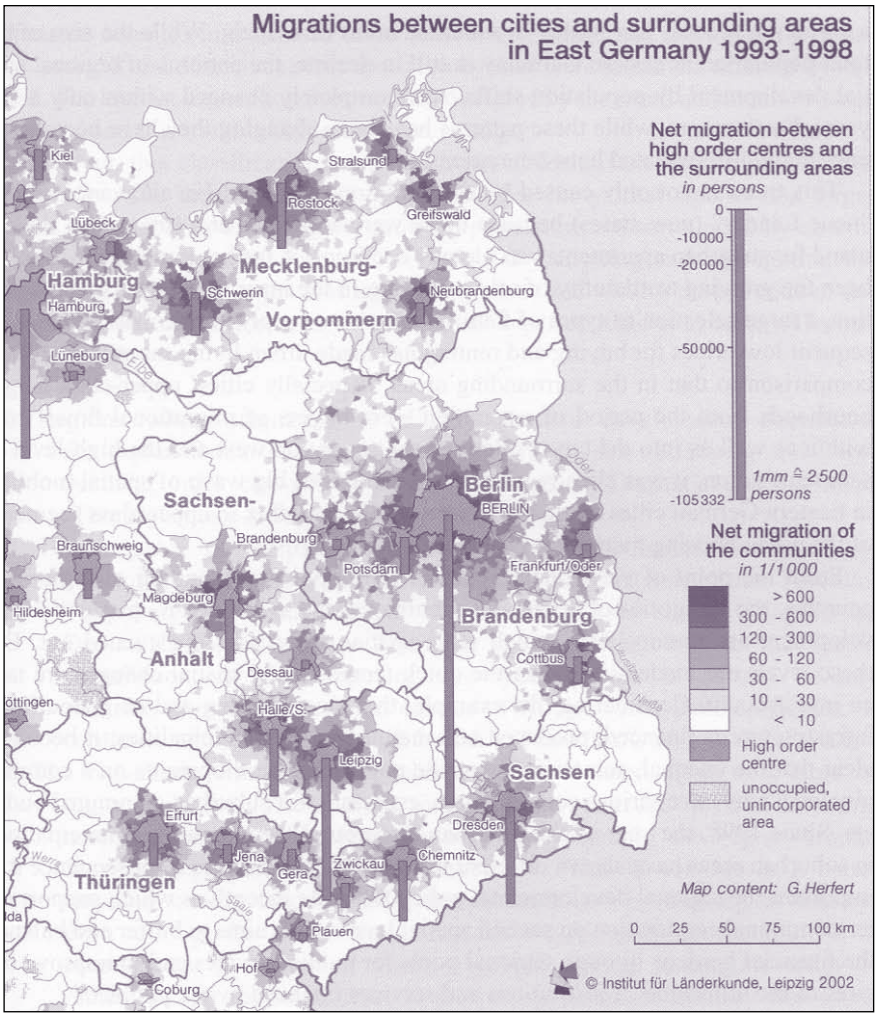

자료: Herfert,Günter, Lentz,Sebastian, "New Spatial Patterns of Population Development as a Factor in Restructuring Eastern Germany", in: German Annual of Spatial Research and Policy, Berlin, 2006, p.95.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물리적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되어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전통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이었다. '도시개발사업(Stadtsanierungs-und Entwicklungsmaßnahmen)'은 독일에서 정부의 도시개발지원(Städtebauförderung)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제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건설법전(BauGB)'에 근거한 법정사업으로서 구 서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통일 이후 2004년까지 동서독 전체의 2,20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600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위해 70억 유로 이상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었다.

그림 1-3▶ 독일의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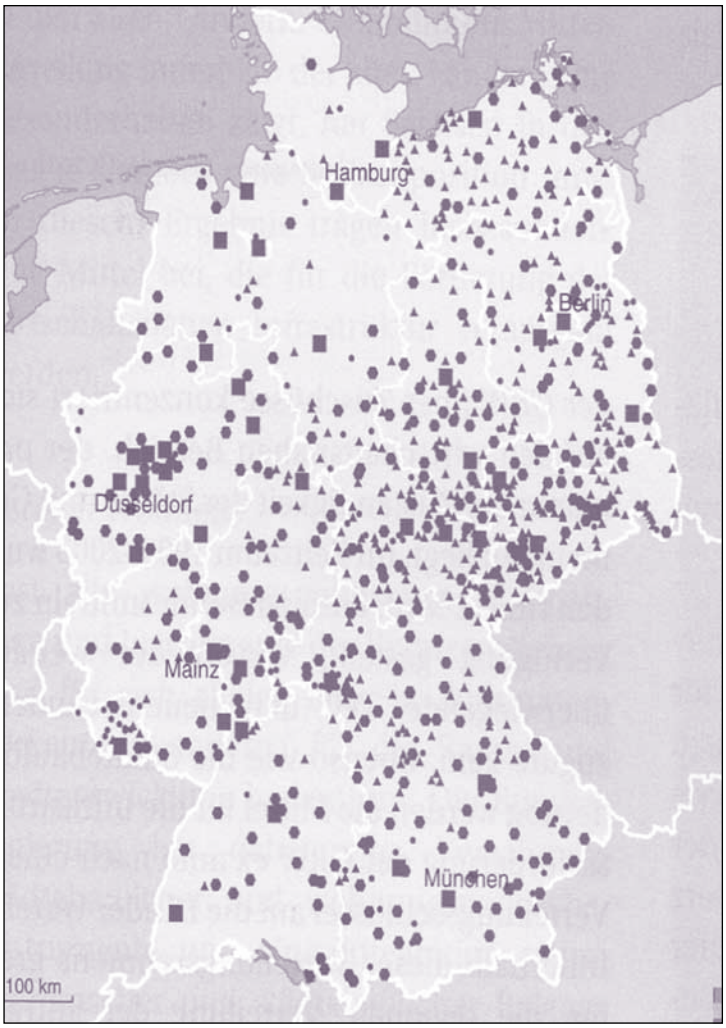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 2004. Nachhaltige Stadtentwicklung-ein Gemeinschaftswerk. Städtebauli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Bonn, 2004, p.93.

구 동독에서는 수도인 베를린을 제외하고 모두 805건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약 21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적인 대상지역은 주로 도심과 그 주변지역이었다.

그림 1-4▶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거지의 개선 사례(Eberswalde)

〈시행 이전〉

〈시행 이후〉

자료: Stadt Eberswalde. Stadtzentrum Eberswalde. Stadtsanierung 1992-2004, 2004, p.8.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 프로그램'은 구 동독 도시들의 역사적인 도심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1991년부터 매년 약 1억 유로씩 지원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에 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155개의 도시가 지원을 받았다.

그림 1-5▶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 대상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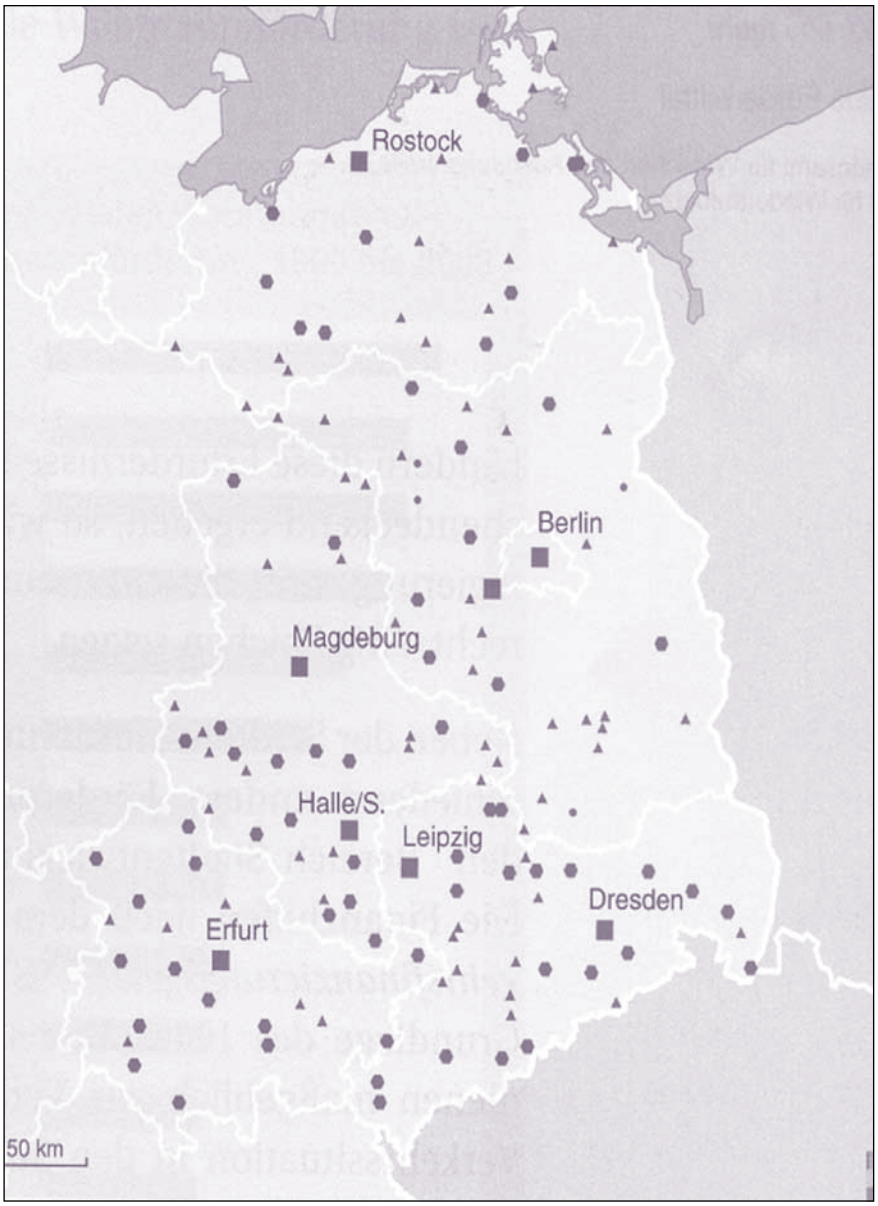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und Wohnungswesen.
Nachhaltige Stadtentwicklung-ein Gemeinschaftswerk.
Städtebauli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4, 2004, Bonn, p.96.

그림 1-6▶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 적용사례

자료: 이상준 외,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2006, p.27.

그림 1-7▶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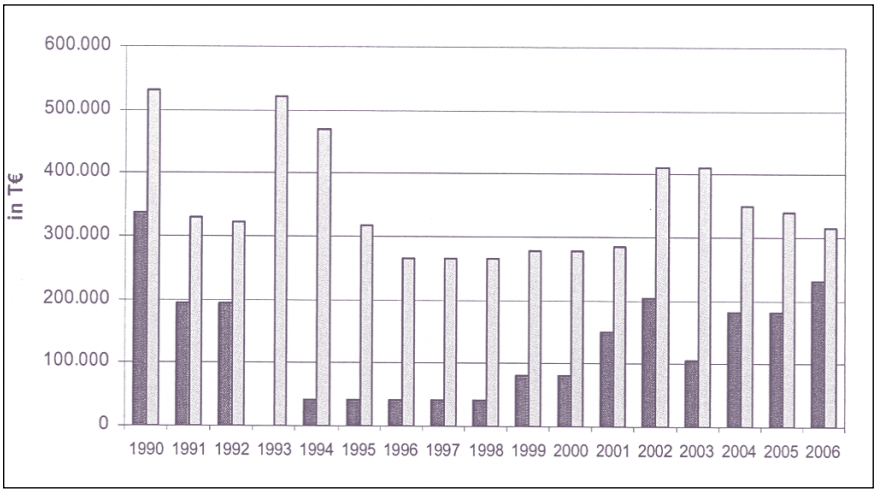

주1: 검은색이 구 서독, 회색이 구 동독
주2: 세로축은 천 유로(Euro)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Ibid., 2006, p.106.

2000년대 들어서 도심의 인구감소와 공가 문제가 심화되자 이 프로그램은 '구 동독-도시정비프로그램(Stadtumbau-Ost Program)'과 연계 추진되고 있다.

표 1-4〉 구 동독 연방주별 프로그램 수혜 대상 지자체 수

지 역	내 용
베를린(Berlin)	2002-2004 동안 8개 지역이 수혜 중점대상은 대규모 주거단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2004년까지 26개 도시가 수혜 주 정부는 특별한 모델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
멕켄부르크-포어폼메른 (Meckenburg-Vorpommern)	2005년 기준으로 58개 도시가 수혜 주 정부는 2003년에 44개의 관련보고서를 평가
작센(Sachsen)	2005년 기준으로 95개 도시가 수혜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2005년 기준으로 49개 도시가 수혜 2010년까지 IBA-Stadtumbau와 연계되어 추진
튜링겐(Thüringen)	2005년 기준으로 68개 도시가 수혜

자료: www.stadtumbau-ost.info.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초지자체는 먼저 개발구상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상수립 비용도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지자체 인구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지원대상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5〉 '구 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의 지원금 규모와 지자체 선발기준

지원금 규모	지자체 선발기준
- 인구 3만명까지: 5만 유로 - 인구 10만명까지: 7만 5,000 유로 - 10만명 초과: 12만 5,000 유로	- 타지로의 이주비율 변동추세 - 실업률 - 조세수입의 변동추세 - 공가의 규모와 추세

자료: 이상준 외, 전게서, 2006, p.40.

그림 1-8▶ '구 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 지원대상 도시들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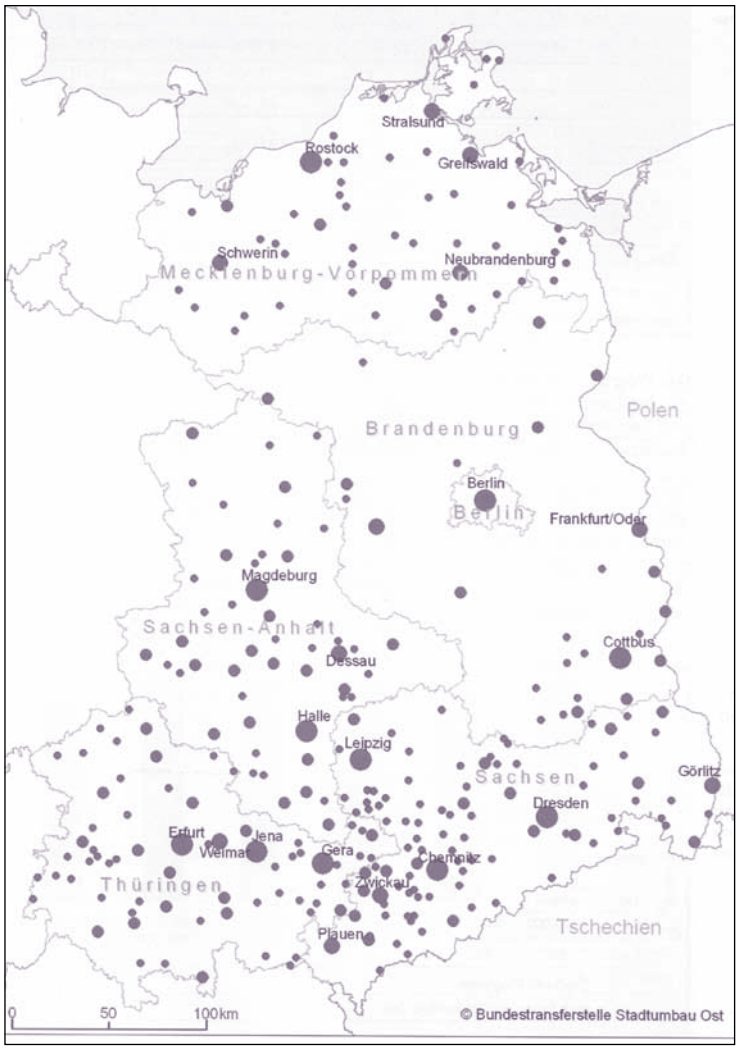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
Nachhaltige Stadtentwicklung-ein Gemeinschaftswerk.
Städtebauli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4, Bonn, 2004, p.102.

표 1-6〉 '구 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 평가기준 및 도시개발구상의 목차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	도시개발구상의 목차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 및 노동시장, 주택 수급의 조사 -도시개발 목표의 검토와 재설정 -지역적인 구조정책 및 도시개발 정책을 위한 새로운 모델과 지침의 개발 -공간적인, 부문적인 중점 실천요소의 결정 -주택 소유주들과의 도시개발구상 합의 여부 -이웃한 지자체들과의 도시개발구상 합의 여부 -철거와 개선조치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도시부문지역사업의 계획, 합의, 시간계획 -지표를 통한 평가의 준비	-도시의 현황 및 기초자료 -구상의 목표설정 -구상 내용 -구상수립의 과정 및 현재까지의 작업 상황 -공간적인 대상 영역 -도시개발 관련 여건자료의 분석 -구상 및 전망치의 추정 -도시구조의 지역 유형 -개발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설정 (라이프치히의 경우 부문계획 주택건설, 부문계획 도시정비)

자료: 이상준 외, 전게서, 2006, p.42.

3) 이전적지의 활용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에 제기된 새로운 과제는 지금까지 군사용이나 산업시설 등으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용도 변경이다. 인구밀집지역의 핵심 도시들에서 이런 종류의 토지가 보통 도시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분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중요한 비상용 토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군사용 토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가치 조사와 기초자치단체나 투자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 해명
- 해당 토지의 도시 구조로의 편입에 관한 계획 개발 및 적절한 이용 계획안과 건축 계획안 작성과 구속력 있는 건축 계획 수립
- 기존 건물과 시설의 계속적 이용을 위한 구상안과 절차 개발

군사시설 이외에도 유휴 산업시설의 부지를 주거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노후 산업지대의 종합적인

정비와 관련 인프라의 활용 차원에서 많은 공공시설들이 이전적지에 새롭게 배치되었다.

4. 농촌정비

1) 초기 상황

통일 이후 농업부문에서도 시장화, 사유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1989년에 약 85만명이 비농업적 부대기업을 포함하여 농업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독일통일 전환기에 농업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91년 4월에 이미 50만 명이 그 일을 그만두었다. 2001년에는 대략 16만 2천 명이 구 동독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통일 이후 기업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구 동독 체제에서는 당과 국가가 경영하는 대규모 농업기업들이 대략 5,100개가 있었지만, 2001년에는 2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 면적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1,000개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기에 영농기업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뒤에 오늘날 개인 영농기업과 개인조합의 숫자는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략 560만 헥타르의 경작지 중에서 53%가 법인, 24%는 개인 영농, 23%는 영농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헥타르 당 평균적 기업규모는 신연방주에서 조금 작아졌다. 평균적 농업용 토지 소유는 법인의 경우 대략 900 헥타르로 가장 많고, 개인조합이 393 헥타르, 개별 영농기업은 56 헥타르이다.[54] 이러한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촌생활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구 서독의 인구밀집지역과 주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인프라 수준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반면에 구 동독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고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농업 위주 시골지역과 국경지역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분명한 문

[54] 통일부, 독일통일백서(2002), 2003, p. 168.

제점들을 보이고 있었다. 통일 직전인 1989년에 구 동독의 농촌인구[55]는 전체 인구의 23.5%였다.[56] 이러한 농촌거주 비율은 1992년도에 30%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구 서독의 17.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57]

동독정권 하에서 농업생산협동조합(LPG)과 국영회사(VEG)를 중심으로 했던 농촌지역의 정주체제는 통일 이후 이들 생산체제의 폐지로 전면적인 재편성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농업활동인구는 1989년 26%에서 1994년에는 20%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이미 동독체제 하에서 지역중심도시의 공업화정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인구감소추세는 통일 이후에도 실업, 젊은 계층의 서독이주,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로 지속되고 있다. 통일 직후 구 동독에서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대도시의 도심 보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의 도시 건설상의 재개발 및 개발조치 장려가 통일 초기에는 미미하였다.

2)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공동으로 통일 직후 1억 3천만 마르크를 투자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58] 이것은 1991년 1월부터 발효되었던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관한 법(GAK)'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농촌 주거지의 하수처리, 전화선공급 등의 기반시설들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반시설부문은

[55] 동독시기에는 인구 2천명 미만의 농촌주거지 인구를 농촌인구로 파악하였다. 동독시기에는 평균 2,000명 미만의 농촌주민이 모여 사는 게마인데(Gemeinde)가 6,600개 있었다.

[56] 또한 농업활동 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26%를 차지하였다. Kapphan, Andreas, "Wandel der Lebensverhältnisse im ländlichen Raum", in: Städte und Regionen -Räumliche Folgen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Opladen, 1996, pp.219-225.

[57] 면적상으로 농촌지역 크라이스(ländliche Kreisen)가 포괄하는 면적비율이 구 동독은 66.3%, 구 서독은 43.4%에 이르고 있다.

[58] 주독대사관, 구 동독 농촌주거환경 현대화 프로그램, 1991.

여전히 낙후되거나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59]

또한 주택개선 지원자금은 수혜자가 어느 정도의 자기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많은 농촌지역 가구들이 경제력의 취약성 때문에 이러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자금은 지원의 형평성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60] 1993년에 39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시 건설상의 재개발 및 개발 조치를 위한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농촌지역의 소도시와 촌락의 모범적 도시 건설상의 재개발을 위해 연방은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신연방주들에 총 4,130만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관한 법(GAK)'의 틀 내에서의 촌락 재개발은 1992년 구연방주들과 신연방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정받은 조치이다. 이 조치는 1993년에도 계속되었다. 결산 결과 1992년에 촌락 재개발을 위해 GAK에서 약 3억 4,600만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이중 60%를 연방이 부담하였다.

5. 교통 인프라 개발

1) 초기 상황

통일 이전 구 동독은 구 서독과는 반대로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었다.[61] 철도가 전체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75%였다.[62]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교통운수가 증대하지 않도록 교통수요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교통수단은 집약적 이용이 가능한 철도수

[59]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던 많은 복지시설들이 통일 이후 폐쇄되거나 재정비되었다.

[60] Kapphan, Andreas, "Wandel der Lebensverhältnisse im ländlichen Raum", 1996, pp.219-225.

[61] 1인당 도로길이에 있어서 동독은 서독의 83% 수준이나, 철도길이의 경우에는 168% 수준이었다. 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p.194.

[62] 주독대사관, 통일독일 6년, 동독재건 6년 - 분야별 통합성과와 향후과제-, 1996, p.350.

송이 주축이 되었다.[63] 그러나 철도시설의 질적 수준은 서독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구 동독의 제국철도(Reichbahn) 총 연장 14,000km(1989년) 가운데 17%(1,180개소)가 시설노후로 인해 서행구간이며, 철도 관련 지상 건조물의 수리는 1980년대에 70% 정도만이 진행되었다.[64]

구 동독의 도로시설은 양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체도로(1,895km의 고속도로 포함) 면적의 45%는 노후상태 때문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65] 전체도로 가운데 고속도로의 비율은 1.5%로, 서독의 5.1%보다 크게 미미한 수준이고, 전체 고속도로의 75% 정도가 1945년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66] 또한 도로망에 있는 3만개의 교량가운데 10%는 철거 후 새로 건설되어야 할 상태였고, 30%는 개축이나 보수가 필요하였다.

표 1-7〉 구 동서독 교통시설 비교

구 분	구 동독	구 서독
고속도로(km)1)	1,895	8,959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길이(km/1,000km^2)	17.5	36.1
도로총연장2)(km)	128,150	173,995
총도로대비 고속도로 비율(%)	1.5	5.1
국토면적당 총도로연장(km/1,000km^2)	1,180	700.9
철도(km)3)	24,806	63,698
국토면적당 철도연장(km/1,000km^2)	228.4	256.6
국토면적(km^2)3)	108,588	248,252

주 : 1) 1991년 자료
2) 동독의 도로총연장은 1990년 자료

63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연구, 1994, pp.8-9.

64 동독의 교통 및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는 서독의 60% 수준에 그쳤다. 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p.196.

65 주독대사관, 통일독일 6년, 동독재건 6년-분야별 통합성과와 향후과제-, 1996, p.351.

66 Rhode, Bernd, 통독 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전략-교통부문 중심으로-(Strategien zur Infrastrukturentwicklung nach der deutschen Einheit mit dem Schwerpunkt Verkehr), 한독국제세미나, 국토개발연구원, 1996, p.7.

3) 1989년 자료

자료 : 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p.322.
통계청, 통독 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1996, p.9, pp.341-342.
DIW 50/96, p.805.

통일 당시 동서독의 교통부문은 현재의 남북한처럼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오랜 단절기간 동안 동독의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 독일에서 교통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단절되었던 동구 서독간의 교통망을 연결하고 낙후된 구 동독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것이었다.[67] 또한 통일 이후 자동차보급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991년과 1994년 사이에 구 서독지역의 교통사고는 11.3%의 감소를 보였으나 구 동독지역의 경우는 반대로 49.6%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2)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추진

통일 이후 구 동독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는 특별한 정책수단과 일반적인 정책수단[68]을 병행하였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특별한 정책수단이 바로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 VDE)'이다. 1991년 4월에 연방정부가 결의한 총 390억 유로(약 50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9개의 철도 프로젝트와 7개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1개의 수로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67] 분단 이전에 동서독 국경 약 1,400km에는 철도 40개 노선, 고속국도 및 국도 30개 노선, 지방도로 140개 노선이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의 베를린 봉쇄 이후 동독측의 국경차단으로 이 가운데 10개의 통과도로(4개 고속도로, 6개 국도), 8개의 통과철도, 2개의 내륙운하 그리고 3개의 항공로만이 사용되었다.

[68] 독일연방교통계획 1992(BVWP: Bundesverkehrswegeplan, 1992)는 구 서독 기존 교통망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구 동독 교통시설을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총투자액의 약 39%를 구 동독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1-9▶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VDE)' 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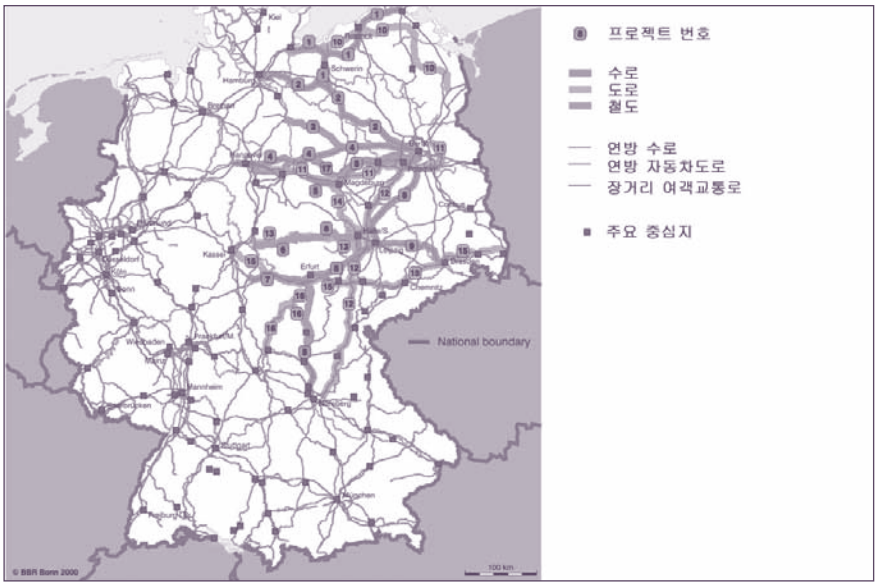

자료: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 2000.

이 프로젝트에는 1991년부터 2008년 말까지 약 286억 유로가 투자되어 계획대비 약 73%의 집행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도로분야에 가장 많은 141억 유로가 투자되었고, 철도분야에 131억 유로, 수로분야에 약 14억 유로가 각각 투자되었다. 도로분야의 경우 2008년 말까지 1,820km 이상의 구간이 완공되었다. 당초 이 프로젝트의 투자우선 순위는 철도, 도로, 수운의 순서였지만, 실제 투자실적은 도로가 철도보다 다소 높았다.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VDE)'와 더불어서 '미래투자계획 2001-2003(ZIP)'의 틀 하에서 구 동독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어졌다. ZIP 2001-2003의 틀 안에서 추가적으로 철도망을 위한 연방자금이 약 30억 유로, 연방도로망을 위해 약 14억 유로가 투입되었는데, 철도투자의 경우 약 30억 유로의 전체 예산 가운데 구 동독에 11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도로부문은 총 14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자금 가운데 구 동독에 2억 6,50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이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통일 이후 구 동독

의 교통부문에는 2008년까지 총 720억 유로(약 92조원)가 투자되었다. 독일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구 동독에 독일 전체 교통부문 투자의 37%가 투자된 것이다.

종합해 보면, 독일은 통일 이후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VDE)' 등을 통해 구 동독의 교통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확충하였으며, 동구 서독의 물리적 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 철도로 3시간이 넘게 걸리던 베를린-라이프치히구간이 이제는 고속철도로 1시간대로 좁혀졌고, 구 동독 주민들은 어디에서나 30분 안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구 동독의 멕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북부의 고속도로망 등 경제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립된 교통망 개발계획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 당시 수립되었던 구 동독 교통 인프라 개발계획이 2008년까지 대략 73% 정도 달성되었다는 것은 재원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27%정도의 '과잉계획'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3) 교통로 개발촉진을 위한 계획 및 재원 지원

구 동독에서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히 하기 위해 계획수립 측면에서는 '구 동독과 베를린주의 교통로 계획촉진을 위한 법(교통로계획촉진법(Verkehrswegeplanungsbeschleunig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계획 절차 수립을 간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으로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기존의 법률에 의한 교통로 계획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획에서부터 시행까지 20년이나 소요되기도 하였다.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구 동독의 상황 하에서 기존의 교통로 계획법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구 동독 내의 교통로 계획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가능하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데 목표를 두었다. 교통로의 신설 및 확충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신속하게 독일 전역에

동등한 생활수준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본법상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구 동독과 베를린 내의 모든 연방 교통도로(철로, 도로, 수로)에 적용되며, 공항 및 공공 근린여객 운송교통(고가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전차)의 교통로에도 해당된다. 본 법은 모든 연방교통도로의 노선을 결정하는 권한을 연방교통부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결정권한의 집중은 사전 조사와 노선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에 의하여 형식적인 국토계획 절차는 중단하고,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시행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69]

이 법에 따르면, 계획 실행자가 그 계획을 청문(聽聞)관청에 제출한 후에, 해당 관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른 관청들로부터 입장표명을 듣고,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초지자체 내에 그 계획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관청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은 시행계획이 결정된 후 3주 이내에 그 계획을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이 법에 따른 계획을 위한 시행계획 확정절차 및 계획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1심을 최종심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지역 감독관청은 계획허가 절차나 그 사전작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수용관청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는지 2주 내에 소유권자의 대리인을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 간소화법(Planungsvereinfachungsgesetz)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전역에서 철로, 연방도로, 공항, 전차, 지하철 관련 계획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제정되었다.

교통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

[69] 구 동독과 베를린주의 교통로계획촉진을 위한 법(교통도로계획촉진법 1991년 12월 16일) 연방법률관보, 제I부, 65호, 1991, pp.2174-2176(문서번호 33).

령이 1990년에 제정된 바 있다.[70] 이것은 공식적인 통일 이전부터 구 동독의 인프라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6. 통일 수도

1) 초기상황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2개의 수도를 갖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서독은 1949년 의회에서 본(Bonn)[71]을 임시수도로 결정하였고, 동독은 동베를린을 수도로 결정하였다. 본이 임시수도로 결정되었지만 당시 서독 국민들 간에는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베를린으로 환도(還都)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본은 서독국민들에게는 어디까지나 '임시수도'였던 것이다. 본이 서독의 수도가 된 지 40년이 되던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 수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정부와 맺게 되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1990)의 조건으로 베를린으로의 연방수도 이전을 요구한 반면 서독주민들 간에는 베를린으로 환도하자는 주장과 본을 통일 수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하였다. 1990년 당시 설문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51%가 베를린을, 23%가 본을 지지하였다. 베를린 지지세력의 70%가 동독국민이었고, 서독국민 가운데 베를린 지지세력은 46%였다.

베를린으로의 환도를 주장하는 측은 베를린이 수도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중부유럽의 중심지라는 지경학적 강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70] 1990년 6월 25일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 제14조에 따라 1990년 ~ 1991년 경제기반시설 확충 및 접경지역의 경제기반시설지원에 필요한 재원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시행령, 1990년 8월 8일(문서번호 72).

[71] 본은 1949년 분단된 독일의 임시수도로 결정된 이후 도시성장을 이어왔다. 본격적인 수도건설은 1969년 사민당이 집권하고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이루어졌다. 본의 명칭도 임시수도에서 연방수도로 개칭되었다. 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9만여명의 소도시였으나 연방정부의 수도가 되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통일 당시 약 30만명에 이르렀다.

1949년 본을 임시수도로 결정할 당시의 국민적 합의 등을 환도의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에 본을 통일수도로 하자는 측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도 독재적인 히틀러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베를린으로의 환도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본-베를린 수도이전 논쟁은 1991년 6월 연방의회선거에서 337:320의 근소한 차이로 베를린이 통일 수도로서 결정되면서 종식되었다.

종전 이후 동서베를린으로 분단되었던 시련에도 불구하고 독일 역사에서 베를린이 차지했던 위상과 정체성 그리고 통일이라는 국가적 전환점이 이러한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회의 결정이 국민여론과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국민여론 다수가 통일 수도로서 베를린을 선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베를린으로의 천도를 결정했다면, 그러한 결정이 실제로 집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수도이전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1-8〉 통일독일의 수도이전 과정

시 기	내 용
1990.8.31	• 동서독 간 통일조약의 체결 – 통일독일의 수도로 베를린을 명시 – 정부 및 의회소재지는 통일 이후 결정하기로 명시 (본-베를린 수도이전 논쟁 본격화 계기)
1991.6.20	• 연방의회에서 베를린으로 수도이전 결의
1992.8.25	• 수도조약 체결 – 연방정부-베를린, 연방정부-브란덴부르크주 간의 협력계약
1994.5.6	•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 공포
1999.8.31	• 연방의회 및 정부 베를린으로 이전 완료

자료: 한국토지공사, 해외의 수도이전과 관련된 논쟁 및 시사점, 2004, p.12.

2) 본-베를린 간 역할분담

연방정부의 부처별로 동베를린을 비롯하여 신연방주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72] 또한 연방 부처 이외에 연방기관들의 재배치에 대한 조치들도 이루어졌다.[73]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 결정 이후 연방정부는 수도이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4년 4월에 확정된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에서는 2000년까지의 정부이전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었다.

1999년까지 최종적으로 총리실과 홍보처를 포함한 10개 연방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6개의 연방부처가 잔류하게 되었다. 베를린/본-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잔류하는 부처들은 각각 본과 베를린에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하였다. 즉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부처는 본에 제2청사를, 그리고 본에 잔류하는 부처들은 베를린에 제2청사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부처가 본과 베를린에서 일부 기능이나마 유지하게 되었다.

베를린으로 이전한 부처는 총리실, 홍보처 외에 내무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건설교통부, 복지부, 외무부 등이며, 본에 잔류하는 부처는 국방부, 교육연구부, 소비자보호및농림부, 보건부, 환경부, 경제협력부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연방부처들은 행정부 내에서도 핵심적인 부처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베를린을 중심으로 정부기능이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부처들은 1992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 8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편 이들 연방행정부처 외에 연방의회 상하원과 연방대통령실이 각각 베를린으로 이전하였다. 1999년 9월 1일부터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는 베를린에서 공식적인 업무

[72]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신연방주에서의 연방정부의 활동과 정부부처의 베를린 외청의 업무 1993년 6월 29일. 담당자/기관: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연방의회 원내 사민당.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2/5300(문서번호 8).

[73] 신연방주들을 특별히 고려한 연방기관의 균형 있는 배분과 관련한 독립적 연방주의위원회의 1992년 5월 27일자 신청안, 1992년 5월 27일(문서번호 10).

를 시작하게 되었다.

표 1-9〉 연방정부 기능의 본-베를린 분산배치

베를린	개	본	개
총리실, 홍보처, 내무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건설교통부, 복지부, 외무부	10개	국방부, 교육연구부, 소비자보호및농림부, 보건부, 환경부, 경제협력부	6개

주: 1) 베를린과 본에 위치하는 부처들은 각각 본과 베를린에 제2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음
2) 부처의 명칭은 필자가 편의상 축약하였음

수도이전 과정을 통해 총 8,300개의 연방정부 일자리를 포함해 약 11,400개의 일자리가 본으로부터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의 급격한 경제위축을 막기 위해 베를린과 라인-마인지역에서 연방기능과 관련된 약 6,550개의 일자리가 본으로 이동하였다. 2002년 10월 기준으로 13,000명이 베를린의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에서는 8,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10〉 본과 베를린 간의 일자리 이동과 이주

구 분	이전하는 일자리(개)	이주자 수(명)
본에서 베를린으로(연방정부, 연방상하원, 연방대통령)	약 11,400	약 7,500
베를린에서 본으로	약 4,350	약 1,900
라인-마인지역에서 본으로	약 2,200	약 1,200

주 : 이외에 본에 약 3,900개, 베를린에 약 2,450개 그리고 라인-마인지역에 약 1,000개의 기존 일자리가 그대로 남게 되었음.
자료: 독일 연방건교부 홈페이지 자료, http://www.bmvbw.de/cms-aussen-speziel/, 2003.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부처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제1청사를 베를린에 두고 제2청사는 본에 두었다. 베를린에 있는 제1청사에는 장관실, 총무국,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 관련 부서, 주택 및 건설국 등이 배치되어 있고, 본에 있는 제2청사에는 도로철도국, 수운국, 항공국 등이 배치되었다. 베를린의 제1청사에는 전체 일자리(1,650여개)의 약 33%(약 550개)가 배치되어

있고 본의 제2청사에 67%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원배분 비율은 2002년 기준 자료로서 2004년 현재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본에서 건설교통부 청사로 사용되던 청사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연방건설청(BBR)이 사용하고 있다.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건교부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으며,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비디오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본에 잔류한 환경부의 경우 제1청사(본)에는 부처의 예산담당, 인사, 기타 내부 행정관리 등 일반 행정 관련 부서와 WA(수질, 쓰레기, 토양), IG(보건, 공해방지, 시설보호 및 교통, 화학물질안전), N(자연보호), RS(원자력시설의 안전, 방사선 보호, 핵처리 관련) 등 4개 부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베를린에 있는 제2청사는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 관련 부서 등 환경부의 수뇌부와 관련된 핵심 기능과 환경법 관련 부서, 환경정책 관련 주요 부서(환경정책의 경제적 문제 관련 등)와 국제협력 부서가 배치되어 있다. 베를린 제2청사에는 전체 일자리(742개)의 25%가 배치되어 있고 본 제1청사에 75%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 2002년 기준 자료로서 현재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고,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본으로 이동해서 1-2일 정도 집무한다고 한다. 연방건교부와 마찬가지로 베를린과 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비디오회의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본에 제1청사를 두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제1청사에는 군사전력국, 총무국, 군사행정국, 육·해·공군국 등이 배치되어 있고 베를린에 있는 제2청사에는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 관련 부서, 국방정책국, 무기국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본의 제1청사에는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3,300여개)의 90%(약 3,000개)가 배치되어 있고 베를린 제2청사에는 10%가 배치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력은 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국방부 인트

라넷), 이메일, 비디오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현재 본과 베를린 간에는 정부업무와 관련한 정기항공노선도 운영되고 있는데, 2003년 10월부터는 Hapag-Lloyd-Express와 Deutsche BA가 이 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수도이전에 따른 베를린의 청사 건설과 본의 경제기능 보강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기존 수도로 환도(還都)하는 형식으로 수도이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도이전에 따른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는 수도이전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새로운 청사를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에서는 수도이전 비용의 상한선을 200억 마르크(약 12조원, 1990년 기준)로 명시하였는데, 이전비용에는 청사건설비, 토지취득비, 주택공급비용, 본에 대한 보상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법에 정한 이전비용의 상한선은 대체로 지켜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일반건설공사에 약 61억 마르크,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지역의 주택건설에 16억 마르크, 수도이전과 관련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10억 마르크가 각각 소요되었다. 이러한 투자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90억 마르크가 기타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었다. 본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직원들을 위해 9,100호의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베를린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지 기숙사의 개조, 베를린과 근교지역의 주택신축 등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었다. 베를린이 동서베를린으로 분단되었을 당시 서베를린지역에 주둔하였던 미군이 통일 이후 철수하게 되면서 많은 군 숙소들이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숙소들이 개보수를 통해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으로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보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행정기관 및 국제기구의 본 유치', '본에 대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정부가 28억 마르크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약 24개의 연방기구와 행정기관들이 베를린과 라인-마인지역에서 본으로 이전을 하면서 약 6,5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도 다수 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는 10개의 국제연합(UN) 관련 기관들도 본으로 이주하였다. 본은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대도시권과 도시경제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수도기능의 이전에 따른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본은 이전의 연방수도에서 이제는 보다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서 변모하고 있다.

표 1-11〉 연방기관의 건설 비용

항 목	비용(마르크)
연방의회 의사당 개보수	6억
연방하원 관련 신축	19억 2,800만
연방총리관저 신축	4억 6,500만
연방정부청사 개보수 또는 신축	29억 1,600만
연방상원 관련 개보수 또는 신축	2억

자료: 독일 연방건교부 홈페이지 자료, http://www.bmvbw.de/cms-aussen-speziel/, 2003.

연방건설교통부장관 만프레드 스톨페(Manfred Stolpe)는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2004년 4월 25일 수도이전이 법에 따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촌평을 한 바 있다. 이것은 수도이전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일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이른바 통일비용으로 공식적으로 구 동독에 투입한 전체 비용이 약 1조 마르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수도이전 비용은 200억 마르크(2%)에 불과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수도이전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된 도시로의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 수도가 된 베를린에서는 수도이전에 따른 과도한 인구집중과 같은 부작

용이 발생하지 않았다.[74]

7. 산업입지 개발

1) 초기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서독분단은 기업입지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분단 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 동독에서 구 서독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구 서독의 뮌헨(München), 프랑크푸르트(Frankfurt/M.) 그리고 쾰른(Köln) 등이 기업입지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구 동독의 드레스덴(Dresden)에 입지하였던 담배제조기업들이 서독의 함부르크(Hamburg)로 이전하였고, 지멘스(Siemens)와 IBM이 본사를 베를린으로부터 뮌헨과 슈투트가르트로 옮겼다.

1944년과 1990, 1991년의 동·구 서독 간 기업입지변화를 살펴볼 때 구 서독에서는 뮌헨, 쾰른, 프랑크푸르트가, 구 동독에서는 막데부르크(Magdeburg)와 로스톡(Rostock)이 기업입지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 베를린은 분단상황 하의 섬(Insel)이었던 이유로 기업의 입지기능을 크게 상실하였다.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산업분야에서는 전면적인 재편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1990년 11월부터 199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인구의 수가 약 25% 감소하였고, 멕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베를린(동부)에서 이러한 고용감소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농업(-52.9%) 및 제조업(-40.1%)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용감소가 일어났다.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동부)에서는 농업 분야 종사자의 수가 60% 이상 감소하였다. 광업과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는 1992년 5월까지 튜링겐주와 브란덴부르크주

[74] 1990년 통일 당시 베를린의 인구는 346만명이었는데, 수도이전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2004년 3월 현재 베를린의 인구는 339만명으로 통일 당시보다도 오히려 감소하였다.

에서 일자리의 45%가 사라졌다. 교통, 철도, 우편 분야에서도 종사자의 수가 10%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베를린(동부)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 반면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안할트에서는 이 분야의 고용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반대로 은행, 보험 분야와 건축 분야에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 증가율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나지만,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상업분야에서는 작센 안할트주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이 분야 고용인구가 15 % 이상 감소하였지만, 튜링겐주(11.2%)와 작센주(7.9%)에서는 뚜렷한 증가가 나타났다.

통일 이후 신탁공사(Treuhandanstalt, THA)를 통해 짧은 기간 내에 국영기업들을 매각하는 기업민영화 정책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신탁공사의 민영화 정책은 개별 기업입지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체계적인 분산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 외에도 구 동독은 구 서독 사양산업의 입지문제, 단일업종의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등이 산업입지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동독 가운데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일부 업종이나 일부 대기업에 의존적이었던 도시지역(예를 들면 막데부르크와 로스톡)은 경제구조의 전환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구 서독에서 시장경쟁력이 뒤지는 기업들이 구 동독으로 이전해옴으로써 지역성장의 활력이 감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통일 직후에 동독지역에서는 불투명한 토지소유권의 처리문제 때문에 신속한 산업용지공급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시급한 투자를 우선하기 위해 원소유권 회복 대신에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토지공급의 문제가 일부 완화되었다. 그러나 보상액에 대한 시비,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공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0억 마르크로 추산되는 토양오염의 정화비용은 동독지역에 입지하려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공공이 토양오염의 정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토지공급확대 위주의 공공정책을 통해 동독지역의 기업입지여건이 호

전되었다(이상준, 1997).

표 1-12〉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산업입지 여건

부 문	입 지 여 건
토 지	동독지역은 토지소유권문제와 토양오염에 따른 환경 처리비용의 부담 등으로 신속한 용지공급이 지연됨
자 본	동독지역의 낙후된 자본재는 신규투자를 저해 서독지역의 경우는 통일비용 때문에 각종 세율이 인상되어 기업의 자본비용 부담이 가중됨
노동력	서독지역으로의 노동력 유출로 동독지역의 여건이 악화 서독지역은 부족한 노동력을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이주자들과 통근자들을 통해 보충받음
사회간접자본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부담 때문에 서독지역에서 교통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감소
임 금	통일 이후 동독지역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약화 서독기업들은 동독지역 지원에 따른 추가적 임금인상의 부담을 안게 됨

자료: 이상준, 1997.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중공업 중심에서 경공업과 서비스부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되었다.

표 1-13〉 통일 이후 구 동서독의 고용구조 변화 비교

구 분	산업별 고용비율 (%)					
	1990			2001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구 서독	5.0	30.8	64.2	2.4	29.1	68.5
구 동독	12.3	33.1	54.6	2.8	26.1	71.0

자료: 1990년 자료는 이상준, 통일과 국토개발의 과제-독일통일의 경우, 1996, p.54.
2001년 자료는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der Länder, 2001.

표 1-14〉 통일 초기 구 동독의 고용구조 변화(1989-1994)

경제 부문	1989		1994	
	천명	%	천명	%
농업	976	10.0	226	3.6
에너지, 광업	350	3.6	119	1.9
가공업	3,408	35.1	1,051	16.7
건설건축업	628	6.4	1,009	16.0
상업	850	8.7	707	11.2
교통과 통신	662	6.8	417	6.6
신용, 보험	58	0.6	95	1.5
서비스업	560	5.7	1,090	17.3
지역기관	2,040	20.9	1,301	20.6
비영리 조직	215	2.2	288	4.6
총계	9,747	100.0	6,303	100.0

자료 : Lutz,Burkart, Grünert, Holle, "Baschäftigung und Arbeitsmarkt". Di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 Opladen, 2001, p.154.

2)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과 산업입지기반의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구 동독 내의 민간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사업(Rahmenpla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유럽복구 프로그램(European Recovery Program:ERP), 자기자본 지원 프로그램(Eigenkapitalhilfeprogramm:EKH) 등이 있다.

또한 간접적인 세제측면의 지원수단[75]들로서는 투자지원금(Investitionszulage), 특별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 공공보증 프로그램(öffentliche Bürgschaftsprogramme) 등이 있다. 이들 6개 지원수단들이 민간투자에

[75] 대표적인 것으로 투자액에 대한 8~12%의 세금공제, 재산세 및 투자거래세의 면제 또는 감면 (통일 이후 1992년 9월까지 동독에서 이루어진 이들 투자보조금은 총 투자액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등이 있다.

대한 핵심적 지원수단이며 전체 경제지원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76] 이러한 각종 지원수단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수단이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사업이다.

표 1-15〉 구 동독에 대한 주요 경제지원 수단

지원목적	지원되는 프로그램
1. 투자지원	투자지원금(공동과제사업) 투자보조금(조세감면) 특별감가상각(조세감면)
2. 재정지원/기업유지지원	자기자본 지원 프로그램 유럽재건 프로그램(ERP)상의 기업유지지원 유럽재건 프로그램상의 건설 프로그램 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 프로그램 DtA기업유지 지원 프로그램
3. 재정지원/성장지원	자기자본 지원 프로그램 유럽재건 프로그램(ERP)상의 건설 프로그램 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 프로그램
4. 청산지원	1과 2의 지원목적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이 가능 자기자본 보완 프로그램 견실화기금(Konsolidierungsfonds)
5. 참여재정지원	재건은행-동독참여기금 유럽재건 프로그램(ERP)상의 참여 프로그램 자기자본 지원 프로그램 견실화기금
6. 판매지원	섬유·의류부문의 시범사업 시장화 지원 국내시장 지원 외국시장 지원
7. 기업개혁지원	동독 인력 지원 산업공동연구 동독 위탁연구 협력 지원 유럽재건 프로그램상의 개혁 프로그램 기술기업들에 대한 참여자본 연방교육·연구부의 사업지원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이상준, 통일과 국토개발의 과제-독일통일의 경우, 국토개발연구원, 1996, p.138에서 재인용.

[7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Bilanz der Wirtschaftsförderung des Bundes in Ostdeutschland bis Ende 1995, BMWi-Dokumentation No.396, Bonn, 1996, p.9.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계획에 의한 사업(Rahmenplan der Gemeinschaftsaufgabe(GA)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für den Zeitraum 1996-1999(2000))은 균형잡힌 지역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민간투자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즉 공공이 낙후지역 등 특정지역에 민간의 산업투자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수단을 동원하였는데, 이를 통한 구 동독의 경제재건이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 경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das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 공동과제(GA)사업은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77]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통일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이 사업의 주요 지원수단은 민간기업의 투자비용과 기반시설 건설사업[78]에 대한 지원금(Zuschüsse)이다.

이 사업에 의한 공공지원은 주로 제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KMU)에 대한 특별지원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부문의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과제사업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사업들이 기본적인 환경보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과제사업에 의한 지원은 생산부문의 지원 이외에도 각종 교육, 연구,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77] 낙후지역 내에서도 발전잠재력이 높은 도시지역에서의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78] 공동과제(GA)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기반시설확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공동과제지원지역(GA-Fördergebiet)의 지원대상지역은 '공동과제계획위원회(Der Planungsausschuss der Gemeinschaftsaufgabe)'가 구 서독 167개, 구 동독 58개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경제력과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종합지표모형(Gesamtindikatormodell)'을 사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구 동독은 자료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3개 지표만이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사용되었다.

- 1995년도 1인당 총연간수입(가중치 40%)
- 기반시설지표(가중치 10%)
- 저고용비율(Unterbeschäftigungsquote)(가중치 50%)

이 사업에 의한 지원자금(GA-Mittel)은 지역경제의 낙후도에 따라 A-지원지역(매우 심각한 낙후지역)과 B-지원지역(낙후지역) 등으로 차등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총 투자비용에 대해서 A-지원지역은 35%, B-지원지역은 18%를 지원하고 있다.[79] A-지원지역에는 구 동독 전체와 베를린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 서독의 취약지역들은 B-지원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구 서독의 중소기업들은 공동과제사업에 의한 지원 이외에도 유럽재건 프로그램(ERP)에 의한 저리 융자금을 기업의 이전이나 신·증설 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등 금융기관들로부터도 이와 같은 저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80]

공동과제사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의 창출이나 기존 고용의 유지를 위한 모든 기업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투자사업들은 다음

[79] 동베를린과 구 동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추가 특별지원이 가능한 데, 이에 따라 구 동독의 중소기업들은 최고 50%까지의 투자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250인 이하, 연간매출 4천만 유럽통화(ECU, 1ECU= 1.86 마르크) 이하 등의 조건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도 B-지역에서 추가적으로 10%까지 비용경감지원이 가능하다.

[80] 이러한 지원자금은 추가적(보조적)인 융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공공 재정지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과 같은 효과와 조건들을 갖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투자활동을 통한 지역소득 수준의 향상
- 투자활동을 통하여 기존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 지역 내에서의 생산활동이 주변지역(구 서독에서는 생산지로부터 반경 50km, 구 동독과 동베를린은 30km)의 소득향상을 유발
- 주변지역으로의 상품판매 실적이 투자계획 종료 후 3년 이내에 발생
- 이러한 투자활동을 통해 지원지역 내에 새로운 고정적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기존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지원대상이 되는 제조업부문의 투자에는 공장의 건설, 확장, 재정비 또는 전면적인 시설현대화, 공장의 인수 및 이전 등이 포함된다.[81] 공동과제사업은 이와 같은 제조업부문의 투자활동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부문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직업교육, 연구, 기술개발부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1990년 중반 이후부터 1995년 말까지 32억 마르크을 산업연구부문에 지원하였다.[82] 또한 제조업부문 이외에도 관광산업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지원금은 36개월 이내에 실행될 투자계획에만 지원되며, 투자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투자지원금을 통해 지원된 시설재는 투자계획의 종료 이후 최소한 3년 동안은 매매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과제사업은 생산활동의 기초가 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을 지원하

[81] 농림업, 어업, 광업 관련 산업, 에너지 및 용수공급, 건설업, 소매업, 교통, 창고업, 의료, 위생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82]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Bilanz der Wirtschaftsförderung des Bundes in Ostdeutschland bis Ende 1995, BMWi-Dokumentation 자료번호 396, Bonn, 1996, p.8.

고 있다.[83] 이 부문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건설비용의 50%까지 가능하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토지매입비용과 대규모 판매업과 관련된 기반시설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반사업의 시행주체는 게마인데 및 게마인데 연합체, 비수익목적의 법인 등이 될 수 있다. 공동과제사업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공업 및 업무시설 지역의 정비(환경보호사업도 포함)
- 조업이 중단된 공장 및 업무시설용지의 정비(토양오염제거사업도 포함)
- 교통시설의 신설 및 증설
- 에너지 및 용수공급시설의 신설 및 증설
- 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관광목적의 공공시설 정비
- 직업교육, 보수교육, 직업전환교육 등을 위한 시설의 건설
- 기업센터(연구·기술센터 등)의 신설 또는 증설

이러한 제도적 수단들을 기반으로 구 동독에서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데, 외국기업들은 구 동독의 노동력과 정책적 지원, 저렴한 부동산 가격 등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높은 에너지비용, 상하수도 요금, 지방행정의 불편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83] 공동과제사업은 이들 기반시설건설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계획비용 및 행정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표 1-16〉 구 동독에 투자한 기업들의 입지조건 평가

입 지 요 소	기 업			
	전체	구 동독의 지역 기업	서독기업이 소유한 기업	외국기업이 소유한 기업
소비자와 근접	4.0	4.0	4.3	2.5
임금비용	0.6	0.2	1.6	1.3
양질의 노동력	0.8	0.1	2.0	3.7
지원자금	1.2	−1.4	0.8	2.5
고속도로 연결	2.2	2.3	2.4	0.3
에너지비용	−6.5	−6.7	−5.9	−6.9
금융기관서비스	0.6	0.2	2.3	3.7
배송근접성	3.2	3.4	3.0	2.5
주정부의 지원	−0.8	−1.2	0.3	2.5
상공회의소의 지원	1.1	1.1	1.1	2.9
경제촉진조직의 지원	0.6	0.5	1.2	4.7
지방제세공과금	−5.7	−6.0	−4.8	−4.5
지방행정의 질	−2.8	−3.0	−1.7	−2.6
지역의 좋은 이미지	2.1	2.1	1.9	2.7
가용 용지	4.1	3.9	4.8	7.3
용지 임대료	−1.4	−1.6	−1.5	1.0
용지 매입가격	0.1	−0.6	1.9	4.4
대학 인접성	6.6	6.4	7.3	7.1
연구기관 인접성	5.3	5.3	5.2	5.7
주택 및 주거환경	2.6	2.6	2.8	–
대중교통	0.9	1.0	0.6	–
항공교통 연결	0.9	1.8	−0.7	0.5
교육의료서비스	3.8	3.7	3.8	7.7
광역철도 연결	0.0	0.2	0.5	–
문화서비스	0.5	0.4	0.6	–
여가휴양 기회	3.0	2.5	4.6	–

주 : 지표 10:좋음, 0:만족(보통), -10:좋지 않음. 독일경제연구소(DIW)가 1998년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Wochenbericht des DIW 50/99, p.929.

8. 수자원

1) 초기 상황

수자원의 양적 측면을 살펴볼 때 구 동독은 타지역들보다 비교적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의 절약이 필요한 상태이다. 수자원의 천연 가용 수량(水量) 측면에서 구 서독과 구 동독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구 서독은 비교적 물이 풍부한 반면 구 동독의 천연 가용 수량은 중부유럽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특히 구 동독에서는 하천오염에 의한 지하수와 표면수질의 엄청난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질적 측면에 있어서 전체 인구의 약 62%인 960만명이 낮은 수질의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동독 식수의 2/3은 지하수로 충당되고 있는데, 식수공급망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이다.

통일 직후 구 동독 주민들은 6,500개의 공공급수시설(öffentliche Wasserwerke)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전체 97,000km의 수도관 가운데 50% 가량이 노후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다.[84] 또한 통일 직후의 조사에 따르면 구 동독 전체인구의 약 62% 가량이 낮은 수질의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5] 이외에도 전체 인구의 50%를 포함하는 700개의 식수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검사(Sofortprogramm Trinkwasser 1990)를 시행한 결과 각종 중금속오염, 세제오염 등으로 95개 지역이 문제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구 동독의 식수공급체계가 갖는 질적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 동독은 하수정화시설의 공급비율이 58%로 구 서독의 89.7%보다 크

[84] 또한 하수관도 부실하여, 36,000km의 하수관 가운데 60~70%는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85] Kampe, Dietrich, "Zur Situation der Wasserinfrastruktur in den neuen Ländern", in: Raumentwicklung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Materialien zur Raumentwicklung, p.100.

게 낮은 수준인데, 이것도 수질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 및 기업폐수 총량은 구 서독이 88억m^3, 구 동독이 14억m^3이었는데 이러한 폐수량 가운데 구 서독은 약 98%인 86억m^3이 생물학적으로 정화처리되고 있는 반면에 구 동독의 경우 그 비율은 50%에 불과한 실정이다.[86]

표 1-17〉 집합하수시설과 정화시설의 공급비율

구 분	주민들의 시설연결비율(%)	
	집합하수시설	정화시설
서 독	92.5	89.7
동 독	73.0	58.0

주 : 서독은 1987년 현재
동독은 1989년 현재

자료 : Kampe, Dietrich, "Zur Situation der Wasserinfrastruktur in den neuen Ländern", in: Raumentwicklung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Materialien zur Raumentwicklung, p.102.

2) 상하수 처리 관련 지원 및 국제공유하천관리 지원

통일 이후 수자원분야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는 오염된 하천수를 정화하여 맑은 식수를 구 동독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취약한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해서 하천오염을 막는 것도 주요 과제였다.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수자원관리는 1957년 제정되고 1986년 개정된 수자원법(Wasserhaushaltsgesetz, WHG)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물의 공급 및 하수처리, 홍수피해관리, 수력활용, 내륙수운, 수변여가, 수질유지 및 오염제거, 연안보호, 자연보호 등의 영역에 대해 수자원관리의 목표와 관련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수자원의 관리에 대한 다양한 부문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

상수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연방정부는 구 동독에서 1991/1992년 구

[86]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Handwörterbuch der Raumordnung, Hannover, 1995, p.1079.

동독 부흥 공동과제(GA)의 일환으로서, 연방 연구·기술부의 식수 정화 개선을 위한 몇몇 실증 또는 시험 프로젝트들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주정부 및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국제공유하천의 지원과 관련하여 1990년 설립된 국제 엘베강 보호위원회(Internationale Kommission zum Schutz der Elbe)의 틀 내에서 61개 기초지자체 하수 정화시설의 완공(독일에 31개, 체코공화국에 31개)과 78개의 새 정화시설 건설 준비(독일에 65개, 체코공화국에 13개)가 추진되었다. 독일 측의 투자소요액은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약 23억 마르크였다.

9. 환경개선

1) 초기 상황

구 서독과 비교하여 구 동독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된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와 환경정보의 비공개에 따르는 환경실태의 인식부족 및 대처미비 등으로 야기된 것이다. 통일 이전에 구 동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환경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미약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해졌다. 동독시절의 40년에 걸쳐 시행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는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다룸으로써 심각하게 환경을 파괴하였다. 환경파괴가 심각했던 분야는 하천수로시스템, 폐수처리, 지하수 수질, 공기 오염, 폐기물 처리, 산업용 구(舊) 폐기물, 광산의 구 폐기물, 군대 폐기물,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87] 특히 대기오염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 이전에 구 동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타 선진공업국가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87] 구 동독의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신연방주 내의 생태학적 발전의 결산 및 전망(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위탁 자료 33 [제19권](문서번호 56).

나타내었다. 통일 직전이었던 1989년에 구 동독에서는 아황산가스(SO_2)배출량이 총 520만 톤에 이르러 토지면적당 배출량으로는 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인구 1인당 아황산가스(SO_2)와 먼지 배출량에 있어서는 구 서독보다도 15배가 많았다. 또한 약 1,660만명의 구 동독 주민들 가운데 약 26%인 430만명이 기준치 이상의 분진 공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600만명이 기준치 이상의 아황산가스 오염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8] 이 외에도 부유먼지의 경우에는 전체인구의 26.3%가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에 거주하였다.[89] 구 동독 가운데에서도 남부의 공업지역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하였는데,[90] 할레(Halle), 라이프치히(Leipzig), 켐니츠(Chemnitz) 등의 도시지역들에서 부유먼지와 아황산가스의 오염이 심각하였다. 특히 가장 오염이 심한 할레지역의 경우 73%의 주민들이 아황산가스에, 53%의 주민들이 먼지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오염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도 피해를 끼치는데, 특히 36%에 이르는 구 동독 산림의 오염률은 구 서독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들은 에너지절약동기 부족, 에너지설비 낙후,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 화력발전소와 난방시설의 낮은 효율, 에너지공급망 낙후, 대기오염유발에너지(황함유가 높은 갈탄) 사용 등이었다.

구 동독의 토양오염은 군사시설이나 기업시설들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매립, 갈탄 및 우라늄광산의 무분별한 개발, 각종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업생산 등의 요인들로부터 야기되었다.

통일독일 내에서 군대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었던 전체 면적 100만 헥타르 가운데, 구 동독의 인민군대(NVA)에서 사용한 부동산

88 주독대사관, 통일독일 6년, 동독재건 6년 – 분야별 통합성과와 향후과제–, 1996, p.462.

89 Institut für Umweltschutz(Hrsg.), Umweltbericht der DDR, Berlin, 1990.

90 Schmitz, Stefan, Luftbelastung und deren Verursach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Raumentwicklung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1, p.87.

3,300곳의 면적은 24만 헥타르에 달했다. 가장 심하게 오염된 토지의 유형은 군대 주둔지역, 훈련장소, 비행장, 경비지역, 그리고 저장탱크 시설이 있는 곳 등이다. 독일 내의 약 4,700곳에 달하는 군비 폐기물 의심지역 가운데 3분의 1 이상(1,632곳)이 구 동독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 350곳은 구 소비에트 군대(WGT)가 사용한 토지에, 그리고 253곳은 구 동독의 인민군대가 사용한 토지에 있었다(문서번호 56).

구 동독 전체토지 가운데 128,000ha의 토지가 갈탄채광을 위해 개발되었는데, 갈탄채광 이후 방치된 구멍이 전체적으로 3km^{3}에 이르렀다. 이것들은 쓰레기 매립이나 심지어는 화학폐기물의 매립장으로 오용됨으로써 토양과 지하수의 극심한 오염을 초래하였다. 또한 우라늄채광에 따라 방사능오염 토양이 대책 없이 노출된 것도 토양오염의 심각도를 더하게 하였다.[91] 이 외에도 우라늄광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경관파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전체적으로 구 동독은 급수, 하수처리 등의 환경기반시설이 서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92] 구 동독은 구 서독에 비해 낮은 하수도보급률과 생화학적 정화시설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환경기반시설의 수준은 직접적인 환경오염의 문제 이외에도 환경오염 제거비용에 따른 기업의 입지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

91 소비에트-독일-주식회사 "Wismut"에 의한 우라늄광 개발은 토양, 수질 등의 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낙후된 채광 및 처리기술 때문에 작센과 튜링겐지역의 1,500km^{2}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이 오염되었다.

92 수자원의 양적 측면을 살펴볼 때 구 동독은 타 지역들보다 비교적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의 절약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질적 측면에 있어서 전체인구의 약 62%인 960만명이 낮은 수질의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 동독 식수의 2/3은 지하수로 충당되고 있는데, 식수공급망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97,000km의 수도관 가운데 50% 가량이 노후되었거나 파손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36,000km의 하수관 가운데 60-70%도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표 1-18〉 통일 당시 동서독의 환경기반시설 비교

구 분	하수도 보급률(%)	생화학적 정화시설 보급률(%)
서독지역	92	90
동독지역	77	36

자료 : 주독대사관, 1996, p.271.

2) 구 동독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통일 이후 연방정부는 구 동독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1991년 2월에 "생태적 재건" 실행 프로그램(Aktions-programm "ökologischer Aufbau")을 발표하였다.[93] 이 프로그램은 단기대책으로서 환경오염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지역의 환경정비, 엘베(Elbe)강 및 주변지역의 정비, 대형 발전시설의 정비 등도 추진되었다. 또한 연방환경부는 1991년에 구 동독에서 35개의 환경시범사업(총 6억 7천 1백만 마르크)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한 환경정화사업의 지원재원은 CO_2발생에 대한 특별 부과세, 폐기물 특별 부과금, 독일재건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저리융자금,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GA)사업 출연금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으며,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투자의 유치 등도 추진되고 있다.[94] 연방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의 조업을 중단시켰고,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의 정화시설이 사용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구 동독의 대기오염문제에 있어서는 산업생산부문보다 화력발전시설들의 공해유발문제가 심각하였는데, 연방정부는 화력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소시설령(Grossfeuerungsanlagen-Verordnung)'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화력발전소에 의한 아황산가스(SO_2), 부유먼지 등의 방출량

[93] 이 프로그램은 신속하고 단기적인 환경정화사업을 통해 20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포괄적인 정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94] 주독대사관, 신설 5개주 환경재건 프로그램(요약), 1991.

을 1996년까지 크게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가정난방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갈탄 난방시설들에 대해서는 주택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현대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갈탄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공간정비계획(Raumordnungsplanung) 및 주계획(Landesplanung)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95]

- 환경적,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 갈탄 공급을 축소
- 갈탄 생산에 의존적인 지역들에 대한 새로운 개발개념 수립
- 광산 개발과 연관된 경관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 갈탄 생산과 연관된 토양오염 실태 파악과 정비
- 갈탄 생산지역의 수량변화에 대한 조사(특히 식수공급 및 지표수에 대한 영향의 측면에서)

통일 직후부터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부(BMU)는 구 동독의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했는데,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1,785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11억 7,500만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분야는 상하수도 개선(6억 5,800만 미르크), 대기오염 개선(2억 7,400만 마르크), 폐기물처리 개선(2억 4,300만 마르크)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작센주에 588개 프로젝트에 2억 9,800만 마르크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작센-안할트주에 282개 프로젝트에 2억 7,900만 마르크, 브란덴부르크주에 229개 프로젝트에 2억 5백만 마르크 등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95] Reinhard, Heinrich, Zur Umweltsituation in den neuen Bundealändern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räumliche Entwicklung, in: Raumentwicklung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1, p.86.

그림 1-10▶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부(BMU)의 지원(1990-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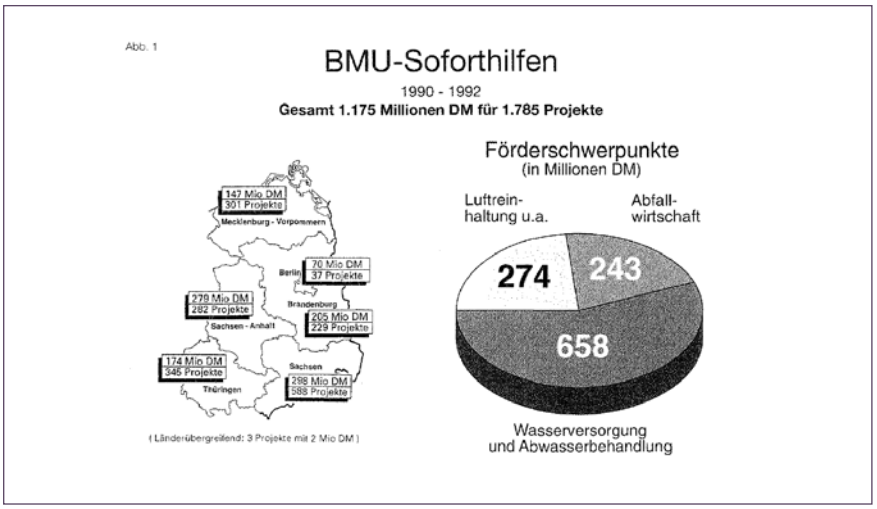

자료 : 구 동독의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신연방주 내의 생태학적 발전의 결산 및 전망(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위탁 자료 33 [제19권])(문서번호 56).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는 서독의 환경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동서독간 사회경제 통합일인 1990년 7월 1일 이후 구 동독에서는 '유해물질 방출에 관한 법(Immissionsschutzgesetz)' 등 서독의 각종 환경 관련법들이 시행되었다. 1990년 10월 3일부터는 연방환경법 이외에 경과기간(1995년까지)을 두는 조건으로 유럽(EU)환경법이 구 동독에서도 유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 동독의 산업시설들은 서독과 유럽연합국들의 환경기준에 맞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10. 접경지역

1) 초기 상황

연방정부는 분단기간 동안 동서독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로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들

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시설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96]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낙후지역 지원 관련 주요 법률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접경지역 지원법(Das Zonenrandföderungsgesetz:ZRFG, 1971)
- 지역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관한 법(Das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GRW, 1970)
- 게마인데 교통재원 조달법(GVFG) 및 연방 장거리 도로법(FStrG)[97]
- 지원지역법(Födergebietsgesetz)

통일 이전의 접경지역은 동독과의 국경선을 따라 남북으로 2,000km, 평균 폭은 40km정도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동독과의 접경지역 뿐만이 아니라 체코, 바틱해와의 접경지역도 포함하였다. 이 접경지역은 서독면적의 약 20%, 인구는 약 12% 가량을 포함하였다.[98] '접경지역 지원법(ZRFG)'은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수단이었다. 이 접경지역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전체 지역개발기금의

[96] Müller, Carsten-Wilm, Auswirkungen der Grenzöffnung zur DDR auf die verkehrlich-städtebauliche Struktur niedersächsischer Klein- und Mittelstädte, Hannover, 1994, p.177.

[97] 이 법들은 도로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들이다. FStrG에서 접경지역은 도로망의 확충사업 등에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며 소요계획(Bedarfsplanung)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게마인데와 게마인데연합체는 타 지역의 50%와는 달리 60%의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GVFG에서는 게마인데의 교통상태 개선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도로 및 공공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다. 이 법에서 각 연방주의 차량 수에 따라 연방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을 갖는 주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량 1대를 1.25대로 평가해줌으로써 도로건설사업에서 연방의 지원비율을 높여주었다. 접경지역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 75%(기타지역은 60%)까지 연방재원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98] Smith, Fiona M., "Politics, place and German reunification: a realigment approach, in: Political Geography, Vol.13, No.3, May, 1994, p.233.

48.4%가 투자되었다.[99]

접경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개발지원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 '지역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에 관한 법(GRW)'이다. 이 법은 대상지역 내의 민간투자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100] 접경지역 지원법과 '지역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관한 법'들은 해당지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경제적 기반시설들, 이를테면 교통로 등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실제사업의 추진 주체는 기초지방자치체들이다. GRW가 접경지역 외의 경제지원도 포괄한 반면에 ZRFG는 접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집중적 지원을 뒷받침한 정책수단이었다. 1989년도에 GRW에 의한 총 지원금액 9,240만 마르크 가운데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약 47% 정도였다.

'게마인데 교통재원 조달법(GVFG)'은 게마인데의 교통상태 개선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도로 및 공공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장거리 도로법(Das Bundesfernstraßengesetz:FStrG)'에서는 접경지역을 도로망의 확충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금에 있어서도 특별한 추가지원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제 및 교통부문의 지원 외에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 교육, 문화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2) 통일 이후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폐지되거나 일부 축소되었다. '접경지역 지원법(ZRFG)'에 의한 경제지원사업들은 1991년부터 1994년 말까지 단계

[99] Smith, Fiona M., 1994, p.234.

[100] Deutscher Bundestag, Fünfundzwanziger Rahmenpla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für den Zeitraum 1996 bis 1999(2000), Drucksache 13/4291, Bonn, 1996, p.5.

적으로 철폐되었다. 또한 '연방 장거리 도로법(FStrG)'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폐지하였다. '게마인데 교통재원 조달법(GVFG)'은 통일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을 낮추었다. 이전까지 사업비용의 75%까지 지원되던 것이 60%로 낮아졌고, 오히려 구 서독의 최고 지원비율이 75%까지로 상향조정되었다. 경과조치로 1992년까지는 접경지역의 지원 상한치가 구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 장거리 도로법(FStrG)은 이제 더 이상 접경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구별 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과 기타 낙후지역(구 서독 일부와 구 동독 전체)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지역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관한 법(GRW)'에 의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새로 제정된 '지원지역법(Födergebietsgesetz)'은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의 재건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들 지역에 대한 민간의 투자비용에 대해 세제혜택(특별감가상각)을 부여하고 있다.[101]

통일과정에서 구 동독의 접경지역 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제정되었던 중요한 법령은 '1990년 6월 25일자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 제14조에 근거한 1990년 ~ 1991년 간 경제기반시설 확충 및 접경지역의 경제기반 시설지원에 필요한 재원신청 및 승인에 대한 법령'이었다. 이 법령에서는 구 서독(독일연방공화국)과 인접해 있는 구 동독(독일민주공화국) 내 접경 지역에 경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4억 마르크 상당의 재원을 투입하는 조치를 시행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지원은 비(非)상환 보조금의 형태로 100% 지원되었다. 재원 마련은 구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과 주(州)의 예산에서 50%를, 구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예산에서 50%를 충당하였다. 1990년도 구 동독

[101] 1993년에 제정된 이 법의 원래 명칭은 '지원지역에서의 특별감가상각과 공제액에 대한 법(Gesetz über Sonderabschreibung und Abzugsbeträge im Fördergebiet)'이었다. Töben, Thomas, Das Födergebietsgesetz, Köln, 1996, p.66.

예산에서 책정한 2억 마르크는 기반시설 조치에 대한 재원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상기 조치의 실현을 위해 1991년도에 구 동독 전체에 투입되는 1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 규모를 마련토록 규정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상황이 않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였다. 1991년도의 지원조치에 투입되는 재원은 1991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되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02]

- 지역 경제를 위한 직업교육기관, 지속교육기관 및 재교육기관의 설치, 확충 및 재건축
- 산업지구 및 상업지구의 기반시설 개발
- 구조 조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건축시설 및 장비를 투입하여 상업 중심지구의 설치, 확충 및 재건축
- 기술융합시설들의 설치, 확충 및 재건축
- 상업부문의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확충 및 재건축

– 교통 연계시설

– 경제적인 에너지 및 수자원의 공급시설 및 분배시설

– 폐수 처리 또는 폐수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 관광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광지구 개발 및 공공 관광시설의 설립, 확충 및 확대

[102] 1990년 6월 25일자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 제14조에 근거한 1990년 ~ 1991년 간 경제기반시설 확충 및 접경지역의 경제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신청 및 승인에 대한 법령 및 국경지역에 대한 경제기반시설 지원확정(1990년 8월 8일) 독일민주공화국 법률관보, 제I부, 제51호, 1990년 8월 14일, pp.999-1000. 이 법은 1990년 8월 6일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발효된 "지역의 경제 구조개선"이라는 공동과제에 대해 1990년 8월 8일자로 발효된 독일연방공화국법의 효력에 관한 법이다(문서번호 72).

지원신청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과 추천은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공동지원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추천 및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1. 제도통합

1) 초기 상황

통일 이전 구 동독에서는 소위 영토계획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제시한 입지 및 투자결정을 위한 실행계획만을 전적으로 의미하였기 때문에 통일 이후 이와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새로운 제도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지방분권적인 결정 구조와 소위 말하는 역류원칙, 다양한 목표들의 조정, 법치국가의 절차상 규정의 준수 및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 간의 조절기능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정권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항목들이었다.

1990년 5월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통화·경제·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정서는 동독지역에서의 건설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들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통일(1990년 10월 3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서독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여 건설활동이 허가되었으며, 서독의 공간정비법(Raumordnungsgesetz)과 건설법전(Baugesetzbuch) 등의 공간개발 관련 제도들을 기준으로 동독지역에서 새로운 공간개발 계획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2) 통일 이후 구 동독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의 투자촉진법과 택지법의 도입 그리고 국토공간정비법의 개정 등은 국토 및 지역계획의 차원에서 더 강화된 제도적 탄력성을 보장하게 되었고 구 동독에서의 국토개발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1993년 5월 1

일에 발효된 투자촉진법과 택지법은 구 동독에서 산업개발 계획의 기획, 승인,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택지공급을 더 신속하게 하며, 쓰레기소각 시설의 승인을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촉진법과 택지법을 통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건축법전과 이 건축법전에 대한 사업법(Maßnahmengesetz)에 반영되었다. 추가적인 택지 공급의 추진은 일차적으로 사업법의 내용적 확대와 그 적용기간을 1997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한시적인 특별법들은 특별히 규정된 도시계획상의 계약과 같은 계약적 요소들을 통해 보완되었다. 이제까지 구 동독에서만 적용되었던 계획 및 토지개발구상은 구 서독에서도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상의 개발조치들은 지속적인 법률의 형태로 건축법전(BauGB)에 포함되었다.

연방자연보호법의 보완을 통해 건축 관련 처리규정이 건축계획 절차에 통합되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앞으로 건축계획상의 고려에 따라 이미 토지이용 및 건축설계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 피조물과 자연경관의 파괴를 막고 줄일 수 있는 대책 및 이러한 파괴에 대한 조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투자촉진법 및 택지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폐기물법과 환경오염 피해보호법(BImSchuG)의 개정내용은 폐기물법에 따른 계획확정 절차의 적용 범위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제외하고 이를 환경오염 피해보호법에 따른 더 신속한 허가절차 아래에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환경오염 피해보호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되고 기한이 정해졌다. 환경오염 피해보호법의 제 4규정의 개정을 통해 그 외 다른 시설들도 공공기관의 개입 없이 더 간소화된 허가절차의 규정을 받게 되었다.

투자촉진법 및 택지법을 통해 국토공간 정비법(ROG) 역시 개정되었다. 국토공간 정비 절차에 대한 규정(ROG 제 6a조)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 조정되었다. 지금껏 존재했던 국토공간 정비 절차와 형식화된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는 사라지게 되었다. 국토공간 정비 절차를 실행하는 기관은 이제 공공기관이 개입한 가운데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가

속화하는 국토공간 관련 환경영향의 비형식적 평가를 위해 이 형식적 평가를 포기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국토공간 정비 절차를 꼭 실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4주 동안의 기한 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국토공간 정비 절차 자체도 완전한 서류가 제출된 이후 6개월 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만약 국토공간 정비와 국토계획의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토공간 정비 절차를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기초통계 관련 제도 정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 간의 주택공급 실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택시장은 경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시장부문에 대해 시행되는 정책에 있어서 실제 주택 경기가 반영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건물 및 주택조사법('주택통계조사법 WoStatG')을 1993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구 동독과 동베를린지역에 소재한 건물·주택 통계조사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특히, 199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199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주거실태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이외에 주택이용 실태조사 준비를 목적으로 전체 건물·주택의 1% 무작위 표본추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 동독 연방주들과 동베를린지역을 대상으로 1995년에 건물 및 주택의 통계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방통계청과 주(州)통계청들이 논의하여 산출한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경우 8,000만 마르크에 달한다. 기초지자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600만 마르크에 달한다.

1993년도 조사대상인 연방지역 전체의 건물 및 주택의 1%를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 연방통계청과 주(州)통계청들이 협의하여 산출한 비

용은 연방과 주정부의 부담액이 3,150만 마르크에 달한다.[103] 조사내용은 건물의 경우 기초지자체, 지역 또는 시구역의 일부 여부, 건물유형(주거용 건물, 그밖에 주거 공간이 포함된 건물, 이용 용도에 따른 기숙사, 주거용 숙소), 건축년도, 건물 내 층수 및 주택 수, 거주인 또는 거주인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는 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자(地上權者)와 처분권자 및 이용권자, 소유권자 그룹을 기준으로 한 주택소유자협회, 주택 관련 기업 및 기타 소유권자, 반환청구권, 건축양식(전통, 조립식), 외관상 건물 건축 부분들의 보존상태, 건물의 주춧돌, 외벽, 계단시설, 지붕 구조, 지붕 및 배수 처리, 굴뚝, 폐수 처리, 난방 방식과 사용에너지의 종류, 1990년 10월 2일자에 적용된 소유형태(인민소유, 조합소유, 개인 소유) 등이 조사되었다.

주택의 경우 소유권자의 주택 이용, 외국출신 군인 가족, 외교관 또는 대사관 또는 직업영사관 가족의 주택 이용, 여가 및 휴가용 별장으로서의 이용 여부, 주택 내 설비인 부엌, 조리대, 욕실 또는 샤워실 및 화장실의 형태, 주택의 전체 면적, 6평방미터 이상 크기의 방 수, 점유의무 여부, 공공임대 주택건설 재원에 의한 주택의 지원 여부, 주택 공실(空室)에 대한 사유 및 공실 기간 등이 조사되었다.

[103] 건물 및 주택통계조사법 1993년 3월 18일.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0호, 1993, pp.337-341(문서번호 80).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인프라 재건의 성과와 과제

통일이 가져온 독일의 국토변화는 그 규모와 깊이가 넓고 깊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 동독은 인구가 줄었지만, 경제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환경적으로 나아진 지역이 되었다. 통일 이후 구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으로 구 동독의 전체 인구는 2007년까지 13% 감소하였다. 구 동독의 인구는 1989년 1,515만명에서 2007년 1,314만명(베를린 제외)으로 201만명(13%) 감소한 반면 서독지역은 497만명(8%) 증가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향후 2050년까지 동독지역의 인구가 2007년보다 24만명 감소한 1,290만명으로 전망되고 있다(서독지역은 481만명 감소한 6,222만명, 독일연방건설청(BBR)). 전체적으로 볼 때, 구 동독에서 구 서독으로의 이주는 통일 초기에 집중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양 지역간 이주가 균형을 이루었다. 통일 초기인 1990년과 1991년의 인구유출이 가장 컸다. 전체적으로 구 동독의 인구변화는 인구감소, 노령화,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19〉 구 동독의 인구 전출입 변화(1990-2002)

(단위: 명)

년도	전입	전출	전입-전출
1990	36,217	395,343	-359,126
1991	80,267	249,743	-169,476
1992	111,345	199,170	-87,825
1993	119,100	172,386	-53,286
1994	135,774	163,034	-27,260
1995	143,063	168,336	-25,273
1996	151,973	166,077	-14,034
1997	157,348	167,789	-10,441
1998	151,750	182,478	-30,728
1999	151,943	195,530	-43,587
2000	153,179	214,456	-61,277
2001	94,281	192,004	-97,723
2002	95,876	176,700	-80,824
1990-2002	1,582,116	2,643,046	-1,060,930

자료 : Weidner, Silke, Stadtentwicklung unter Schrumpfungsbedingungen - Leitfaden zur Erfassung dieses veränderten Entwicklungsmodus von Stadt und zum Umgang damit in der Stadtentwicklungsplanung, Leipzig, 2004, p.37.

그림 1-11▶ 1989~2009년 동서독지역 간 인구이동

(단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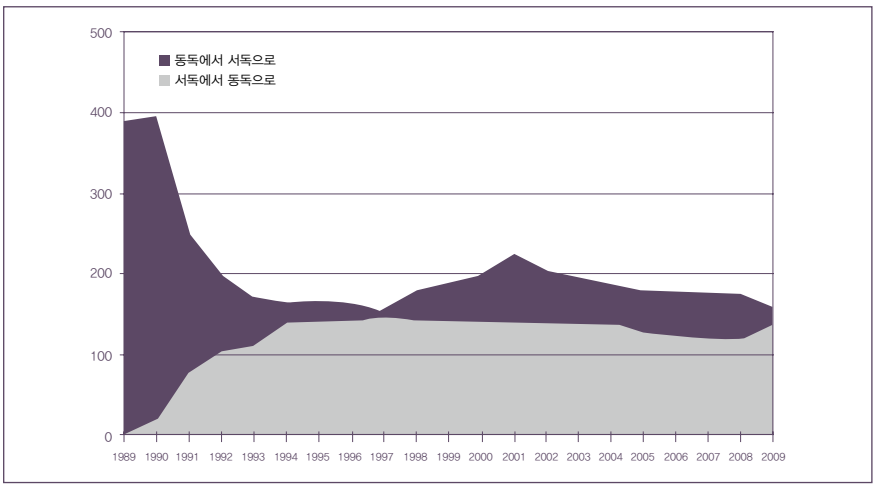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2010.

통일 이후 광공업중심의 구 동독 산업구조(1·2·3차 생산액 기준 10%/61%/29%, 1989년)는 구 서독(3%/28%/69%, 2006년)과 유사하게 서비스업 중심(4%/24%/72%, 2006년)으로 재편되었다. 서독에서 20~30년이 소요되었던 "3차 산업화"가 동독지역에서는 통일 초기 2~3년 사이에 급속히 진행되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산업구조의 현대화로 동독지역 1인당 GDP는 1991년 서독의 33% 수준에서 2007년 70%로 성장하였다. 구 동독 1인당 GDP는 2007년 2만 1,294 유로로 1991년 대비 191% 증가하였다.

표 1-20〉 부문별 동서독 변화의 특징

부 문	구 동독	구 서독
경제구조/ 산업입지	– 제조업부문의 감소, 개인 서비스업부문의 고용증가 – 건설업부문의 급성장 –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력이 산업입지상의 주요 문제로 부각	– 통일 초기의 통일특수 – 실업률의 증가
교통기반시설	– 운송의 중심수단이 철도에서 도로부문으로 변화 – 자동차 교통의 급증	– 사회간접부문의 투자감소
주택/토지/ 도시개발	– 주택의 질 개선 대량 주택공급 – 구 동독의 택지 및 주택가격이 서독지역에 비하여는 낮으나 증가속도는 더 빠름	– 주택건설사업의 증가
환 경	– 구 동독의 환경오염이 구 서독보다 심각하나 전체적으로는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기오염원에 있어서 구 동독은 기업부문, 구 서독은 교통부문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환경유해 기업들의 서독 이전

자료 : 이상준, 1997. 일부 내용 재수정.

표 1-21〉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주요 지표 변화

구 분		동독지역		서독지역	
		1989	2007	1989	2007
인 구 (천명)		15,150	13,140	62,063	67,028
면 적 (km^2)		108,588	108,858	248,252	248,257
인 구 밀 도 (인/km^2)		140	121	250	270
전체취업자 수 (만명)		974.7	574.1	2,763.5	3,242.3
고용비율 (%)	1차산업	10.8	3.0	3.9	2.0
	2차산업	50.4	25.2	39.7	26.0
	3차산업	38.8	74.5	56.4	72.0
1인당 GDP		5,840 달러/ 7,330 유로(1991)	21,294 유로	19,283 달러/ 22,030 유로(1991)	31,330 유로
1인당 주거면적(m^2)		27.6	38.6(2006)	37.2	44.0(2006)
하수정화시설 공급비율(%)		58.2	84.0(2004)	96.9	97.0(2004)
가구재 소비수준	전화보유가구 비율(%)	17.2(1988)	99.1(2008)	96.8(1988)	99.0(2008)
	자동차보유가구 비율(%)	54.3(1988)	73.3(2008)	76.1(1988)	77.9(2008)
	인터넷연결 비율(%)	–	57.6(2008)	–	65.9(2008)
국토면적당 총 고속도로연장 (km/km^2)		0.02	0.03	0.04	0.04
국토면적당 총 철도연장 (km/km^2)		0.13	0.10(2005)	0.12	0.11(2005)
철도의 전철화율 (%)		26	51	40	53

주 : 면적자료는 국가정보원. 2009.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참조, 1인당 GDP는 베를린 제외. 서독지역 인구자료는 베를린 포함.

자료 :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standsaufnahme der Wirtschaftlichen Fortschritte im Osten Deutschlands 1989-2008", Dresden, 2009.

* :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forschung,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2. Die Wirtschaft in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Fall der Mauer - Rückblick, Bestandsaufnahme, Perspektiven", Berlin, 2009.

1. 성과

기반시설 분야에서부터 통합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철도 1,950km의 현대화를 통해 전철화율은 1989년 26%에서 2005년 51%로 향상되었다. 고속도로 780km의 신설을 포함 총 2,000km의 도로 건설로 국토면적(km^2)당 연장이 1989년 0.02km에서 2007년 0.03km로 증가하였다. 공항시설의 확충을

통해 운항횟수는 1989년 4만 4,000회에서 2007년 11만 8,000회로 2.7배, 항공여객 수는 335만명에서 548만명으로 64%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과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부문에 640억 유로(76조 8,000억원)를 투입한 결과이다.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를 통해 이동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었고 동유럽국가와의 교류기반도 강화할 수 있었다.

구 서독 본(Bonn)에서 구 동독 라이프치히(Leipzig) 간의 고속도로 통행시간이 통일 이전 9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새롭게 유럽연합(EU)에 포함된 폴란드, 체코 등 중동부유럽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표 1-22〉 통일 이후 구 동서독의 인프라 수준 비교(2000-2001)

구 분		접근성 (도시)	접근성 (물류)	인력	의료	주거
구 서독	전 체	95	47	2.3	1.6	40.5
	인구밀집지역	76	38	2.6	1.6	39.2
	도시화지역	99	48	2.2	1.5	41.6
	농촌지역	120	60	0.9	1.5	43.4
구 동독	전 체	112	66	2.2	1.5	37.0
	인구밀집지역	90	55	3.0	1.7	37.3
	도시화지역	110	59	1.9	1.4	36.8
	농촌지역	132	84	0.7	1.3	36.4
독 일		99	52	2.3	1.6	39.8

주 : 접근성(도시): 3개의 대도시권까지의 도달시간(분; 2000)
접근성(물류): 화물 물류터미널까지의 도달시간(분; 2000)
인력: 주민 100명당 대학생 수(인; 2001)
의료: 주민 1,000명당 의사 수(인; 2001)
주거: 주민 1명당 주거면적(m^2; 2001)

자료 :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Regionalbarometer neuer Länder, Fünfter zusammenfassender Bericht. 2004, p.78.

새로운 광통신망 건설을 기반으로 통신망이 현대화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통신부문에서 1999년 동독지역의 전화보급률은 서독의 17% 수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100%로 증가하였다. 주거환경의 개선도 큰 성과 가운데 하

나이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규모로 주택의 개보수와 신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신규주택 건설로 주택재고가 700만호(1989)에서 890만호(2006)로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주택수도 0.43호에서 0.53호로 증가(서독지역 0.47호)하였다. 통일 이후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로 자가주택비율이 31%(서독지역은 45%)에 이르렀다. 1인당 주거면적은 27.6m^2(1989)에서 38.6m^2(2006)으로 40% 증가(서독지역 44m^2)하였다. 하수정화시설 공급률은 1989년 58.2%에서 2004년 84%로 크게 개선(서독지역은 97%)되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구 동독 주민들의 주택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회경제총조사(SOEP) 결과 주택부문의 만족도가 서독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림 1-12▶ 구 동서독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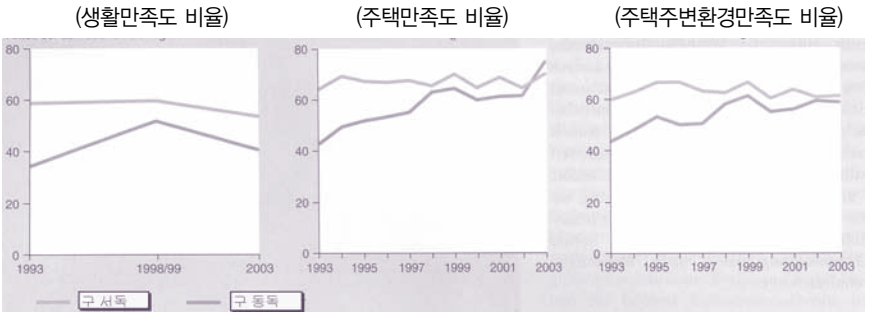

자료 :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Raumordnungsbericht 2005, BBR Press, Bonn, 2005, p.10.

탈공업화와 공공투자를 통해 대기와 수질 등 자연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통일 이전 동독에서는 할레(Halle), 라이프치히(Leipzig), 켐니츠(Chemnitz) 등의 공업지역에서 부유먼지와 아황산가스의 오염이 심각하였으나, 통일 후 산업구조의 재편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전면적 개선으로 구 동독의 대기 및 수질오염이 크게 낮아졌다. 주민 1인당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1989년 0.32톤에서 1994년 0.12톤으로 감소하였고, 먼지배출량은 0.12톤에서 0.01톤으로 감소하였다.

구 동독의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해외기업이나 구 서독 대기업들이 구 동독에 투자를 하였는데, BMW를 유치한 라이프치히와 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한 드레스덴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림 1-13▶ 라이프치히 북부 교외지역의 BMW자동차공장

자료 : Stadt Leipzig, Bericht zur Stadtentwicklung, Beiträge zur Stadtentwicklung, 42, 2004, p.39.

독일 동남부 작센(Sachsen)주의 드레스덴(Dresden)과 라이프치히(Leipzig) 및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의 할레(Halle)는 3각 대도시권의 핵심을 형성하면서 구 동독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데, 작센삼각주의 핵심 5개 도시지역은 인구가 380만명 규모이며, 기타 참여도시들까지 포함한 인구는 470만명, 주변 농촌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인구는 700만명에 이른다.

그림 1-14▶ 대도시지역 작센삼각주(Die Metropolregion Sachsendreieck)

자료 :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überregionale Partnerschaften. Ein MORO-Forschungsfeld". MORO-Informationen 자료번호 3/1-05/2008, 2008.

2. 과제

독일의 국토분야 통합은 많은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종합적 계획과 전략이 없이 국토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와 과잉투자에 따른 재정낭비가 발생한 것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독일연방정부는 통일 이후 2003년까지 동서독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투자에 1조 3,000억 유로(약 1,560조원)를 투입(1/2은 주택과 인프라 등 국토개발에, 나머지 1/2은 사회복지에 소요)하였으나, 지자체 간 '나누어 먹기 식' 투자로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다.

표 1-23〉 독일통일 비용 내역(1991-2003 추정치)

(단위: 10억 유로)

구 분	내용	금액	비용(%)
인프라 재건 지출	도로, 철도, 도시개발 등	160	12.5
경제(기업)활성화 지원 지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지원 등	90	7.0
사회보장성 지출	연금, 노동시장보조, 육아보조 등	630	49.2
임의 기부금 지출	통일기금, 주재정균형 등	295	23.0
기타 지출	인건비 및 국방비	105	8.2
총 이전 지출		1,280	100.0
구 동독 수입(세금 및 사회부담금)		300	23.4
순 이전 지출		980	76.6

주 : 인프라 재건 지출과 경제 활성화지원 지출, 임의 기부금 지출 등은 모두 물리적 개발과 연관된 부문이다. 따라서 전체 통일비용의 절반 가량은 물리적 개발에, 나머지 절반은 사회적 복지에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독일연방건설교통부, 독일연방경제자문위원회 자료. 김창권,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2005년 겨울호, 2005, p.69에서 재인용.

정책수립과정에서 지나친 정치적 고려로 인해 주택에 대한 과잉투자가 야기되었는데, 구 동독에서 100만호의 주택 공가(空家) 처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까지 공적자금 300만 유로를 투입하여 30만~40만호의 공가를 철거할 예정으로 있다. 라이프치히(인구 51만명)의 경우 통일 이후 재정지원을 통해 개보수된 주택의 23%가 공가문제로 다시 철거될 예정이다.

그림 1-15▶ 도심 공가 철거와 녹지 공간 확보

자료 : 이상준 외, 전게서, 2006, p.78.

지역간 격차 심화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내 지역경제의 남북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북부지역(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중부지역(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남부지역(작센, 튜링겐) 등 세 지역 가운데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지역총생산이 높은 추세가 유지되어 지역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전체적인 시사점

통일은 동서독에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가져왔다. 동독지역은 낙후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일거에 선진화되었고, 서독지역은 동유럽 진출의 확고한 발판을 확보함으로써 유럽의 정치경제적 강자로 복귀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통일 직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경제위기를 맞았던 동독지역은 이제 첨단산업과 현대화된 인프라 그리고 선진적인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으로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비록 서독으로의 이주로 인해 동독지역의 인구가 200만명이 넘게 감소하였지만, 동독지역 1인당 GDP가 통일 이후 2배나 증가하여 현재는 서독지역의 70% 수준인 2만 1,300 유로에까지 이르렀다.

통일 이후 가장 직접적인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주거부문에서 가시화되었다. 동독지역은 여전히 서독지역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택만족도에서는 서독주민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개선된 주거환경이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어느 정도 억제한 효과도 있었다.

이와 같은 통일의 성과는 연방정부가 통일 이후 13년 간 약 1,6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집중적으로 동독지역에 투자한 결과였다. 독일은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고자 통일 초기인 1991년에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부과하였던 '연대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수요를 무시한 무리한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동독지역의 인구가 200만 명이나 줄어드는 동안 주택은 190만호가 늘어났다. 현재 독일 내 동독지역에서는 100만호에 이르는 공가주택과 관련 유휴 인프라의 처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구 동독지역의 인프라 재건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주택과 인프라의 과잉공급 문제, 지역 간 개발격차의 문제 등을 반면교사로 하여 효율적인 통일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의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시대에 추진할 개발의 목표와 과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 지가 명확해진다. 특히 남북협력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대북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6▶ 구 동독의 주민 1인당 건설투자 추이(구 서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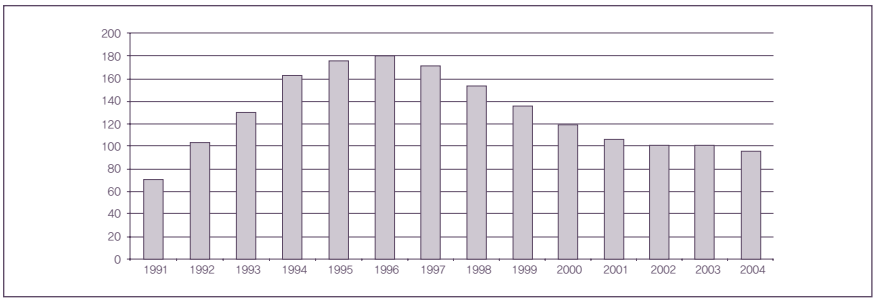

자료 : Peters, Jürgen et al, Zukunft für Ostdeutschland, Hamburg, 2006, p.20.

그림 1-17▶ 통일 이후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주민 1인당 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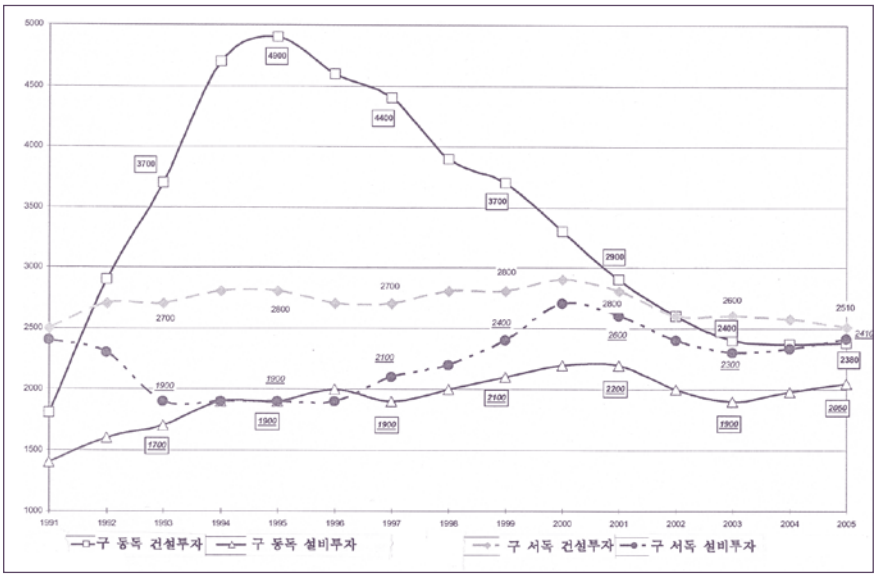

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6, p.170.

우리는 동서독이 통일 이전에 사회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미처 의도하지 못했던' 통일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분단시기인 1971년부터 1989년 사이에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약 7조 1,500억원 가운데 80% 이상이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부문의 개선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과정 속에서 우리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남북 간 균형발전과 동북아차원의 한반도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구도 하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국토개발의 우선순위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남북협력단계에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도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제기된 국토개발의 주요 과제들은 향후 남북협력의 추진과정에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 후 동독지역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재정낭비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국토교통분야의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직접적 경제효과와 북한의 경제개방 효과 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에서 추진된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의 연결사업은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해서 통일비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대규모 동독지역 투자와 지원으로 인해 독일의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말 기준 독일의 국가부채는 1조 5,180억 유로이며, 상당부분은 통일비용에서 초래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재정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했던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통일비용의 합리적 조달을 위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연대보조금(Solidaritatszuschlag)' 등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시행했던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분야별 시사점

분야별로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권 정립 및 토지주택의 사유화부문에서는 통일 이후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토지소유권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독일사례는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독일사례는 신속한 투자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개발 및 주거지원분야에서는 세제혜택을 통한 주택건설의 촉진이 중요하고, 주거비와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이 통일 초기에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도시정비분야에서는 노후된 도심 시가지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중요함을 독일사례는 시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심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수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정비분야에 있어서는 낙후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개발분야에 있어서는 통일 직후 시행된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와 같은 특별한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처럼 적기에 적절한 정책수단을 우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계획간소화법과 같이 신속한 교통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관련 제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일 수도 분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통일 후 구 동독 개발에 있어서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은 경제적, 경제외적 측면에서 큰 동력이 되었다. 우리도 통일 이후 수도이전 문제를 한반도의 발전과 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입지개발분야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통해 구 동독에 새로운 기업투자를 유치한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분야에서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오염문제가 심했던 하천을 정화

하고 상하수도시설을 현대화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먹는 물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독일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수자원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분야에서도 오염의 제거와 청정한 환경의 조성이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독일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접경지역분야에서는 통일 이전의 분단 관련 특혜가 통일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독일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 관련 제도의 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제도의 통합분야에서는 통일 직후 구 서독의 계획체계가 일부 과도기를 거치면서 구 동독에 적용되었던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토 관련 계획제도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독일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표 1-24〉 분야별 시사점 종합

분 야	주요 내용	시사점
소유권 정립 및 토지주택의 사유화	'보상 보다는 반환우선' 원칙 '재산권 반환청구 시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법(투자우선법)', 신탁공사를 통한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토지거래허가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토지소유권 정립이 중요, 신속한 투자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택개발 및 주거지원	'투자용이화 및 주택건축용지법', 구 동독에서 임대주택 건설 투자에 대한 특별공제, 주택개선 프로그램, 주택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	세제혜택을 통한 주택건설의 촉진이 중요 주거비와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이 중요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 '구 동독-도시정비 프로그램', 이전적지 활용	노후된 도심 시가지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중요, 역사적 건축물 보호 필요
농촌정비	농촌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낙후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교통 인프라개발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 '구 동독과 베를린주의 교통로 계획촉진을 위한 법', 계획 간소화법	적기에 적절한 정책수단을 준비할 필요, 계획수립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개발 필요
통일 수도	베를린/본-법, '본(Bonn) 보상에 관한 협정'에 따른 본 지원	효율적 수도이전을 통한 동서독 균형발전
산업입지개발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사업, 투자지원금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금융지원 중요
수자원	수자원법에 의한 지원, 공동과제 "지역경제 구조의 개선" 사업에 의한 지원	무엇보다도 먹는 물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
환경개선	"생태적 재건" 실행 프로그램 상하수도 개선, 대기오염 개선, 폐기물 처리 개선 지원	오염의 제거와 청정한 환경의 조성이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접경지역	'지원지역법'에 의한 지원,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 제14조에 근거한 1990년~1991년 간 경제기반시설 확충 및 접경지역의 경제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신청 및 승인에 대한 법령'	분단 관련 특혜가 통일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상황,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 관련 제도의 적용이 중요
관련제도 통합	건축법전 개정, 건축법전에 대한 사업법투자촉진법 제정, 국토공간정비법의 개정	통일 직후 구 서독의 계획체계가 일부 과도기를 거치면서 구 동독에 적용되었던 점

참고문헌

김창권,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2005년 겨울호, 2005.
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연구, 1994.
박성훈,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배진영, 통일이 동, 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1994.
이상준,「통일과 국토개발의 과제-독일통일의 경우」, 국토개발연구원, 1996.
이상준 외, 통일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국토연구원, 2000.
이상준 외,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2006.
주독대사관, 신설 5개주 환경재건 프로그램(요약), 1991.
주독대사관, 통일독일 6년, 동독재건 6년 – 분야별 통합성과 향후과제-, 1996.
통계청, 통독 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1996.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국유기업 관리 연구, 2012.
한국토지공사, 해외의 수도이전과 관련된 논쟁 및 시사점, 2004.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ARL)(Hrsg.), Handwörterbuch der Raumordnung, Hannover, 1995,
Bischoff, Bernhard, Grundstückswer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lin, 1996,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Regionalbarometer neuer Länder, Fünfter zusammenfassender Bericht, BBR Press, Bonn, 2004.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Raumordnungsbericht, BBR Press, Bonn, 2005.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überregionale Partnerschaften, Ein MORO-Forschungsfeld”, MORO-Informationen 자료번호 3/1-05/2008, BBR Press, Bonn, 2008.
Bundesministerium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Raumordnung in Deutschland, Bonn, 1996.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 Nachhaltige Stadtentwicklung-ein Gemeinschaftswerk, Städtebauli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Bonn, 2004.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Bilanz der Wirtschaftsförderung des Bundes in Ostdeutschland bis Ende 1995, BMWi-Dokumentation 자료번호 396, Bonn, 1996.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forschung,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2, Die Wirtschaft in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Fall der Mauer – Rückblick, Bestandsaufnahme, Perspektiven", Berlin, 2009.

Deutscher Bundestag, Fünfundzwanziger Rahmenpla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für den Zeitraum 1996 bis 1999(2000), Drucksache 13/4291, Bonn, 1996.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Wochenbericht des DIW 50/99.

Dübel, Achim, Privatisation and Restitution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New Länder of Unified Germany, Unpublisched, 1996.

Häußermann, Hartmut, "Die Transformation des Wohnungswesens", in: Städte und Regionen, Opladen, 1996.

Heil,Karolus, Puck,Günter, Welch Guerra,Max(Hrsg.), Planung zwischen DDR und BRD, Berlin, 1992.

Herfert,Günter, Lentz, Sebastian, "New Spatial Patterns of Population Development as a Factor in Restructuring Eastern Germany", in: German Annual of Spatial Research and Policy, Berlin, 2006.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standsaufnahme der Wirtschaftlichen Fortschritte im Osten Deutschlands 1989–2008", Dresden, 2009.

Institut für Umweltschutz(Hrsg,), Umweltbericht der DDR, Berlin, 1990.

Kapphan, Andreas, "Wandel der Lebensverhältnisse im ländlichen Raum", in: Städte und Regionen –Räumliche Folgen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Opladen, 1996,

Lutz, Burkart Grünert, Holle, "Baschäftigung und Arbeitsmarkt", Di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 Opladen, 2001.

Müller, Carsten–Wilm, Auswirkungen der Grenzöffnung zur DDR auf die verkehrlich–städtebauliche Struktur niedersächsischer Klein– und Mittelstädte, Hannover, 1994.

Peters, Jürgen et al, Zukunft für Ostdeutschland, Hamburg, 2006.

Reinhard, Heinrich, Zur Umweltsituatio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räumliche Entwicklung, in: Raumentwicklung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1.

Rhode, Bernd, 통독 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전략 – 교통부문 중심으로 – *(Strategien zur Infrastrukturentwicklung nach der deutschen Einheit mit dem Schwerpunkt Verkehr),* 한독국제세미나, 국토개발연구원, 1996.

Smith, Fiona M, "Politics, place and German reunification: a realignment approach, in: Political Geography, Vol,13, No,3, May 1994.

Stadt Eberswalde, Stadtzentrum Eberswalde, Stadtsanierung, 1992–2004.

Stadt Leipzig, Bericht zur Stadtentwicklung, Beiträge zur Stadtentwicklung, 42, 2004.

Statistisches Bundesamt, FAZ–Informationsdienste 1990, 1991.

Strubelt, Wendelin, "Regionale Disparitäten zwischen Wandel und Persistenz", in: Städte und Regionen, Opladen, 1996.

Töben, Thomas, Das Födergebietsgesetz, Köln, 1996.

Weidner, Silke, Stadtentwicklung unter Schrumpfungsbedingungen – Leitfaden zur Erfassung dieses veränderten Entwicklungsmodus von Stadt und zum Umgang damit in der Stadtentwicklungsplanung, Leipzig, 2004.

Wessel, Karin, "The German Unifica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astern Germany", 국토연구 제26권, 1997.

Witt, arsten, Der Flächenerwerb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öln, 1996.

www.stadtumbau-ost.info

www.bmvbw.de/cms-aussen-speziel

독일통일 총서 4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구 동독지역 인프라 구축과 동부 재건 프로젝트

베르너 페니히 /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할레시(동독의 도시)에는 2차 세계대전 동안 7,000채의 주택이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1945년부터 1990년 사이에 17,000채의 주택이 폐허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일부는 철거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동독사람들은 '무기없이 폐허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냉소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서독에서는 총 생산의 47%가 공공예산에, 53%는 투자에 사용되는데 반해, 동독에서는 85%가 소비에 사용되고 단지 15%만이 투자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보수에 아주 적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업장, 주택, 그리고 기반시설과 같은 국가의 자산은 노후하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로타 드 메지에르-

위에 인용한 글은 동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이자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로타 드 메지에르가 1990년 당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게 될 동독 국가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1989년 훨씬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후에 건국된 두 개의 독일 국가 상황을 비교해 보면 동독의 출발조건은 서독에 비해 훨씬 열악하였다. 왜냐하면 소련은 동독에게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대규모로 배상을 받아 갔다. 그리고 동독은 미국이 서독에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였던 마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

동독은 1989년 가을 건국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을 때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동독의 지도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 그럴 의지도 없었다. 물론 동독 국가가 존재하는 40년 동안 주민의 생활수준과 노동, 주거조건, 그리고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독에는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공공사업의 포커스가 잘못 잡힌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동독에서 진행한 사업계획이 자주 현실적인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 독일에서 동부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독의 이전 역사와 1990년 이후의 예외적인 출발조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일반적인 위기단계를 보여준다. 바로 이런 위기의 말기적인 상황이 동독 체제 말, 그리고 신연방주가 출발할 당시 동독사회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였다.

그림 2–1▶ **위기단계와 대응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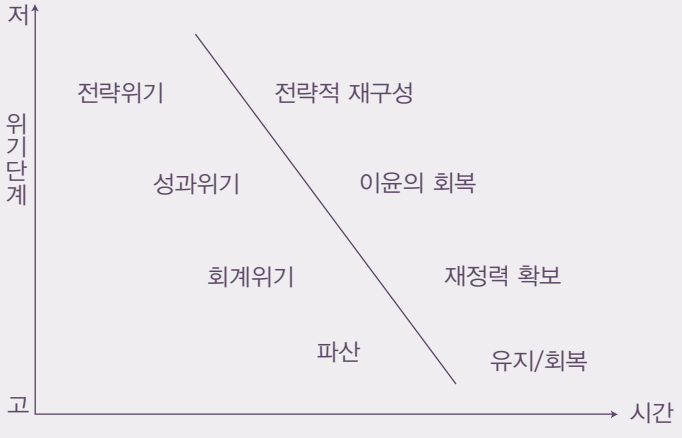

결국 1990년에 신연방주에서 “동부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 단계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파악 – 수요조사 – 예측 –계획 – 실행

기존의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시의 기반시설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오염의 정도가 어떤 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 과도기의 마지막 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다. 1990년 10월 이후에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건이 좋아졌다. 그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도 분명해졌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1990년 여름에 연방정부는 “독일통일” 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

신연방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전의 경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시되었던 많은 조치와 재정계획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다시 수정되거나 연장되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평가서가 작성되었고 그 평가를 근거로 계획이 세워졌다.

[1] "독일통일기금" 설치법 (문서번호 81).
독일통일기금의 도입에 관한 법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의 31조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과 도로, 철도, 수로의 건설을 위한 계획이 이런 방식으로 세워졌다.

통일이 실현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에는 계획된 후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분석하였던 조건과 상황이 변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조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주로 설명하겠다.

- 구 동독지역 부흥을 위한 사업의 출발조건과 구 채무 문제
- 철도, 우편, 전화통신, 도로와 운송로 등의 기반시설 건설
- 도시정비와 동부 도시재건
-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 검토, 조정, 협력
- 동부 재건 사업에 대한 평가서와 진행보고서

제1장

문제점 및 배경

독일은 1990년 이후 "동부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사업을 통하여 구 동독, 신연방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투자된 재원만을 보면 신연방주 주민 일인당 투자된 금액이 서독 주민 일인당 투자된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의 출발조건이 훨씬 열악하였기 때문에 서독에 비해 신연방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신연방주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통일이 실현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교통, 통신, 학교, 대학, 학술연구와 기업과 같은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이들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이 2/3정도 남아 있다고 하였다. 2005년에 작센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투자가 부족 문제가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2005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2]

[2] 2008년도 작센주 동부 재건 성과 보고서(문서번호 82).

제1절 구 채무와 소유권의 문제

신연방주의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에서 물려받은 산업시설들이 너무 열악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독에서 물려받은 채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 채무"라고 부르는 이 채무는 특히 신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신연방주의 학교, 유치원, 주택공사와 같은 시설들은 동독의 구 채무를 물려받아야만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시설들이 동독 시절에 동독 중앙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독 체제 하에서 이들 개별 기관 또는 시설들이 자체적인 필요 때문에 융자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동독 중앙정부에 제공하여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볼 때 동독 중앙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단체는 개별 시설과 기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동독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1990년 10월 3일부터 그들이 융자받은 이자를 물고 원금을 상환해야만 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0년 경제 화폐통합 당시 동독의 구 채무는 1990년 전반기의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억 마르크였다(화폐교환율 2:1)."[3] 이러한 구 채무가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신연방지역의 기초단체인 게마인데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 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경제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신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가 구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 지 앞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통일 초기에 신연방주의 기초단체 게마인데들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였다. 1993년 여름에서야 구 채무지원법이 도입되어 지역의 주택회

[3] 동독 사회 시설과 연결된 구 채무 문제 – 발전과 해결(문서번호 83).

사와 주택조합, 그리고 민간 세입자들을 위해 구 채무의 일부를 삭감해 주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4]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신연방지역에서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었던 것은 불분명한 소유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제한규정들, 그리고 복잡한 허가절차였다. 특히 소유권 문제는 단순히 주택과 농경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상점과 공장도 해당되었다.

동독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인민소유였던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임무를 넘겨받은 신탁관리청이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었지만, 원소유자가 재산반환 신청을 한 경우 신탁청은 단순한 신탁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소유권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재산이 반환된 것은 아주 극소수의 경우였다. 대부분은 장기간의 지루한 분쟁과 소송이 이어졌다.

소유권 반환 문제는 나치 체제 하에서 몰수된 유대인 재산의 소유권 문제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건설 영역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유대인의 소유 재산 반환에 관한 문제는 이미 통일 이전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었다. 1990년 6월에 로타 드 메지에르 당시 동독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1951년에 설립된 유대인협의회(Jewish Claims Conference)의 대표와 만났다. 이 기구는 유대인 단체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나치에 의해 몰수된 유대인 재산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들이 토지의 반환과 함께 총 1,200억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자 동독 총리는 동독 국가가 파산하기 직전이라고 설명하였다.

재산 소유권과 관련해 독일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

[4] 주택구입 보조금 프로그램(문서번호 20).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구 채무지원법(문서번호 21).
동독 사회 시설과 연결된 구 채무 문제 – 발전과 해결(문서번호 83).

일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 논의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원소유자 또는 원소유자의 법적 상속인에게 반환. 동독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구 동독지역이 개인의 소유권 원칙을 보장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 원래 형태로 소유권을 반환.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동독 통치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3. 반환하지 않고 보상해 주는 것. 이 방식 또한 실현되기 쉽지 않았다. 보상해 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재산권 문제를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9월 23일에 동독의 인민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재산권문제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5] 이 법안은 재산권은 그것이 동독 시절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몰수되었거나 보상받은 금액이 당시 동독의 시가와 비교해서 아주 낮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동독법에 포함되었다. 보상과 배상에 관한 새로운 법이 도입된 것은 1994년의 일이다.[6]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이 결정되고 난 후, 연방정부는 재산권 문제를 담당하는 연방관청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동독에는 등기체계가 없었고, 토지대장을 만들지도 않아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통일 초기에 신연방주에 등기소를 세우는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고, 서독의 자매결연 파트너들도 그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

[5]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문서 1a, 1b)

[6] 배상 및 보상급부법(문서번호 84).

었다.[7]

통일 초기에 소유권 반환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많았지만, 그것이 신속하게 해결된 경우는 아주 적었다.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 제공된 공적 재원이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1990년 10월부터 1992년 9월 말까지 230만 건 이상의 소유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에 해결된 것은 12%가 채 되지 않았다. 작센주의 경우 17.7%, 베를린은 5.6%였다.

재산권을 반환받은 원소유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새 건물로 개축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신연방주에서 동부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부딪쳤던 또 다른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던 석면이 인체에 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건물들을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과 관련된 서독의 엄격한 법 규정이 신연방주에서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10월 3일 이전부터 신연방주의 모든 영역에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연대협약 I이었고, 그것을 연장한 연대협약 II는 2019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7] 정책문서를 통해 본 행정통합 참조.

연대협약

이 협약은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에 체결된 이 조약은 구 동독지역이 신연방주의 재건과 분단 결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의 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거기에 연방정부가 추가지원금을 보충해 주기로 하였다. 연대협약은 연대세, 다시 말해 일종의 통일세는 아니다. 연대세의 경우 소득이 있는 모든 독일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신연방지역의 주민도 예외가 아니며, 이를 통해 거두어지는 세수가 꼭 동부건설(Aufbau Ost)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규정도 없다.

연대협약 I

1993년 3월 13일에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총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 1995년에 종료되는 독일 통일 기금을 1,697억 마르크로 증액한다.
- 신연방주를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 체계에 포함시킨다.
- 거래세 중에서 연방주가 가져가는 부분을 37%에서 44%로 늘린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을 연방정부가 보충액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을 통해 연방주의 재정이 연방 평균의 99.5%가 되도록 보장한다.
- 5개의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10년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총 206억 마르크의 재정이전을 통한 지원을 받는다.
- 연방주의 재정적인 부담의 40%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상업세를 증세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재정배분 비율을 낮춘다.
- 구 채무상환기금의 설치. 이 기금을 통해 신탁청과 재건기금, 그리고 지방 주택회사의 구 채무를 모두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구 채무가 총 3,360억 마르크이다. 이 채무에 대해 연방정부가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 연대협약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효하다.

연대협약 II

신연방주들이 연대협약 I이 종료되는 2004년까지 경제적으로 서독의 연방주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 결과 연대협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01년에 연대협약 II가 체결되었다.

2019년까지 유지될 연대협약 II를 통해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에 지원할 총액은 1,565억 유로이다. 이 금액은 두 개의 바구니로 나누어진다.

바구니 I은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 원칙의 틀에서 보장된 연방정부의 추가 보충액을 포함한다. 이 재원은 신연방주의 기반시설을 보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볼 때 이 재원은 구체적인 목적에 매인 금액이 아니며 2019년까지 1,053억 유로가 지원된다.

바구니 II는 연방정부가 주로 신연방주에 제공하는 기타 모든 지원으로 2019년까지 신연방주에 총 511억 유로의 기금이 제공된다.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은 2006년에 바구니 II의 내역에 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대협약 II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바구니 I의 재원의 사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영역으로 제한되었지만, 실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05년 바구니 I에서 지원된 금액의 50%가 원래 규정된 영역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작센주만이 원래의 규정에 맞추어서 재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베를린의 경우 전액이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것으로 이 조사는 평가하였다. 그러나 각 연방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보고서에서는 이와 달리 재원사용과 관련해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바구니 I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과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법의 11조 3항에 의해 규정된 재원이 포함되었다.

베를린과 신연방주가 열악한 기반시설과 교통망 등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해마다 다음과 같은 규모의 특별재원을 제공받게 되었다:

2005년	10,532,613,000 Euro.
2006년	10,481,484,000 Euro.
2007년	10,379,225,000 Euro.
2008년	10,225,838,000 Euro.
2009년	9,510,029,000 Euro.
2010년	8,743,091,000 Euro.
2011년	8,027,283,000 Euro.
2012년	7,260,345,000 Euro.
2013년	6,544,536,000 Euro.
2014년	5,777,598,000 Euro.
2015년	5,061,790,000 Euro.
2016년	4,294,852,000 Euro.
2017년	3,579,043,000 Euro.
2018년	2,812,105,000 Euro.
2019년	2,096,297,000 Euro.

베를린과 신연방주는 동부 재건(Aufbau Ost) 경과보고서의 틀에서 완공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분단으로 인한 특별부담을 위해 지원된 재원의 사용내역, 그리고 연방과 지역 예산의 재정적 발전과 새로운 채무에 관해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매년 9월 말에 제출되며 연방정부와 예산계획위원회가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제2절 수입과 지출의 문제 [8]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과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였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신연방주에서 신속하게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온 것도 아니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보장부문에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노령인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9]

나아가 1990년도 전반기에 실시된 프로그램의 경우 서독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동독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서독에 본사를 두고 그쪽에서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금력과 새로운 장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서독의 큰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동독 또는 신연방지역의 기업은 자금력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였다. 그 결과 신연방주가 얻는 세금 수입도 적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공적 재원도 부족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신연방지역의 인력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8] 1991년 6월 24일에 결정된 일시적인 연대세의 도입과 소비세 그리고 다른 연대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연방법률관보 I부, 문서번호 38번, 1318-1321쪽 참조

[9] 인구변동의 조건 하에서 인프라 시설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연방 내무부/독일 도시연구소의 조사연구(문서번호 85).

제3절 철도와 우편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은 구 동독의 계획경제 체제와 인민소유 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물론 199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동독의 과도정부에 의해 많은 개혁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통일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국가독점기업이었던 국영 연방철도와 연방우편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반시설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 당시 철도와 우편과 관련된 기업이 연방정부의 관할 영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욱 흥미 있는 사실은 서독에서 1989년에 이미 철도와 우편의 민영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었다는 것이다. 우편의 경우 우편과 전화, 두 개의 사업 영역이 경영상 서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우편개혁 II가 관철되기까지 우편과 전화통신은 하나의 국영기업으로 남아 있었다. 통일조약 27조에 따라 동독의 우편조직이 서독의 "Deutsche Post"로 인수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술적인 분야나 서비스 분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였다. 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방우편이 여전히 국영기업으로 남아 있었고 연방체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영관청이었던 철도가 여러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엔지니어회사들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다양한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10] 그 결과 신연방주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고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10] 이에 대해서는 독일통일 철도 계획회사가 1992년에 발간한 철도노선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에 관한 정보 참조

완성될 수 있었다.

철도노선 건설과 관련된 흥미 있는 에피소드가 많다. 그 중 하나가 베를린과 하노버를 연결하는 동서 철도노선 핵심노선의 건설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노선을 확장 공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동독과 서독이 오랫동안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 논의의 핵심은 비용문제가 아니라 통과노선이었다. 동독 측에서는 가능하면 기차가 베를린과 하노버 사이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노선을 건립하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당연히 서독인과 동독인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노선은 독일 통일 이후에 완공되었고, 총 비용은 26억 유로가 소요되었다.[11]

[11] Erich Preuss, 1998: Die Schnellbahn Hannover-Berlin 베를린 하노버 고속철도, 뮨헨: 게라몬트 출판사

제2장

동부 도시재건

제1절 동부 도시재건 배경

"1980년대 말에 동독의 많은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 건축물의 붕괴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 주민저항과 주민참여의 계기가 되었다."[12] 이 글의 서두에 인용했던 드 메지에르 수상이 했던 말처럼 이 문장도 통일 이전에 동독의 도시의 주거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었던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주거문제는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건물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 또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이 만들어질 주거 공간은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만 하였다. 더욱이 아래의 그림 2가 보여주는 것처럼 신연방지역의 도시들은 서독의 구연방주 도시들보다 빈곤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다.

[12] 도시재건과 주민참여 – 연방 교통건설 도시개발부(문서번호 86, 6쪽).

그림 2-2▶ **독일 도시의 빈곤 위험도 비교**

통계자료 출처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 0,1518,72616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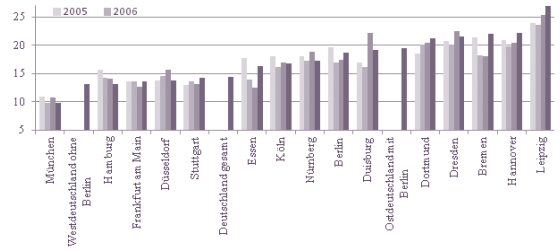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통일 초기단계에는 신연방주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한 사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거 공간 현대화 프로그램(100억 마르크)
- 사회보조금이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현대화(60억 마르크)
- 도시와 마을의 개량 조치를 위한 즉시 프로그램(7억 5천만 마르크)
- 2002년부터 시행된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연방의회의 인쇄물 13/2280의 부록 89번은 연방정부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대규모로 구 동독지역의 도시재건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였는 지 잘 보여준다. 연방정부가 재정을 담당한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에 달하기도 하였다.

도시 재건을 위해 진행될 사업은 대부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연방지역의 경우, 1990년 여름에 동독 각 지역 간의 통일된 건축법이 도입되었고 통일과 함께 서독의 건축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률적 조건이 아주 복잡하였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도시재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하였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13]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게마인데와 군 단위의 소도시의 경우 해당관청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였다. 연방정부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투자법의 이용에 대한 안내서를 작성·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투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소유였던 재산을 반환하는 문제, 토지의 매각, 긴급성 또는 보증 문제와 같은 것이다. [14]

독일 정부는 통일 직후에 신연방지역에서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대량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미 신연방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서독으로 대거 이주하였기 때문에 주거공간의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물론 새로운 주택이 계획되고 건설되면서 건설업이 혜택을 입고 일시적이나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 초기 구 동독 도시들의 현실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많은 건축물들이 아주 열악한 상태이고, 고건축물들이 더 이상 개축 불가능하거나 개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 빈집 또는 아무도 거주하려 하지 않는 집이 많았다.
- 신축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들로 건물의 간격이 아주 좁고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건물이 많았다.
- 집세가 너무 높거나 주민 수가 감소하여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신축 주택 또한 많았다.
-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지어진 호

[13] 독일행정관보 1990년 12월 1일자, 1314-1322쪽

[14] 투자촉진법에 관한 연방정부의 실무지침(문서번호 87).

화주택도 적지 않았다.

연방의회 인쇄물 ▶

13/2280 부록 89

연방 건설부의 "도시건설과 도시계획안"의 부록

개요

신연방주의 주택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1990년 전반기 이후 신연방주의 도시개량과 도기건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이다.

I. 동독 정부 하의 프로젝트 기금

1990년 상반기	768,215,000 마르크 (100% 서독 연방정부 보조)

II. 1990/1991 즉각적인 지원프로그램

1990년 후반기		509,250,000 마르크
그중 - 도시건설 시범사업	83,700,000	
- 도시개량프로젝트	405,000,000	
- 도시계획 지원	20,550,000	
1991년 지원금		530,000,000 마르크
그 중 - 도시건설 시범사업	132,000,000	
- 도시개량 프로젝트	398,000,000	
즉각적인 지원프로그램 1990/1991 총		1,039,250,000 마르크 (100% 전액 연방예산으로 지원)

III. 도시 개량 개발정책

	연방정부 재정보조금	프로그램의 총예산
1991년 이후 연방정부 33.3% 부담		
1991	300,000,000	900,000,000
1992	300,000,000	900,000,000
1993	340,000,000	1,020,000,000
1994	340,000,000	1,020,000,000
	1,280,000,000	3,840,000,000

IV.도시건설 계획비용

연방정부 33.3% 부담		
1991	50,000,000	150,000,000
1992	50,000,000	150,000,000
	100,000,000	300,000,000

V. 도시건설 시범사업

연방정부 부담률			
1991	80%	104,800,000	131,125,000
1992	80%	100,000,000	125,000,000
1993	60%	80,000,000	133,333,000
1994	45%	80,000,000	177,777,000
		364,970,000	567,235,000

(중략)

총액

- 1990년부터 연방정부가 제공한 재정보조 (1990년 후반기부터 1994년까지 즉각적인 지원프로그램)	4,253,750,000	
-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공공재원을 통해 투자된 금액		9,105,505,000

제2절 연방정부-연방주 공동사업 "동부 도시재건"

연방정부-연방주 공동사업 "동부 동시재건"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독일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연방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도시재건 문제와 통일 이후 확인된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이 시기 신연방지역의 도시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과잉공급의 감축
- 도시 중심지의 고품격화
- 고건축의 보수와 현대화 그리고 합리적인 집세의 유지
- 철거를 통해 아파트 밀집지역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건물과 주변 환경의 수준 향상

2001년 8월 내각회의에서 이 사업의 중점사안이 논의되었다.[15] 이 사업은 원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계획이었고, 총 재원이 25억 유로로 책정되었다. 그 중에서 11억 유로는 연방정부가, 그리고 나머지는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주택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주택회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지원 프로그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은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건축을 복구하는 작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구 동독의 많은 고건축들이 철거되지 않고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신연방주 주민의 두 명 중에서 한 사람은 "Stadtumbaukommune" 프로그램에 의해 직·간접으로 혜택을 입은 건물에 주거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주거상황은 분명히 차이가 났다. 그 차이를 보면 다

[15] 연방정부 프로그램 '구 동독-도시정비'(문서번호 25).

음과 같다:

-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에는 빈집과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이 많았다.
- 튜링겐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는 빈 주택이 많지 않았다.
- 브란덴부르크주에는 지역을 떠나는 주민의 수가 많았다.
- 베를린은 유입인구가 많았다.
- 튜링겐은 2001년부터 주차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는 2000년부터 아파트 밀집지역의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 주택지를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 모든 신연방주에는 열악한 조건의 고건축물이 많았고, 이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았다.

연방건설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과 2007년까지 완성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여 준다:

"2007년 말까지 390개의 도시와 게마인데에서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도시와 게마인데를 선발하고 재원을 다양한 도시에 분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도시나 게마인데가 갖고 있는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도시는 모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는 특색이 있으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Stadtumbau-kommune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제공받았었다.

2007년 말까지 연방재정 지원의 틀 내에서 7억 9,43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된 금액이 2007년 말까지 총 18억 7,830만 유로였다. 그 중에서 안전조치를 위해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면 약 반 정도가 주택 철거와 주거공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지출되었다.

2007년 말까지 동부 도시재건의 틀에서 약 221,000개의 주택 철거작업이

지원되었다. 매년 약 30,000에서 40,000채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그 속도를 유지한다면 2011년까지 목표량인 350,000채의 주택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었다. 철거를 지원하는 작업은 특히 동독 시절에 지어진 주택에 집중되었다.

고주택의 경우 아주 일부만 철거되었다. 그러나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된 재원의 분배는 이와 상황이 다르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된 금액의 1/3 정도가 고주택을 위해 투입되었고, 동독시기에 지어진 주택에 1/3, 그리고 고주택과 신축주택이 혼합된 지역에 1/3이 투입되었다.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은 주로 주변환경과 공유공간과 기반시설을 위한 조치에 사용되었다."[16]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실행된 조치에 동의하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건축물들이 철거된 것과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의사소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치와 행정, 그리고 주민 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17]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연방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게마인데들은 이 프로그램을 2016년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18]

16 도시재건과 주민참여 – 연방 교통건설 도시개발부(문서번호 86, 3쪽).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 평가(문서번호 88).

17 도시재건과 주민참여 – 연방 교통건설 도시개발부(문서번호 86).

18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 –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문서번호 89).

그림 2-3▶

주거환경의 변화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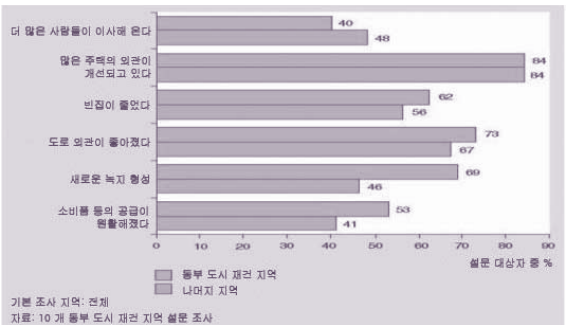

그림 2-4▶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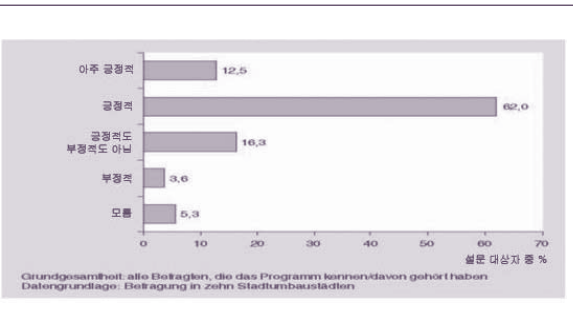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5는 2011년에 "동부 도시재건의 지원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 더 살기 좋은 도시와 매력적인 주거(Bundesprogramms zur Förderung des Stadtumbaus Ost - Für lebenswerte Städte und attraktives Wohnen)" 틀에서 취해진 조치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에서 연방주별, 그리고 개별적인 조치별로 분리하여 실현정도와 연방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의 규모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림 2–5▶

2011년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게마인데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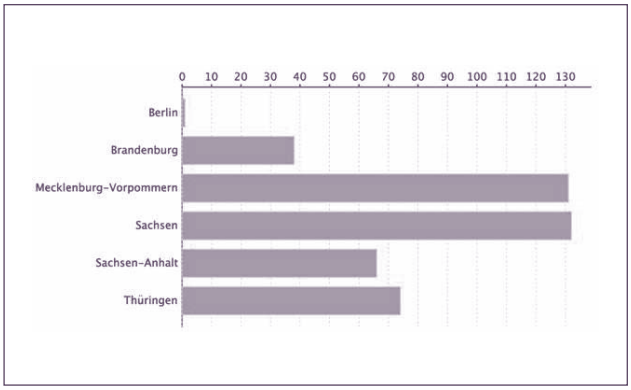

그림 2–6▶

실행된
프로그램의 수
(2011년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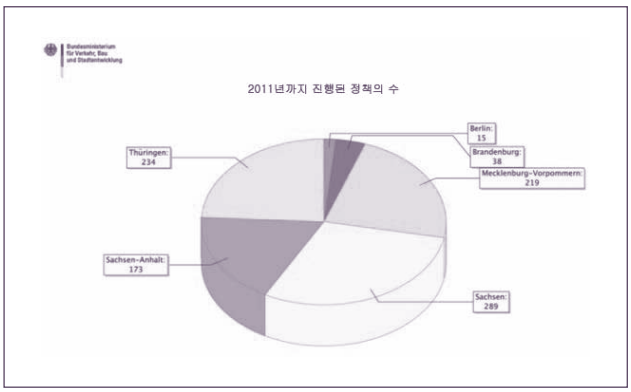

그림 2–7▶

지원된 프로그램의
수 (2011년도 포함,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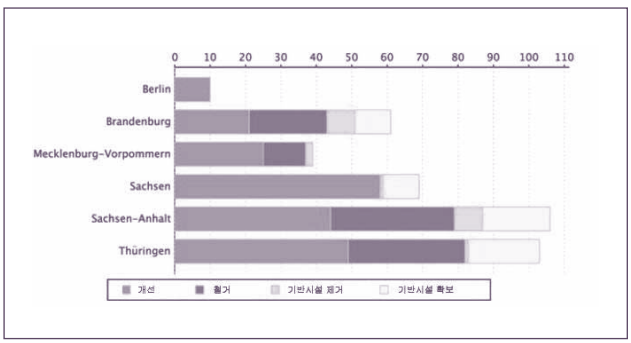

제3장

동부 재건 프로젝트

제1절 동부 재건 사업의 조정, 계획 그리고 협력

앞 장에서 통일 이후 독일이 신연방주의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는 지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기관이 함께 계획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통일 초기에는 시·군·읍·면·동 등의 다양한 단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관심은 주로 자기 지역 단위 문제의 해결과 재정지원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부터 곧 다양한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으로 계획하고 협력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 5개 신연방주와 베를린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노력[19]
- 게마인데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20]
- 대도시 지역 간의 협력[21]

[19]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경제적 연계(문서번호 90).

[20]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과 인프라정책의 틀에서 지자체 간의 협력 형태(문서번호 91).

[21] 작센삼각지 메트로폴지역의 예를 통해서 본 신연방주의 광역 경제협력(문서번호 92).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의 진척으로 연방주의 경계를 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도 강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구조가 정착되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신감과 일상성을 되찾기 시작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을 묶어서 추진할 필요도 있었다. 신연방주에서는 이런 조정업무를 상이한 부처에서 담당하였다. 물론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주변 도시들이 공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연방주의 주어진 상황, 즉 수요와 가능성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 공동체가 구성되었다.

표 2-1〉 신연방주의 최상위 도시개발계획관청

출처 : http://www.bbsr.bund.de/cln_016/ nn_601318/BBSR/DE/Raumentwicklung/RaumentwicklungDeutschland/LandesRegionalplanung/Fachbeitraege/Landesplanung/landesplanung.html

연방주	관청
Berlin-Brandenburg	공동계획국 (Gemeinsame Landesplanungsabteilung) http://gl.berlin-brandenburg.de/index.html
Sachsen	주 내무부 http://www.smi.sachsen.de
Thüringen	주 도로교통부 http://www.thueringen.de/de/tmbv
Mecklenburg-Vorpommern	주 교통, 건설 지역개발부 http://www.regierung-mv.de
Sachsen-Anhalt	주정부 지역개발교통부 http://www.sachsen-anhalt.de

표 2-2〉 지역계발계획을 위한 구 동독지역의 담당기구

출처 : http://www.bbsr.bund.de/cln_016/nn_601318/BBSR/DE/Raumentwicklung/RaumentwicklungDeutschland/LandesRegionalplanung/Fachbeitraege/Regionalplanung/04__Links.html, Abrufdatum: 05.11.2010

지역	담당기구
Berlin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
Brandenburg	
Region Prignitz-Oberhavel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Prignitz-Oberhavel http://www.rpg-po.de
Region Uckermark-Barnim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Uckermark-Barnim http://www.uckermark-barnim.de
Region Oderland-Spree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Oderland-Spree http://www.rpg-oderland-spree.de
Region Lausitz-Spreewald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Lausitz-Spreewald http://www.region-lausitz-spreewald.de
Region Havelland-Fläming	Regionale Planungsgemeinscha ft Havelland-Fläming http://www.havelland-flaeming.de
Mecklenburg-Vorpommern	
Region Westmecklenburg	Regionaler Planungsverband Westmecklenburg http://www.westmecklenburg-schwerin.de
Region Mittleres Mecklenburg / Rostock	Regionaler Planungsverband Mittleres Mecklenburg/Rostock http://www.rpv-mmr.de
Region Vorpommern	Regionaler Planungsverband Vorpommern http://www.rpv-vorpommern.de
Region Mecklenburgische Seeplatte	Regionaler Planungsverband Mecklenburgische Seenplatte http://www.region-seeplatte.de

Sachsen	
Region Oberes Elbtal / Osterzgebirge	Regionaler Planungsverband Oberes Elbtal /Osterzgebirge http://www.rpv-elbtalosterz.de
Region Oberlausitz-Niederschlesien	Regionaler Planungsverband Oberlausitz-Niederschlesien http://www.rpv-oberlausitz-niederschlesien.de
Region Westsachsen	Regionaler Planungsverband Westsachsen http://www.rpv-westsachsen.de
Region Chemnitz-Erzgebirge	Regionaler Planungsverband Chemnitz-Erzgebirge http://www.rpv-ce.de
Region Südwestsachsen	Regionaler Planungsverband Südwestsachsen http://www.rpv-suedwestsachsen.de
Sachsen-Anhalt	
Region Altmark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Altmark http://www.die-altmark-mittendrin.de
Region Magdeburg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Magdeburg http://www.regionmagdeburg.de
Region Anhalt-Bitterfeld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Anhalt-Bitterfeld-Wittenberg http://www.regionale-planungsgemeinschaft-anhalt-bitterfeld-wittenberg.de
Region Halle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Halle http://www.regionale-planung.de/halle
Region Harz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Harz http://www.regionale-planung.de/harz

Thüringen	
Region Nordthüringen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Nordthüringen http://www.regionalplanung.thueringen.de/rpg/nord/index.asp
Region Mittelthüringen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Mittelthüringen http://www.regionalplanung.thueringen.de/rpg/mittel/index.asp
Region Ostthüringen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Ostthüringen http://www.regionalplanung.thueringen.de/rpg/ost/index.asp
Region Südwestthüringen	Regionale Planungsgemeinschaft Südwestthüringen http://www.regionalplanung.thueringen.de/rpg/suedwest/index.asp

많은 분야에서 프로젝트의 특성상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주 간에 또는 지역 간에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제공항 건립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개의 연방주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2-3〉 신연방지역의 지역개발계획 현황(2008년 3월)

출처 : http://www.bbsr.bund.de/cln_016/nn_601318/BBSR/DE/Raumentwicklung/RaumentwicklungDeutschland/LandesRegionalplanung/Fachbeitraege/Landesplanung/landesplanung.html, Abrufdatum: 05.11.2010

연방주	도시개발계획	착수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Landesentwicklungsplan Brandenburg Zentralörtliche Gliederung LEP 1 Landesentwicklungsplan für den engeren Verflechtungsraum Brandenburg–Berlin LED eV Gemeinsames Landesentwicklungsprogramm der Länder Berlin und Brandenburg (LEPro) Gemeinsamer Landesentwicklungsplan für den Gesamtraum Berlin–Brandenburg (LEP GR) – ergänzende raumordnerische Festlegungen Gemeinsames Landesentwicklungsprogramm der Länder Berlin und Brandenburg (LEPro) – Entwurf 04.07.2006 Gemeinsamer Landesentwicklungsplan Flughafenstandortentwicklung (LEP FS) in der Fassung vom 30.05.2006 Landesentwicklungsplan Berlin–Brandenburg (LEP B–B) – Entwurf vom 21.08.2007	04.07.1995 02.03.1998 10.07.2003 20.07.2004 16.06.2006
작센	Landesentwicklungsplan Sachsen 2003	31.12.2003
튜링겐	Landesentwicklungsplan Thüringen 2004 Entwurf der ersten Ersten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Thüringer Verordnung über den Landesentwicklungsplan (LEP–ÄnderungsVO) – Stand: 25.07.2007	30.10.2004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Landesentwicklungsprogramm Mecklenburg–Vorpommern	01.01.2006
작센–안할트	Landesentwicklungsplan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999 Landesentwicklungsplan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999 – Änderung 2005	23.08.1999 15.08.2005

초 지역적인 공동작업, 다시 말해 대도시 지역 간의 파트너쉽과 협력은 전 독일에서 장려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2]

[22] 초 지역적 파트너쉽 – 지역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책임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문서번호 93). 초 지역적 파트너쉽 – 공간계획의 모델(문서번호 94).

초 국가적인 협력 작업의 경우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동부 재건에 도움이 되고 대단위 지역에 도움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실현될 수 있었다.[23]

제2절 동부 재건 사업의 경과보고서와 평가서

연방정부는 해마다 신연방주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투자규모, 실현된 프로젝트, 계획과 동서 지역의 비교 수치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가 매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서"이다.[24] 그리고 연방 교육연구부가 발간한 7권의 "동부 혁신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 구체적인 예와 함께 파악할 수 있다.[25]

신연방주 정부도 자기 주에서의 진행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연방주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도 많이 다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보고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많은 부분을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에 관한 설명에 할애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언급한다.

2002년 작센주의 경과보고서의 한 부분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 주가 기반시설을 위해 투자한 것은 작년에도 서독의 다른 연방주에서 투자한 것보다 높았다. 이 투자의 대부분은 특히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충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우리 주에서는 서독 연방주들과 비교할

[23] 세계화와 지역화 과정의 맥락에서 본 신연방주의 지역경제지원(문서번호 95).

[24]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대한 자료(문서번호 96).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대한 자료(문서번호 97).

[25] 2010 동부 혁신지도 – 풍부한 아이디어와 확실한 장래(문서번호 98).

때 기존의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도시재건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새로운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작센주는 이러한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10년이 되기 전에 예산의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상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에 대한 대안은 없다.

과거와 비교할 때 악화된 결과들 또한 작센주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경제의 틀 내에서 재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에서 세수가 감소한 것은 전체적인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신연방주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이러한 경기 악화의 변화를 훨씬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연방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건과정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재정상황과 2003년의 세수입에 관한 예측을 보면 올해와 내년에 연대협약의 재원을 완전히 사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6]

신연방주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이다.(그림 8 참조) 1990년대 전반에 신연방주의 건설업에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었지만 그로 인해 혜택을 본 것은 주로 서독의 회사들이었을 뿐, 이 지역에 장기적인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신연방지역의 경제붕괴로 인한 "탈산업화"는 지역경제의 회복속도를 더욱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예나시와 같이 몇 군데 성공적인 혁신사례를 보이는 곳도 있고,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컴퓨터 산업단지와 태양광 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처럼 주정부가 미래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항상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브란덴부르크주만 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서둘러 지원하였지

[26] 2002년 경과 작센 보고서(문서번호 99).

만 그러한 프로젝트 자체가 생존할 능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성공해야 한다는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8▶ 신연방주의 생산성 수준-서독의 생산성과 비교(1995-1998)

출처 : Brinkmann, Ulrich. 2002. Umbruch von unten? Betriebliche Akteure in der ostdeutschen Transformation. München und Mering: Rainer Hampp Verlag. S.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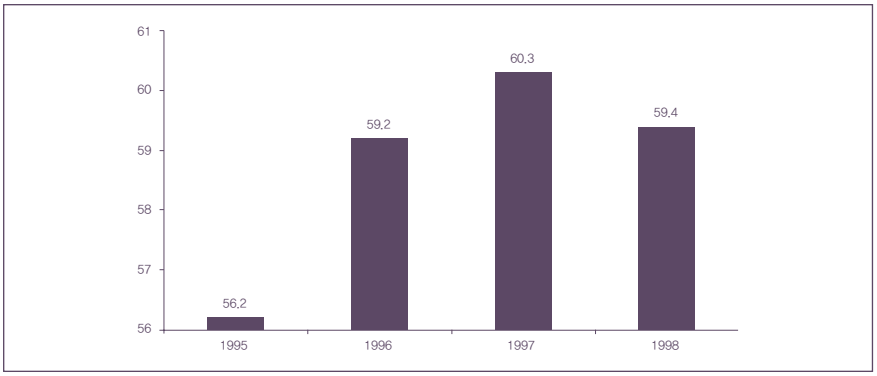

그리고 신연방주에서는 연구, 재정, 생산과 판매 간의 협조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재정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것이 바로 동부 도시재건 또는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의 경과보고서에 성공사례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장래에 대한 경고가 섞여 있는 이유이다. 이 점은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와 관련된 모든 평가서에도 해당된다. 대부분의 평가서는 조사대상에 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더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이한 발전은 도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이 도표는 괄목할 만한 모든 - 긍정적 또는 부정적 - 변화를 보여준다. 1990년대의 소용돌이와 같았던 재건시기가 지나고 2000년대부터는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의 중점이 변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신연방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건설업계가 특별호황을 누렸다면 그 후에는 제

조업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보였다.

표 2-4〉 경제지수(서독을 기준으로 본 신연방주의 상황-서독을 100으로 볼 때)

	1991	1997	2002
일인당 국민총생산	33	61	63
가계소득	54	82	81
근로자 일인당 지불되는 노동비용	49	76	77
근로자 일인당 연간 노동시간	99	110	110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생산성	42	68	72
근로자 일인당 생산성 대비 평균 인건비	119	112	108
주민 일인당 투자	66	143	93
주민 일인당 시설투자	62	108	81
주민 일인당 건설투자	70	176	102
주민 일인당 자본비율	38	66	68
고용인 일인당 자본비율	40	73	78
수출	52	44	61
고용인 중에 연구 개발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	49	46	44
주민 일인당 특허	23	29	25
주민 일인당 학술연구에 지출하는 비용	82	107	103
경제활동 참가비율	96	91	87
자영업자의 비율	50	74	88
실업률	216	203	254
총생산 중에 사회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184	156	164
주민 일인당 사회예산	61	95	100

평규 연금 (남성)	56	99	97
평균 연금 (여성)	94	135	134
창업률	271	92	82
폐업률	122	91	93
주민 일인당 공공 기반시설	50	64	75
주민 일인당 납세능력	15	36	34
주민 일인당 연방주에서 지출하는 비용	120	146	139
주민 일인당 연방주의 채무비율	0	92	114

1991년에서 2002년까지 제출된 보고서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신연방주의 총생산은 일인당 두 배로 증가하였다. 투자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실업률도 함께 증가하였다. 반면에 창업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공공 기반시설이 현저하게 향상된 반면 신연방주 정부의 채무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제3절 사업 준비단계에서의 예측과 잘못된 계획

동부 재건(Aufbaus Ost)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신속하게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고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신연방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 초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풍요롭게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많았다. 그 결과 프로젝트의 계획과정에서 너무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경제 성장률을 근거로 수요를 측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구 동독지역의 수로 건설 사업이 바로 그런 오류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사이에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약 37억 유로를 투입하여 수로와 갑문, 그리고 내륙 항구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연방교통

부의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이 투자는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수로의 이용률이 예상했던 것의 50%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중부독일 운하의 경우 독일 분단 기간 동안 독일과 유럽의 수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일통일 프로젝트 17"의 틀에서 진행된 동-서 수로 프로젝트인 중부독일 운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연간 1,830만 톤의 물류가 이 운하를 통해 운반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겨우 270만 톤, 즉 예상했던 수치의 약 1/7만이 이 운하를 통해 운반되었을 뿐이다. 이 사업의 경우 운송량 예측에서 발생한 오류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처음 예산보다 훨씬 높아졌다.

중부독일 운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요조사와 계획절차,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해당관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업은 "수로 해운 행정청(Wasser- und Schifffahrtsverwaltung)"에서 담당하였다. 이 관청의 역사는 18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 여기에는 거의 1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하위관청인 "동부 해운 감독소(Schifffahrtsdirektion Ost)"의 경우 2010년에 2,548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이 기관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연줄 등이 수요조사와 계획절차에서 영향을 주었다.[27]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7] 신연방지역의 수로를 이용한 화물운송(문서번호 31).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문서번호 48).

제4절 동부 재건 사업의 전망

운하사업에서 수로를 이용할 교통량의 발전에 대한 예측은 미래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결과를 너무 비관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예측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의 틀에서 신연방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연대협약 또는 재정이전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연방지역의 삶의 수준을 서독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였다. 독일 전역에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독일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의 목표이다. 1990년대 중반 독일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동등한 삶의 수준을 만드는 것이 특히 경제적 성과와 직결된다는 것이었다.

통일 초기에 신연방지역의 삶의 질을 서독의 수준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약 2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그를 위해 2011년까지 약 1,500억(1.5 Billion) 유로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전 독일의 삶의 질을 놓고 평가할 때, 애초의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그 목표는 현실적으로 볼 때 2030년 정도가 되어야, 그리고 앞으로도 막대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가을에 연방경제부가 발표한 연구결과는 또 다른 전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동서지역의 삶의 수준이 동등해질 때까지는 2030년 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그를 위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림 2-9▶ 독일에서 신연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율-1996년 기준

출처 : Brinkmann, Ulrich. 2002. Umbruch von unten? Betriebliche Akteure in der ostdeutschen Transformation. München und Mering: Rainer Hampp Verlag. S.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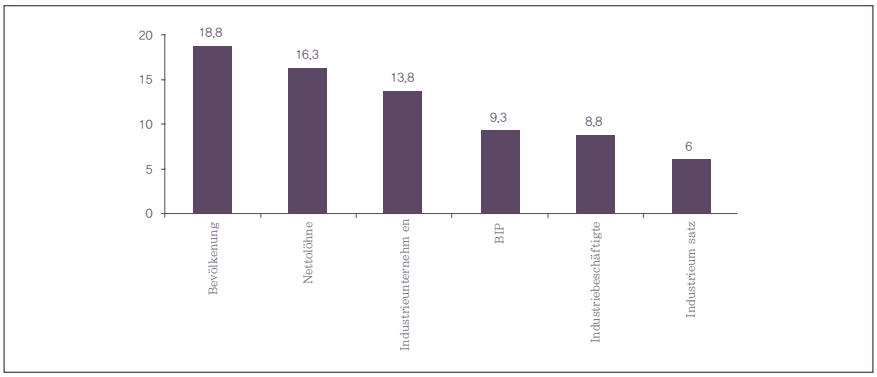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연방경제기술부가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에 관해 조사한 용역사업을 통해 얻어진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사업들의 성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사업 성과들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연방지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모두 극복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도 신연방지역의 발전정도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8]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 구조기금은 신연방지역의 일인당 소득이 서독과 유럽연합의 수준으로 향상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구조변동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연방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과정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로 정해진 지원기간 동안에 완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신연방지역

[28] 베를린을 포함 신연방주에서 2014-2020의 기간에 유럽 구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실무방안(문서번호 100, X쪽).

에는 여전히 발전의 낙후성이 남아 있을 것이다 (XII쪽)."

신연방지역과 서독의 발전격차,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의 차이점을 아래의 지도 1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40년이 되면 신연방주와 서독의 삶의 질이 동등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를 위해 막대한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 주로 연방정부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연방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연대협약 II가 2019년에 종료된다.
- 2014년부터는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이 40% 감소할 것이다.
- 신연방주의 세수는 여전히 낮다.
- 공공재정이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인구변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지도 1〉 연방주 별 수입 고용 안정도

동부 재건(Aufbau Ost) 사업은 신연방지역의 출발조건이 워낙 열악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과 같은 성과를 얻지 못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목표하였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성과가 지속되지 않고 정체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경쟁력의 부족
- 구매력의 부족
- 낮은 생산성과 투자

- 낮은 전문자격 수준
- 기반시설의 부족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은 신연방지역에서 서독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인구이동은 큰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신연방 지역에서 서독으로 유입된 인구이동의 지역적 경향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베를린으로 주로 이동하였고, 작센주는 바이에른과 바덴뷰텐베르그로,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니더작센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서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로, 그리고 튜링겐주에서는 주로 바이에른으로 이동하였다.

신연방지역에서 서독으로 인구가 이동한 현상에 대해 독일의 저명한 경제자문회사인 롤란드 베거는 2009년 가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90년 이후 약 백만 명의 주민이 신연방주로부터 서독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이 서독에서 내는 세금과 기타 공과금은 매년 약 100억 유로에 달한다. 이 돈이 바로 신연방주가 투자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재원이다. 이 금액을 현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독에서 신연방주로 재정을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장래성이 있을 것이다.

표 2-5〉 신연방지역에서 서독으로의 인구이동-1989년에서 2011년까지

출처 : http://www.welt.de/welt_print/politik/article4705481/Weiter-starke-Abwanderung-aus-Ostdeutschland.html. Abrufdatum 30.11.2012; 연방주 통계청

년도	인구유출	인구유입	인구변동
1989	388,396	5,135	383,261 –
1990	395,343	36,217	359,126 –
1991	249,743	80,267	169,476 –
1992	199,170	111,345	87,825 –
1993	172,425	118,975	53,450 –
1994	163,034	135,774	27,260 –
1995	168,000	143,000	25,000 –
1996	166,007	151,973	14,034 –
1997	168,000	157,000	11,000 –
1998	182,478	151,750	30,728 –
1999	195,530	151,943	43,587 –
2000	214,456	153,179	61,277 –
2001	230,227	138,615	91,612 –
2002	216,165	139,412	76,753 –
2003	195,216	137,517	57,699 –
2004	185,878	133,340	52,538 –
2005	175,088	127,996	47,092 –
2006	173,602	122,918	50,684 –
2007	138,100	83,300	54,800 –
2008	136,500	85,500	51,000 –
2009	128,000	88,000	40,000 –
2010	252,000	232,000	20,000 –
2011	232,000	227,000	5,200 –

제4장

결어

독일 통일은 삶의 수준이 서독과 동등하게 향상될 수 있다는 동독인들의 기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서독과 동등한 삶을 꿈꾸며 평화적 혁명을 성공시킨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에게 서독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룩한 삶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그만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990년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설령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실현된 지 22년이 지난 2012년 지금, 신연방지역의 삶의 수준을 서독의 수준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4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신연방지역과 서독의 수준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독일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두 지역 간의 경제적 수준의 격차가 아주 클 때에는 약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통해서만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연방주는 여전히 서독과 유럽연방에서 오는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고속도로, 철도역, 역사적 도시 등과 같은 신연방주의 기반시설의 일부는 이제 완전히 현대화되어서 이런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한 서독의 시설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서

독 도시의 일부는 신연방주의 도시보다 훨씬 열악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의 일부 정치가들은 이제는 신연방지역에만 연대협약을 통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서독의 자기 지역도 연대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독의 주민들 중에는 신연방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의 과제, 즉 전 독일에서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고, 이 틀에서 신연방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특별지원이 지속될 것이다.

독일통일 총서 4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관련 정책문서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소유권				
1a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1b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2	토지개혁 대지의 소유권법	1990년 3월 6일	동독 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7, 16.03.1990, S. 134
3	국유자산의 지자체자산화 시행령	1990년 7월 25일	독일 연방의회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5, 30.07.1990, S. 781–782
4	국영주택조합의 공공주택조합화 법	1990년 7월 22일	동독 건설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9, 09.08.1990, S. 901–902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	독일을 위한 연대협약/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 정당과 원내 대표들의 연석회의	1993년 3월 16일	연방정부, 주정부, 국민정당의 당수, 연방의회 원내 대표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Nr.22/S.185;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594-64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16.03.1993
6	투자우선법	1992년 7월 14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3, S. 1257-1286
7	1990년 5월 18일에 제정된 화폐, 경제, 사회적 통합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계약에 관한 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34, 25.06.1990, S. 331-356
8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재구성에 대한 법(신탁법)	1990년 6월 17일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33, 22.06.1990, S. 300-303
9	국유건물 매각에 관한 법	1990년 3월 7일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회의 의장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8, 19.03.1990, /S.157-159
10	국유건물 매각에 관한 법의 집행을 위한 규정	1990년 3월 15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장관회의 의장, 발터 지거트, 동독 재무부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8, 19.03.1990, S. 158-159
11	투자간소화 및 택지확보에 관한 법률	1993년 4월 22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16, S. 466-488
2. 주택건설과 주택수당 지원				
12	신용재건기금의 주택현대화 프로그램	2001년 3월	재건은행, 신연방주	KfW-Wohnraum-Modernisierungsprogramm II, 03.2001
13	투자촉진법	1998년 4월 20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경제위원회	Bundesgesetzblatt, Teil I, 1998, Nr. 22, S. 707-709
14	제1차 기본임대료 인상규정	1991년 6월 17일	이름가르트 아담-슈베처 연방 건설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69
15	신연방주의 임대료 이양법	1995년 6월 6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16	신연방주를 위한 주택수당특별법 도입	1991년 6월 20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50-1267
17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1992년 11월 12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연방회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6, S. 1380-1385
18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 법률	1993년 12월 22일	작센, 연방회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74, S. 2438-2439
19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 법률	1994년 10월 7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안할트, 튜링겐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69, S. 2644-2645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0	주택구입 보조금 프로그램	1993년 6월 23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2407–2412
21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구 채무지원법	1995년 6월 6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3. 도시 개량				
22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	2007년 3월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도시건설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식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http://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service/downloads/informationsdienste/Infodienst32.pdf
23	신연방주 경제성장 지원과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투자간소화법	1993년 6월 23일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944, 982
24	헌법 104a조 4항에 따라 도시건설 조치를 위해 연방이 연방주에게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행정협의 (VV–도시건설촉진 1999)	1999년 7월 28일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 Programm zur Städtebauförderung: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nn_1087344/StBauF/DE/UeberDieStBF/RechtlicheGrundlagen/RechtlicheGrundlage__node.html?__nnn=true
25	연방정부 프로그램 '구 동독–도시정비'	2001년 8월 15일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Initiative der Bundesregierung zur Verbesserung der Stadt– und Wohnungsmarkt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Programm "Stadtumbau Ost". Beschlussvorlage für das Bundeskabinett, August 2001.
4. 농촌지역 개량				
26	인구변동의 조건 하에서 튜링겐주 농촌지역의 기초단체 게마인데 – 모니터링 체제의 최종보고서	2007년 4월 30일	튜링겐 주정부 건설교통부(제2국, 도시건설, 주택건설, 공간질서와 지역계획)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au, Landesentwicklung und Verkehr: http://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bv/monitoring_abschlussbericht.pdf
27	신연방주에서의 경지정리 및 농업(내무부)(2004)	2004년 2월	칼–하인츠 티만, 브란덴부르크 내무부, 브란덴부르크주 측량과 측정정보	Vermessung Brandenburg, Nr. 2/2004, S. 54–66
28	사회적 시장경제에 동독 농업의 적응을 지원하는 법–지원법	1990년 7월 6일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33–634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 사회기반시설 발전				
29	통일독일 교통 프로젝트	2011년 5월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Sachstand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Mai 2011
30	철도, 수로, 자동차 교통을 이용한 공공화물 수송에 대한 3차 규정	1990년 3월 18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장관회의 의장, 하인리히 숄츠, 동독 교통부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8, 19.03.1990, S. 167
31	신연방지역의 수로를 이용한 화물 운송	2010년 11월 15일	연방정부,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	Der Spiegel, 46/2010, S. 28–29, 15.11.2010
32	동서독 간 물자 및 서비스 교통에 대한 1차 시행령	1990년 7월 9일	게어하르크 폴, 동독 경제부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8, 08.08.1990, S. 860–861
33	신연방주와 베를린 도로건설계획촉진법 (도로계획촉진법)	1991년 12월 16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5, S. 2174–2176
34	장거리도로 확장건설법에 관한 제4차 개정 법률	1993년 11월 15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61, S. 1877
35	철도건설 촉진 위한 투자배치 법률– 베를린–오비스펠테 간의 철도노선이 "스텐달시 남부로 통과" 하도록 건설하는 것에 관한 법	1993년 10월 29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62, S. 1906–1907
36	철도시스템 개혁을 위한 철도구조개혁법	1993년 12월 27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73, S. 2396–2405
37	항공교통법에 대한 제10차 개정 법률	1992년 7월 23일	균터 크라우제, 연방교통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6, S. 1370–1378
38	동독지역 내에서 서독수운 시행에 대한 법	1990년 7월 19일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2, 17.08.1990, S.1042–1049
39	지자체 교통재원조달법에 대한 개정 법률	1993년 11월 15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의원들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5, S. 1488
6. 통일독일의 수도				
40	연방정부와 베를린시 정부 간 협력조약 (수도조약)	1992년 8월 25일	연방정부, 베를린시 정부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s Landes Berlin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1	정부 의회입지 배분과 관련한 베를린/본 법	1994년 4월 26일	연방의회, 수도 베를린, 연방시 본, 본 지역,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27, S. 918–921
42	수도재정 지원조약	1994년 6월 30일	연방정부, 베를린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start&ts=110863835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
43	치안 지원을 위한 수도재정 지원조약의 연계조약	2001년 3월 29일	연방정부, 베를린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44	연방수도 문화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	2001년 7월 7일	연방정부 문화언론 특임관, 연방건설부, 베를린 정부, 유네스코, 연방도시 본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45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	2002년 7월 3일	연방정부 문화언론 특임관, 연방건설부, 베를린 정부, 유네스코, 연방도시 본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1–4, 03.07.2002
46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2003년 12월 9일	연방정부 문화언론 특임관, 연방건설부, 베를린 정부, 유네스코, 연방도시 본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start&ts=1102410670&fil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 S.1–4, 09.12.2003
47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재정 지원과 연방정부 특별부담보상에 관한 조약	2007년 11월 30일	페터슈타인브뤼그 연방재무부장관, 베른트 노이만 연방정부 문화언론특임관,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 에어하르트 쾨르팅 베를린 내무부장관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start&ts=120524878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 S.1–6, 30.11.2007
48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	1994년 6월 29일	만프레드 칸터 연방내무부장관, 볼프강 클레멘트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정무장관 겸 주총리실장, 칼-하인츠 클레어 라인란트-팔츠 주총리실장, 베어벨 딕만 본 시장, 라이너 슈라이버 본 행정국장	Sammlung der geltenden Gesetze und Verordnunge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s: GV. NRW. 1994 S. 970.
7. 산업지원				
49	동독 중소기업의 토지구입 지원 규정	1990년 7월 11일	칼 뷰세 동독 법무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65–666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0	사유화 및 재정 혁신에 의한 생존기업의 신속한 경쟁 능력 회복으로 산업 핵심지역 확보, 신탁관리공사 내부 문건(1992.11)	1992년 11월	신탁관리청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706–713. Berlin: Treuhandanstalt 1994
51	신정부의 신탁관리공사를 통한 산업핵심지역 확보 및 재생 관련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 재무부 및 경제부(1993.6)	1993년 6월 21일	연방재무부, 연방경제부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717–737. Berlin: Treuhandanstalt 1994
52	산업핵심지역 재생, 의회의원 프리츠 슈만(Fritz Schumann). 사회민주당의 국정조사 관련 연방정부의 대답 Drs.12/6069(1993.11)	1993년 11월 2일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좌파리스트 프리츠 슈만 의원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12/6069, S. 1–10, 02.11.1993
53	산업핵심지역 재생, 의회의원 프리츠 슈만(Fritz Schumann). 사회민주당의 국정조사 관련 연방정부의 대답 Drs.12/6069(1994.5)	1994년 5월 30일	연방정부(연방경제부)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12/6069, S. 1–10, 02.11.1993
8. 수자원				
54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보호 프로그램	1990년 7월 1일	동독 인민회의, 동독 총리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49–654
55	주민들에 대한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지원 보장에 대한 규정	1990년 8월 24일	베르터 스코브론 동독 재무차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9, 14.09.1990, S. 1446–1447
9. 환경정화				
56	동독지역 특별환경보호조치	1990년 7월 1일	동독 인민회의, 동독 총리	Inform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09.1995
57	"생태적 오염지대" –연방/통일특수과제청/공동작업팀 결정(1996.9.20)	1996년 9월 20일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과제를 위한 연방관청, 환경보호/오염토지관리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nicht veröffentlicht)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8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청 설치에 대한 법률(1999.10.25)	1999년 10월 25일	작센-안할트 환경부	Gesetz-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999, S. 336-342
59	환경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환경보호: 임무 및 해결, 신탁관리공사(1993.3)	1993년 3월	신탁관리청의 환경보호/오염토지관리국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66-373 (Aufgabenspektrum und Lösungswege). Berlin: Treuhandanstalt 1994
60	신탁관리공사와 계약된 동독시절 환경부담 위험, 재무부가 신탁관리공사 총재에게 보낸 서한(1990.11)	1990년 11월 27일	호스트 쾰러 연방재무차관, 신탁관리청 이사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74-378. Berlin: Treuhandanstalt 1994
61	장애제거법(동독 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 (1991.3.22)	1991년 3월 22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0, S. 766-789
62	정부에 의한 환경피해 책임 면제/Senat, 신탁관리공사(1991.7)	1991년 7월 25일	신탁관리청의 법무국장, 환경보호/ 오염토지관리국장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91-39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63	사유화 계약에서 과거 부담과 관련한 합의 기본 원칙, 법률과 환경보호 부서 서한(1991.8)	1991년 8월 24일	신탁관리청의 법무국장, 환경보호/ 오염토지관리국장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99-40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64	환경부담을 지닌 기업에 대한 사유화 기본 원칙, 신탁관리공사 위원회 결정(1993.3)	1993년 3월 9일	신탁관리청 이사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415-421. Berlin: Treuhandanstalt 1994
65	사유화 계약에서 비롯된 환경부담 책임 관련 신탁관리공사의 비용억제 조치, 신탁관리공사(1994.11)	1994년 11월 9일	신탁관리청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493-499. Berlin: Treuhandanstalt 1994
66	신연방주 내 갈탄 채굴로 인한 오염지대의 정화를 위한 정보(2009.5.20)	2009년 5월 20일	연방환경부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braunkohlesanierung_2012_bf.pdf
67	주정부 내 황폐화된 지대 정화를 위한 계획(2009.9.22)	2009년 9월 22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환경부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5. Wahlperiode, Drucksache 5/2816, S. 1-45, 22.09.2009
68	독일연방토지관리공사(BVVG)의 자연보호구역 양도(2003.5.26)	2003년 5월 26일	토지매각 관리회사	Internet-BRAFONA, Rubrik "Forstliche Betriebswirtschaft/Marketing", S. 13, Ausgabe 5, Mai/Juni 2003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9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 폐쇄-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 입장 표명(1995.4.27/28)	1995년 4월 27일	연방환경부, 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ion Band 39, S.1-13, 27./28.04.1995
70	폐수공과금법에 대한 4차 개정법	1994년 7월 5일	클라우스 퇴퍼, 연방환경장관, 균터 렉스로트 연방경제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41, S. 1453-1464
71	임야 반환과 국가 임업사업장 청산을 위한 신탁관리청과 신연방주 합의	1993년 7월 20일	신탁관리청	Dokumentation 1990-1994, Band 8, S. 324-328. Berlin: Treuhandanstalt 1994
10. 경계지역				
72	1990년/91년의 기반시설 지원자금의 보장 및 동서독 접경 지역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규정	1990년 8월 8일	클라우스 라이헨바흐 동독 총리실 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1, 14.08.1990, S. 999-1000
73	"스비네뮨데 정화시설" 공동 환경보호 프로젝트	1994년 4월 29일	독일 연방환경부, 폴란드 환경보호부, 폴란드 스비네뮨데시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4, Nr. 27, S. 766-773
74	체코와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4월 24일	아돌프 리터 폰 바그너 독일 외무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환경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7, Nr. 17, S. 924-932
75	그린벨트-행동지침서(2002.11)	2002년 11월	프로젝트사무소 그린벨트, 독일 연방자연보호청, 독일 환경자연보호연맹	http://www.bund.net/fileadmin/bundnet/publikationen/gruenes_band/20021000_gruenes_band_leitfaden.pdf, S. 1-78, 14.11.2010
76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뀌다(2004.9.9)	2004년 9월 9일	국제자연보호연맹, 연방자연보호청	Pressemit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11. 연관체계의 통합				
77	건축시행령 법	1990년 7월 20일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0, 13.08.1990, S. 929-951
78	단일 건축법 시행에 대한 연방하원 의결사항 BT-Drs.12/4317	1993년 2월 10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16, S. 466-488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9	지리정보 관련 문서 준비에 대한 규정	1990년 3월 16일	로타 아렌트 동독 내무부장관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21, 30.03.1990, S. 205–207
80	건물통계 및 주택통계 조사에 관한 법률(주택통계법)(1993.3.18)	1993년 3월 18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10, S. 337–341
12. 추가 자료				
81	“독일통일기금” 설치법	1990년 6월 29일	연방의회, 연방회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20, S. 533–534
82	2008년도 작센주 동부 재건 성과 보고서	2008년 1월 1일	작센 주 재무부	http://www.lsf.sachsen.de/download/fortschrittsbericht_aufbau_ost_2008.pdf
83	동독 사회 시설과 연결된 구 채무 문제–발전과 해결	2005년 3월 1일	연방재무부	Monats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März 2005, S. 65–70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Monatsberichte/Publikationen_Migration/2005/03/Altschulden–fuer–gesellschaftliche–Einrichtungen–in–den–neuen–Laendern–Entstehung–und–abschliessende–Loesung–pdf.pdf?__blob=publicationFile&v=2
84	배상 및 보상급부법	1994년 9월 27일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수상, 연방 재무장관, 연방 내무장관, 연방 법무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65, S. 2624–2639
85	인구변동의 조건 하에서 인프라 시설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연방 내무부/독일 도시연구소의 조사연구	2010년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 연방정부 내무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	http://www.beauftragter–neue–laender.de/SharedDocs/Downloads/BODL/Themen/Demografie/expertise_finanzierung.pdf?__blob=publicationFile
86	도시재건과 주민참여–연방 교통건설 도시개발부	2009년	건설과 공간계획을 위한 연방관청 산하 건설, 도시와 도시계획 연구소	http://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BMVBS/Forschungen/2009/Heft140_DL.pdf;jsessionid=514F01ED6E855D1015F4B753EBAB6B82.live2053?__blob=publicationFile&v=2
87	투자촉진법에 관한 연방정부의 실무지침	1991년	연방정부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Heft 5, S. 186–188
88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 평가	2008년 10월 1일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http://www.stadtumbau–ost.info/aktuelles/Evaluierungsbericht–klein.pdf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9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	2009년 3월 18일	연방의회 의원(기민당/기사당 사민당 원내단체)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6/12284
90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경제적 연계	2006년 12월 1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통건설 농업개발부	http://www.regierung–mv.de/cms2/Regierungsportal_prod/Regierungsportal/de/vm/Themen/Landes–_und_Regionalentwicklung/Laenderuebergreifende_Zusammenarbeit/Ueberregionale_Partnerschaften/Projekt_Kooperation_und_Vernetzung_im_Nordosten/index.jsp#dud
9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과 인프라 정책의 틀에서 지자체 간의 협력 형태	2005년 1월 1일	연방 도시계획청	
92	작센삼각지 메트로폴지역의 예를 통해서 본 신연방주의 광역 경제협력	2007년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http://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BMVBS/WP/2008/heft54_DL.pdf;jsessionid=A1B67AA66A09836CC0DFD3EEA5A236CA.live1042?__blob=publicationFile&v=2
93	초지역적 파트너쉽–지역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책임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	2008년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http://www.bbsr.bund.de/BBSR/DE/FP/MORO/Forschungsfelder/2008/UeberregionalePartnerschaften/DL_Regionen.pdf?__blob=publicationFile&v=2
94	초지역적 파트너쉽–공간계획의 모델	2008년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http://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BMVBS/MORO/3/moro3_4.pdf?__blob=publicationFile&v=2
95	세계화와 지역화 과정의 맥락에서 본 신연방주의 지역경제 지원	1995년 6월 30일	사회연구소, 프랑크푸르트대학	http://www.fastev–berlin.org/glokalisierung_eu–ddr_1995.pdf
96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대한 자료	1994년 2월 8일	연방정부, 연방 내무부, 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97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대한 자료	1995년 9월 8일	연방정부, 연방 내무부, 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98	2010 동부 혁신지도–풍부한 아이디어와 확실한 장래	2010년	연방 교육연구부	http://www.bmbf.de/pub/innovationsatlas.pdf

문서번호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9	2002년 경과 작센 보고서	2002년 1월 1일	작센주 재무부	http://www.smf.sachsen.de/download/fortschrittsbericht_aufbau_ost_2002.pdf
100	베를린을 포함 신연방주에서 2014-2020의 기간에 유럽 구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실무방안	2010년 6월 1일	연방 경제기술부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Publikationen/anforderungen-und-handlungsoptionen-einsatz-europaeische-strukturpolitik,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문서 요약

1. 소유권(문서번호 1a~11)

문서 번호 1a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법은 소유권을 몰수당했거나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소유자는 해당 토지, 건물 또는 사업체를 관장하는 기관에 해지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토지, 건물과 사업체의 반환은 법률적으로 공증되어야만 한다.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사용방법과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1) 그 대상물이 공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거나, (2) 이미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3) 주택건설 또는 주거지 건설에 통합된 경우, (4) 또는 그 대상이 한 사업체에 흡수되어서 그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사업체에 경제적인 해가 될 경우 그것은 소유권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1b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국유 건물과 부동산은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한다. 원소유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공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는 해지금을 지불해야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새로운/원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2

토지개혁 대지의 소유권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내용_

이 법을 통해 이전의 법령에서 규정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해제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7, 16.03.1990, S. 134

문서 번호 3

국유자산의 지자체자산화 시행령

1990년 7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의회

내용_

기초단체재산법은 (동독의)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각 지자체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대상이 되는 재산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주민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지 자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해당 부처의 장관 또는 신탁관리청장이 소유권 이전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5, 30.07.1990, S. 781-782

문서 번호 4

국영주택조합의 공공주택조합화 법

1990년 7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건설부

내용_

이 법은 국영으로 운영되던 주택경영회사를 공영 주택공사로 전환하는 것과 그에 따른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부정당하게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이 문제를 꼭 고려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소유권이 지자체에 넘겨지도록 한다. 공영 주택공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들 공영 주택공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9, 09.08.1990, S. 901-902

문서 번호 5

독일을 위한 연대협약/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 정당과 원내 대표들의 연석회의
1993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주정부, 국민정당의 당수, 연방의회 원내 대표

내용_

연대협약은 통일된 독일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위해 연방과 연방주 간에 합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동력의 강화를 이룩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 신연방주는 주로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연대협약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방-연방주 간에 새로운 재정배분: 558억 마르크 규모의 재정이전을 추가로 도입
- 신탁관리청이 환경오염과 산업핵심시설을 확보,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틀을 확대
- 철도개혁
- 주택건설 강화
- 재건은행의 자본을 300억에서 600억 마르크로 증액
- 연방의 과제(사회적 규정, 사회, 경제 영역에서 연대정책을 악용하는 것을 척결, 세금보조의 감축 등)
- 연대세의 도입

출처_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Nr. 22/S. 185;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594-64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16.03.1993

문서 번호 6

투자우선법
1992년 7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동독 체제 하에서 박탈된 재산에 대한 보상보다 재산권의 반환을 우선시한다는 기본원칙은 투자우선법에 의해 제약받게 되었다. 투자우선법은 소유권 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 투자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재산법에 따라 소유권반환의 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차후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물 그리고 사업체도 특별한 투자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우선법은 (대상 부동산과 사

업체와 관련되어) 계획된 조치가 (투자대상인 부동산과 관련되어) 정해진 특별한 투자목적에 부합한다는 소위 말하는 투자우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사람에게 투자목적을 위해 부동산 또는 사업체를 매도, 임대, 임차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 그것이 고용안정과 창출을 위해 활용되거나, 주거공간의 창출 그리고 투자에 필요하거나 투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조치에 사용될 경우 특별한 투자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사업체의 경우 그리고 사업체를 위해 필요한 토지의 경우 고용안정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거나 또는 사업체의 유지, 회생을 위해, 또는 사업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사용될 경우 특별한 투자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투자우선증명이 다른 허가서나 합의서를 대신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3, S. 1257-1286

문서 번호 7

1990년 5월 18일에 제정된 화폐, 경제, 사회적 통합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계약에 관합 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법은 화폐, 경제, 사회연합의 설치에 관한 합의를 다룬다. 계약체결 당사자 즉 동독과 서독은 서독의 마르크를 공동화폐로 그리고 독일연방은행이 화폐 주관은행이 되는 것을 합의하였다. 이 조약에서는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연합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사유재산, 성과를 위한 경쟁, 자유가격제와 노동과 자본의 자유 등을 보장). 화폐, 경제연합과 함께 이루어질 사회연합의 골자는 공정한 노동질서 그리고 성과정의와 사회적 균형의 원칙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체계이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34, 25.06.1990, S. 331-356

문서 번호 8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재구성에 대한 법(신탁법)

1990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내용_

신탁관리청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재산권 이전
- 신탁관리청의 지위와 과제
- 신탁관리청의 이사회
- 신탁관리청의 행정위원회
- 신탁관리청의 수입과 수입의 사용
- 신탁관리청의 상황보고서와 연례보고서
- 신탁관리청-주식회사(신탁관리청은 신탁관리청-주식회사를 통한 탈중앙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그 업무를 진행한다)
- 신탁관리청-주식회사의 과제/업무
- 신탁관리청-주식회사의 조직기구와 그 사업 단위의 자본회사로 전환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33, 22.06.1990, S. 300-303

문서 번호 9

국유건물 매각에 관한 법

1990년 3월 7일

담당자 / 기관_ 만프레드 게어라흐, 동독 국가회의 의장

내용_

이 법은 국유 건물의 상업목적을 위한 매각, 국유인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과 휴양시설의 매각, 세입자의 권리보호, 건물 소유권의 이전, 국유 임대건물의 매각 그리고 소유권의 교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국유재산에는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이 세워진 토지, 휴양시설이 건축된 토지 그리고 다른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이 토지들은 시민과 자영업, 기술자 그리고 상공업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8, 19.03.1990, / S.157-159

문서 번호 10

국유건물 매각에 관한 법의 집행을 위한 규정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한스 모드로우, 동독 장관회의 의장, 발터 지거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국유 건물의 매각에 관한 법의 실행규정을 통해 해당 건물 또는 토지의 법적 소유자에 의해 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하도록 되었다. 그것은 국유 건물과 토지의 매각이 그 토지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시 군, 읍의 의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 건물과 토지의 매도가격은 각 지역의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매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8, 19.03.1990, S. 158-159

문서 번호 11

투자간소화 및 택지확보에 관한 법률

1993년 4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이 법을 통해 특히 신연방지역에서 상업적, 산업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계획과 허가절차를 간소화, 신속화하는 조치가 도입되는 등 투자요건이 완화되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와 필요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법률적인 틀도 개선되었다. 그 개별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법과 도시건설계획법의 완화와 심사의 가속화
2. 환경보호법적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가속화
3. 도시건설법의 계약요소의 강화
4. 도시외관규정의 간소화와 심사절차의 생략 가능성
5. 건설법과 자연보호법의 조정
6. 쓰레기처리장의 허가절차의 가속화
7. 신연방지역의 행정분쟁절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허용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16, S. 466-488

문서 요약

2. 주택건설과 주택수당 지원(문서번호 12~21)

문서 번호 12

신용재건기금의 주택현대화 프로그램

2001년 3월

담당자 / 기관_ 재건은행, 신연방주

내용_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 동독지역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포함한) 주거공간의 개량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저금리 융자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융자는 개인, 주택회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었다. 융자기간은 30년까지이며 융자 초기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되었다.

출처_ KfW-Wohnraum-Modernisierungsprogramm II, 03.2001

문서 번호 13

투자촉진법

1998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경제위원회

내용_

기업융자완화법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본사가 독일 상법(기업정산과 기업보고서 장)에 따라 국제적인 기업정산을 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 이 법을 통해 독일 본사들이 독일 상법에 따라 기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국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또는 미국의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US-GAAP)의 기준에 따른 기업정산보고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8, Nr. 22, S. 707-709

문서 번호 14

제1차 기본임대료 인상규정

1991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이름가르트 아담-슈베처 연방 건설부장관

내용_

주택임대료 인상의 최대 허용치는 1991년 1월 10일에 1 스퀘어미터 당 매월 최대 1 마르크였다. 1990년 10월 2일에 목욕탕과 중앙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의 경우 또는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각 0.15 마르크 인상하도록 허용되었다. 만일에 화장실이 주택 외부에 있다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인상분은 스퀘어미터 당 0.15 마르크 내려간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69

문서 번호 15

신연방주의 임대료 이양법

1995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연방정부와 연방주들 간의 오랜 심의를 거쳐서 임대료 이양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였다.

1. 적용범위: 이양법은 그 때까지 기본임대료규정이 적용되던 동독 시절에 건축된 주택에 적용된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새로이 건설되었거나 완전개량을 통해 다시 주거가 가능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전 연방지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임대료 조정법을 적용한다. (임대료 조정법은 민법 55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임대료의 인상률은 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시설과 크기, 그리고 유사한 주변환경에 있는 주택임대료가 최근 4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적으로 총 4백 6십만호의 주택에 대해 임대료 이양법이 적용되었다.
2. 1995년 8월 1일자 임대료 인상: 임대료는 1997년 말까지 기존의 수준보다 약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문서 번호 16

신연방주를 위한 주택수당특별법 도입

1991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연방정부

내용_

이 법은 주택수당(주거보조비)의 규모와 형태를 규정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주거보조비 신청자격
- 소득 규모에 대한 조사기준(가족수입과 연간수입)
- 거부근거
- 주거보조비 지급, 증액 그리고 종료(신청서, 정보제공의 의무, 지급기간, 지급방법, 주거보조비 신청자격 상실, 행정법원의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 난방비와 수도세를 위한 보조금
- 주거보조비의 지급
- 주거보조비 통계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50-1267

문서 번호 17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1992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연방회의

내용_

이 특별법을 통해 주택수당(주거보조비)의 추가금이 1993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99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게 되었다. 나아가 이 법에 주거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의 한도, 주거보조비 지급 동의서의 유효기간 연장, 그리고 주거보조비 사전지급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6, S. 1380-1385

문서 번호 18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 법률

1993년 1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연방회의

내용_

1992년에는 신연방지역에서 개인소득 수준의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그리고 1993년 2월 1일까지 신연방주와 서독지역의 수입 격차를 좁히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로 인해 주택수당(주거보조비)에 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신연방지역의 소득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1992년도에 지역경제가 붕괴되면서 이 지역의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임대법 3조에 따라 현대화 공사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공사에 따른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시켜서 임대료를 11%까지 인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새로이 개정된 이 법은 신연방지역에서 주거보조비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거비로 인한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주택수당특별법은 나아가 가족에 적절한 주택과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법 21조에 따라 개별난방, 중앙난방 또는 도시가스난방 등 다양한 형태의 난방을 위한 추가보조금의 지급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74, S. 2438-2439

문서 번호 19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 법률

1994년 10월 7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안할트, 튜링겐

내용_

이 법의 도입 목적은 1995년도 또한 과도기로 규정하여 주택수당 수령자들에게 개선된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택개량으로 인해 인상된 임대료로 인해 이들이 지게 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을 통해 신연방주에서는 현재의 주택수당법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나아가 1996년부터 독일 전역에서 주거보조금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그 때까지 변화된 임대료를 주거보조금에 반영하고 가족친화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주택수당의 원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69, S. 2644-2645

문서 번호 20

주택구입 보조금 프로그램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구 채무보조법은 통일조약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통일조약의 체결의 당사자들은 동독의 주택회사의 채무를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에 (구 채무 중에서 주거공간 1 스퀘어미터 당 150 마르크를 면제하는 것이다) 합의하였었다. 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은 주택 또는 주거공간의 15%를 세입자와 조합가입자에서 매도한다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2407-2412

문서 번호 21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구 채무지원법

1995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이 법을 통해 1995년 7월 1일자로 종료되는 주택회사의 구 채무에 대한 이자보조금과 그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투자기회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택수당특별법을 통해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문서 요약

3. 도시 개량(문서번호 22~25)

문서 번호 22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프로그램

2007년 3월

담당자 / 기관_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도시건설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식지

내용_

이 문서에서는 통일 이후 15년 동안 진행된 "도시건설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읽을 수 있다. 도시 건물개량, 도시 건축지원, 도시건설을 위한 문화재 보호의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1991년 이후 구성된 도시건설을 위한 문화재보호 전문가그룹의 업무 등이 평가되었다. 양적 통계 자료 외에 8개의 동독 도시에 거주하는 여덟 명의 증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http://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service/downloads/informationsdienste/Infodienst32.pdf

문서 번호 23

신연방주 경제성장 지원과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투자간소화법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내용_

통일 이후 각 지역 간에는 경제력과 경제성장 지원능력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 5개 주의 주정부와 기초단체가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1998년부터 4년 간 매년 총 66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944, 982

문서 번호 24

헌법 104a조 4항에 따라 도시건설 조치를 위해 연방이 연방주에게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행정협의(VV- 도시건설촉진 1999)

1999년 7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내용_

이 행정기본 협의의 틀에서 연방정부는 사용되지 않는 산업지역 철도부지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부지는 주택과 작업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또는 그와 관련된 시설의 건축에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 Programm zur Städtebauförderung: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nn_1087344/StBauF/DE/UeberDieStBF/RechtlicheGrundlagen/RechtlicheGrundlage__node.html?__nnn=true

문서 번호 25

연방정부 프로그램 '구 동독-도시정비'

2001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빈집의 수를 줄이고 주택사업의 환경을 개선하며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조치를 보면

1) 과잉공급된 분량의 제거(철거)
2) 철거 대상 지역의 가치개선
3) 시내 고건축물에 주택투자 집중

이러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약 20억 마르크(2002-2009년)
2) 연방정부는 도시개선 컨셉트 공모를 통해 2002년 말까지 3천 100 마르크를 약 100개의 기초단체에 지원하였다.
3)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이 재건은행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 주었다.
4) 도시 중심부 고건축을 위한 투자지원금의 증액
5) 도시 중심부 고건축 지역의 주택 개선을 위한 투자 지원

출처_ Bundesregierung: Initiative der Bundesregierung zur Verbesserung der Stadt- und Wohnungsmarkt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Programm "Stadtumbau Ost". Beschlussvorlage für das Bundeskabinett, August 2001.

문서 요약

4. 농촌지역 개량(문서번호 26~28)

문서 번호 26

인구변동의 조건 하에서 튜링겐주 농촌지역의 기초단체 게마인데-모니터링 체제의 최종보고서

2007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정부 건설교통부 (제2국, 도시건설, 주택건설, 공간질서와 지역계획)

내용_

2004년에 조사된 30개의 기초단체 게마인데 중에서 18개 지역에서는 1인당 주거공간이 튜링겐 주의 평균크기 38평방미터를 훨씬 넘었다. 일반적으로 주거공간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튜링겐 전 지역에서 1인당 주거공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감소와 동시에 전체적인 주택의 크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거의 모든 게마인데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주거공간이 증가하였다. 건축허가 건수를 검토하면 대부분의 건축활동이 1990년대에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조사대상이었던 튜링겐의 게마인데에서는 빈 주택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을 철거하는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출처_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au, Landesentwicklung und Verkehr: http://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bv/monitoring_abschlussbericht.pdf

문서 번호 27

신연방주에서의 경지정리 및 농업(내무부)(2004)

2004년 2월

담당자 / 기관_ 칼-하인츠 티만, 브란덴부르크 내무부, 브란덴부르크주 측량과 측정정보

내용_

신연방주 농업에서 경작지의 정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농업조정법(LwAnpG)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1989년 이후 협동농장이 파산하였을 때 농민조합은 농민들이 원래 소유하였던 재산과 농지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고 경지에 대한 새로운 조정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일 경영자에 한정되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이 구성한 조합을 보호하는 조치였고, 그를 통해 농업의 구조를 미리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의미에서 경지정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단순히 소유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구조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협동농장이 닦았던 도로와 농로가 경지정리를 위한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거나 개별 소유지를 도로로 수용하는 경우 가능하면 무상으로 토지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보상하였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본 경지정리 신규정에는 생태연못 구조, 풍화방지 구조, 수질개선을 위한 식물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영역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지차체 차원에서 간소화된 건축계획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실제로 신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면적의 약 10% 정도만 처리되었다.

출처_ Vermessung Brandenburg, Nr. 2/2004, S. 54-66

문서 번호 28

사회적 시장경제에 동독 농업의 적응을 지원하는 법-지원법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내용_

이 법은 농업기업, 농업분야에서 가족기업의 창업, 생산과 시장구조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 해고에 따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이후에 통일조약에 수용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33-634

문서 요약

5. 사회기반시설 발전(문서번호 29~39)

문서 번호 29

통일독일 교통 프로젝트
2011년 5월

담당자 / 기관_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내용_

연방정부는 1990년에 체결된 내독 도로협정의 사전작업과 그 이후 이루어진 보충조사를 근거로 1991년 4월 9일에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와 그것의 신속한 실현을 결정하였다. 유럽 내수시장이 개방된 이후 독일은 이미 유럽 내에서 교통 통과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 국경의 개방으로 교통량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기존의 교통축이 남북으로 이어졌다면 새로운 교통축은 동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에서는 1991년부터 2010년 말까지 약 삼백 칠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그 중에서 철도에 약 백사십육억 유로,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약 백사십칠억 유로 그리고 수로 프로젝트에 약 십사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출처_ Sachstand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Mai 2011

문서 번호 30

철도, 수로, 자동차 교통을 이용한 공공화물 수송에 대한 3차 규정
1990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한스 모드로우, 동독 장관회의 의장, 하인리히 숄츠, 동독 교통부장관

내용_

이 규정은 내륙수로, 철도와 도로를 통한 공공화물 운송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독의 수송수요에 대한 조사와 수송수단을 상실 또는 훼손한 수송고객에게 취해지는 제제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수송수단, 수송보조수단 그리고 적재화물이 적적하게 순환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하도록 되어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18, 19.03.1990, S. 167

문서 번호 31

신연방지역의 수로를 이용한 화물 운송

2010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

내용_

이 글은 연방정부가 신연방지역의 경제건설을 위해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을 경고한다. 그 예로 막데부르크 수상교차로의 트록다리가 언급되고 있다.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5억 유로를 투자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방교통부는 연간 18.3톤의 화물운송량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실제로 운반된 화물량은 2.7톤으로, 연방교통부가 예상했던 것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이런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연방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친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이 글은 지적한다. 그리고 동서지역에 균등하게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수상화물 운송량의 80%가 서독의 라인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출처_ Der Spiegel, 46/2010, S. 28-29, 15.11.2010

문서 번호 32

동 서독간 물자 및 서비스 교통에 대한 1차 시행령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게어하르크 폴, 동독 경제부장관

내용_

이 법은 동서독 간의 모든 물자와 서비스 수송을 위해 무역청에서 발행하는 수송의 목적과 최종 목적지를 명시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이 증명서에는 납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kg으로 표시된 물건의 순중량, 물건의 가치, 원산지, 발송일, 그리고 장소, 일자, 서명 또는 회사인이 기록되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8, 08.08.1990, S. 860-861

문서 번호 33

신연방주와 베를린 도로건설계획촉진법 (도로계획촉진법)

1991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독일 통일 당시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도로건설계획법은 20년까지 걸리는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도입된 이 법은 신연방주의 도로건설을 위한 계획기간을 단축하여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내에 도로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도로를 보수하고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는 건설사업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독일 전역에 동등한 삶의 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신연방지역과 베를린에 있는 모든 연방도로(철도, 도로, 수로)에 적용되었다. 나아가 공항과 전철, 지하철 등 철로를 이용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도 적용되었다. 이 법은 특히 연방교통장관에게 모든 연방도로의 노선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도로의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작업이 훨씬 가속화될 수 있었다. 이 법을 통해 형식적인 공간질서 검토 절차가 생략되고 계획확정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그것은 계획을 공고하고 그에 대한 각 부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하거나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통해서 계획확정 결정 대신에 건축조치의 근거로서 특별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획을 허가함으로써 그리고 행정법원의 절차를 한 단계로 단축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5, S. 2174-2176

문서 번호 34

장거리도로 확장건설법에 관한 제4차 개정 법률

1993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독일은 통일과 동유럽의 국경이 개방된 이후 동서와 남북 양 방향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경제 흐름과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신연방주의 도로교통망은 완전히 새롭게 보수되어야만 하였다. 연방도로건설을 위한 재원의 총규모는 서독에 약 사천백팔십억 마르크 그리고 신연방지역에 약 육백칠십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이 법률의 부록을 보면 신연방지역에서 진행된 수많은 교통 프로젝트가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프로젝트의 시급성 분류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노이브란덴부르크시를 우회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의 경우 비용이 원래 칠천오백만 유로를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일억 이천팔백만 마르크가 소요되었다(연방도로B96/B 104).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61, S. 1877

문서 번호 35

철도건설 촉진을 위한 투자배치 법률 – 베를린-오비스펠테 간의 철도노선이 "스텐달시 남부로 통과"하도록 건설하는 것에 관한 법

1993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독일 전 지역의 삶의 질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독일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과제이다. 이 틀에서 신연방지역 스텐달시를 경유하던 철도를 도시 남부로 순환하도록 만들기 위해 베를린-오비스펠테 간의 철도노선 99.95km 지점에서 113km 지점까지 그리고 155km 지점까지 새로이 건설하게 되었다. 이 법에는 이 구간의 철도의 운영을 위한 구 동독의 독일제국철도의 특수재산과 서독의 연방철도시설의 확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법을 통해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이

법을 근거로 이와 유사한 시설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적인 인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와 함께 이 사업의 주관자인 독일철도와 이 계획이 해당자들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62, S. 1906-1907

문서 번호 36

철도시스템 개혁을 위한 철도구조개혁법

1993년 12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이 법은 안전한 철도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은 동시에 철도 서비스와 철도 기반시설의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나아가 유럽연합 지역의 철도법과 다른 법규정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73, S. 2396-2405

문서 번호 37

항공교통법에 대한 제10차 개정 법률

1992년 7월 23일

담당자 / 기관_ 균터 크라우제, 연방교통부장관

내용_

기존의 항공관제는 증가하는 항공교통의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의 관제체계가 비록 항공교통의 안전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원활한 항공교통을 위해서는 더욱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업무법과 예산법의 틀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연방행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항공기의 이착륙 시간의 배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를 요구하였다. 민간협회에 이전된 스포츠항공회사의 운영과 허가에 대한 관리의 법적 근거 또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만 하였다. 나아가 정보보호와 연방회의의 역할 그리고 연방군의 권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앞으로 항

공관제 유한회사가 위탁을 받아 항공관제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직형태를 통해 항공관제 인력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항공관제 시설이 증가하는 항공교통의 수요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항공회사의 허가를 위한 법적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스포츠항공 영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협회들에게 이 부분의 항공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항공관제, 항공계획조정과 스포츠항공기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자들이 지불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방과 연방주 기초단체의 공공예산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6, S. 1370-1378

문서 번호 38

동독지역 내에서 서독수운 시행에 대한 법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내용_

연방수로를 통해 운반되는 해상 운송 물류에 대한 동서독의 해운협회 그리고 해운협회와 해운회사 간의 합의는 해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항구 내에서 운반되는 물류의 배분에 대한 것이다. 교통정책에 따라 또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이러한 합의에 대한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2, 17.08.1990, S.1042-1049

문서 번호 39

지자체 교통재원조달법에 대한 개정 법률

1993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의원들

내용_

1990년부터 신연방주에서는 지방도로를 개선하고 공공 대중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와 교통망의 보수와 근대화는 일정한 시간과 많은 투자금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당시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정법(GVFG)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연방재원을 동원하여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것은 독일 전역에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는 헌법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 틀에서 연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십억 마르크의 재정보조금을 전액 신연방주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서독의 연방주들은 이 재원이 신연방주들에 제공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연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독 연방주들에게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정법(GVFG)의 틀 내에서 연방으로부터 제공되는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십억 마르크 줄여서 충당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5, S. 1488

문서 요약

6. 통일독일의 수도(문서번호 40~48)

문서 번호 40

연방정부와 베를린시 정부 간 협력조약(수도조약)

1992년 8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베를린시 정부

내용_

제1조: 계약 파트너의 협력

-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 수도기능을 갖춘 지역의 개발, 헌법기관과 관청, 주거시설, 대사관, 인프라와 문화 교육 시설 그리고 상호적인 시설물의 이용 허용

제2조: 공동 위원회

- 상근 대표와 회원으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구성
- 의결사항은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 자체적인 회칙을 갖춘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제3조: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협력

-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협력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회칙을 통해 명시한다.

출처_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s Landes Berlin

문서 번호 41

정부 의회입지 배분과 관련한 베를린/본 법

1994년 4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수도 베를린, 연방시 본, 본 지역, 연방정부

내용_

연방수도 베를린과 연방시 본 간의 업무분할

- 연방정부의 핵심영역은 베를린으로 이전, 특히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 본에 남는 분야: 교육, 학술, 문화, 연구 그리고 기술, 전기통신, 환경, 보건, 식품, 농업과 산림,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국방
- 부처의 이전 이후 본에 남은 부처 공무원을 위한 적절한 보상
- 모든 부처는 본과 베를린에 본청 또는 외청을 둔다
- 여러 개의 연방관청과 재단, 연구소 단체가 본으로 이전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27, S. 918-921

문서 번호 42

수도재정 지원조약

1994년 6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베를린

내용_

수도 기능의 수행에 관한 연방정부와 연방수도 베를린의 협력 내용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베를린은 사회 기반시설과 문화 그리고 특별부담을 위해 십삼억 마르크의 지원금을 받는다.
- 연방정부는 베를린시의 교통 프로젝트에 약 십억 마르크를 제공하고 동참한다.
- 1996년부터 1999년: 베를린의 특별부담을 위해 육천만 마르크를 일회적으로 지원하고 문화를 위해 육천만 마르크를 지원
- 문화분야에 베를린과 연방에서 각 3명씩 지명하는 자문회의를 구성하며, 자문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출처_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start&ts=110863835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

문서 번호 43

치안 지원을 위한 수도재정 지원조약의 연계조약

2001년 3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베를린

내용_

수도 기능의 수행에 관한 연방정부와 연방수도 베를린의 협력 내용

- 연방정부는 베를린시가 수도로서 부담해야 하는 치안조치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칠천오백만 마르크를 제공

출처_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문서 번호 44

연방수도 문화재정 지원을 위한 조약

2001년 7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문화언론 특임관, 연방건설부, 베를린 정부, 유네스코, 연방도시 본

내용_

베를린의 문화재정을 위한 수도재정 지원조약의 후속조약

- 연방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베를린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위해 총 일억 마르크를 지원한다. 전국가적 의미를 지니는 문화시설들을 위해 연방은 매년 팔천만 마르크를 제공한다. 나아가 연방은 베를린에 소재한 유대박물, 베를린 영화제, 세계문화의 집 그리고 마틴 그로피우스 박물관을 위해 매년 삼천육백만 마르크를 지원한다.
- 유대박물관과 세계문화의 집은 그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 시설의 소유권은 베를린시에서 각 기관으로 이전한다.
- 연방은 베를린 영화제와 세계문화의 집에 대한 베를린시의 지분을 인수한다. 연방과 베를린주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으로 파견한다.
- 연방은 프러시아 문화재단의 건축을 위해 사천사백만 마르크를 제공한다.
- 수도 문화기금은 연간 사천만 마르크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방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있다. 연방과 베를린주의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재원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출처_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5-12, 13.06.2001

문서 번호 45

베를린과 본의 문화 지원에 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
2002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문화언론 특임관, 연방건설부, 베를린 정부, 유네스코, 연방도시 본

내용_

연방정부는 수도 베를린의 문화시설과 행사를 위한 지원의 일부만을 담당할 뿐이다. 간혹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문화지원금이 베를린정부에 의해 연방정부와 합의없이 주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1998년 새로이 선출된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내에 문화와 미디어를 담당할 연방정부 특임관직을 신설하였다. 연방정부의 문화미디어특임관은 베를린 정부에게 문화 관련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며 연방정부가 더 이상 총액제로 베를린에 제공하였던 문화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연방정부는 수도문화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단독 책임권을 갖게 되었고 아무도 연방정부의 결정사항을 수정할 수 없게 되었다. 수도문화기금은 매년 백이억 유로의 예산을 갖는다. 이 예산으로 연방정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를린 박물관섬의 보수공사를 하였다. 1999년부터는 연방정부가 본의 오페라, 연극 그리고 시립예술관과 같이 고전적인 문화영역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70%를 부담하였다.

출처_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4. Wahlperiode, 14/9677, S. 1-4, 03.07.2002

문서 번호 46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재정 지원에 관한 조약
2003년 1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문화언론 특임관, 연방건설부, 베를린 정부, 유네스코, 연방도시 본

내용_

연방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베를린 소재 유대박물관, 베를린에 소재한 연방 문화행사 담당회사, 그리고 마틴 그로피우스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베를린 정부없이 프러시아 문화재단의 건축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베를린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하나인 함부르거 반호프 박물관, 베를린 예술아카데미 그리고 독일 영화재단에 대한 지원금 이천이백이십만 유로를 중단할 것이다. 연방정부와 베를린주정

부는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출처_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start&ts=1102410670&file=folgevereinbarung_kulturfinanzierung031209.pdf, S.1-4, 09.12.2003

문서 번호 47

베를린의 수도 기능으로 파생된 문화재정 지원과 연방정부 특별부담보상에 관한 조약

2007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페터 슈타인브뤼그 연방재무부장관, 베른트 노이만 연방정부 문화언론특임관,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 에어하르트 쾨르팅 베를린 내무부장관

내용_

연방정부는 2001년에서 시작되어 2004년까지 지속된 유대박물관,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그리고 마틴-그로피우스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연방정부는 2004년에 합의한 것처럼 베를린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으로 프러시아 문화유산재단의 건물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수도문화기금 또한 유지될 것이며 연방정부에 의해 매년 구십팔억 육천육백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받을 것이다. 연방정부와 베를린 정부 간의 계약에 따라 구성된 문화정책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재원지출에 관해 결정한다. 연방정부는 수도의 치안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베를린 정부에 매년 육천만 유로를 제공한다. 지하철 5호선 공사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늦어도 2020년에 완공한다.

출처_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start&ts=120524878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2007.pdf, S.1-6, 30.11.2007

문서 번호 48

본 지역을 위한 보상 프로젝트

1994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만프레드 칸터 연방내무부장관, 볼프강 클레멘트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정무장관 겸 주총리실장, 칼-하인츠 클레어 라인란트-팔츠 주총리실장, 베어벨 딕만 본 시장, 라이너 슈라이버 본 행정국장

내용_

연방정부와 의회가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되어 발생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본 지역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학술 문화 개발도상국 정책과 경제 분야에서 수도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본을 위해 체결된 합의안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십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재원은 연방회계감사청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본을 위한 보상의 일환으로 여러 개의 연구소와 전문대학이 설립되었다. 본 시정부가 상업과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그리고 상업지역과 기술집약단지를 유치 계획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쾰른/본 공항이 철도망에 연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에는 연방에서 3명,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2명, 라인란트-팔추 1명, 본에서 3명, 라인-지크에서 2명, 아바일러에서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회칙을 만들고 사무국을 운영한다.

출처_ Sammlung der geltenden Gesetze und Verordnunge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s: GV. NRW. 1994 S. 970.

문서 요약

7. 산업지원(문서번호 49~53)

문서 번호 49

동독 중소기업의 토지구입 지원 규정

1990년 7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칼 뷴세 동독 법무장관

내용_

시장경제적 조건 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보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유 상업용지의 매각에서 500인 이하의 고용자가 근무하는 동독의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초단체는 자체적인 소유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통해 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상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대지는 일정한 이용목적을 규정한 상태로 중소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65-666

문서 번호 50

사유화 및 재정 혁신에 의한 생존기업의 신속한 경쟁 능력 회복으로 산업 핵심지역 확보, 신탁관리공사 내부 문건(1992. 11)

1992년 11월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의 목표는 민영화와 개량을 통해 생존력이 있는 기업이 신속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핵심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영화정책의 가속화와 지속적인 유지
- 민영화할 기업의 개선(신탁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70%의 기업이 개선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 신탁관리청과 주 간의 협력
- 신탁관리청의 기업을 위한 관리, 비용, 시장문제의 해결책
- 신탁관리청과 연방정부 간의 업무분할과 조직적 구성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706-713.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51

신정부의 신탁관리공사를 통한 산업핵심지역 확보 및 재생 관련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재무부 및 경제부(1993. 6)

1993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연방경제부

내용_

통일 이후 독일은 신연방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새로운 과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주요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와 낮은 기업생산성으로 인해 동독이 세계경제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다.
- 신연방주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의 향상과 비용절감으로 상쇄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한 임금으로 인해 급격하게 생산비용이 상승하였다.
- (동구유럽 시장의 붕괴로 인해) 신연방주의 농업과 공업 생산품의 많은 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서독의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하였다.

토지에 대한 불분명한 소유권문제는 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공업무로 인해 신탁관리청의 과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신탁관리청의 방침

-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가의 기업적인 활동을 줄인다.
-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을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경제적 목적으로 토지와 대지를 제공한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717-737.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52

산업핵심지역 재생, 의회의원 프리츠 슈만(Fritz Schumann) 사회민주당의 국정조사 관련 연방정부의 대답 Drs.12/6069(1993. 11)

1993년 11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민사당/좌파리스트 프리츠 슈만 의원

내용_

민사당/좌파당의 프리츠 슈만 의원은 신연방주의 핵심 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방정부에 질의하였다. 그가 언급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산업, 광학산업, 조선업과 해양기술, 전자산업, 철강산업, 기계공업과 전기기술, 석유화학산업. 이 질문은 신연방주의 생산이 붕괴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

출처_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12/6069, S. 1-10, 02.11.1993

문서 번호 53

산업핵심지역 재생, 의회의원 프리츠 슈만(Fritz Schumann) 사회민주당의 국정조사 관련 연방정부의 대답 Drs.12/6069(1994. 5)

1994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연방경제부)

내용_

민사당/좌파당의 슈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에서 신연방주 핵심산업 개선의 목표를 읽을 수 있다. 이 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쟁력 있는 산업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 지원
- 철도, 우표, 통신과 교통 부분의 기반기설 확대
- 신탁관리청과 핵심산업의 개선조치를 통한 기업개선과 민영화
- 투자방해요소의 제거
- 연구개발의 지원
- 신연방주 생산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조치
-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조치

나아가 신연방지역의 생산의 붕괴는 오랜 기간 동안 지배해 온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것임을 지적한다.

출처_ Drucksache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12/6069, S. 1-10, 02.11.1993

문서 요약

8. 수자원(문서번호 54~55)

문서 번호 54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보호 프로그램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동독 총리

내용_

환경기본법은 자연재산의 일부인 물을 일반 복지와 함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연을 해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1982년 7월 2일에 도입된 동독의 수자원법은 연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42, 20.07.1990, S. 649-654

문서 번호 55

주민들에 대한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지원 보장에 대한 규정

1990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베르터 스코브론 동독 재무차관

내용_

이 규정은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또한 에너지공급 또는 상하수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행정관청의 재무행정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근거인 판매가격은 환경부장관이 재무장관과 에너지공급회사와 상하수도관리회사의 책임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회사는 해당 재무행정관청에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된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또는 규정을 어기면서 수령한 지원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처벌조치의 실행은 해당 재무행정관청장이 주관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9, 14.09.1990, S. 1446-1447

문서 요약

9. 환경정화(문서번호 56~71)

문서 번호 56

동독지역 특별환경보호조치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동독 총리

내용_

효과적인 자연 및 환경보호 그리고 서독과 함께 계획한 환경연합 실현을 위하여 인민회의는 199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환경기초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서독 환경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 동독의 특수한 상황이 과도 규정으로 언급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지대는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처리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오염지대를 취득한 사람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진행된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인민군(Nationale Volksarmee), 독일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 독일우체국(Deutsche Post), 독일인민경찰(Deutsche Volkspolizei) 등이 조사할 수 있다.
핵기술에 대한 안전 및 방사선방호(放射線防護)와 관련하여 이미 승인이 내려진 경우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가는 앞으로 5년 후, 방사능 물질 운송 인가는 2년 후 그 효력을 상실한다. 방사능 물질 수출에 대한 인가는 즉시 철회한다.
1982년 7월 2일 제정된 동독의 수자원법(Wassergesetz)은 연방법(Bundesgesetz)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서베를린과 동독 간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은 새로이 인가받아야 한다.

출처_ Inform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09.1995

문서 번호 57

"생태적 오염지대"-연방/통일특수과제청/공동작업팀 결정(1996. 9. 20)

1996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과제를 위한 연방관청, 환경보호/오염토지관리국

내용_

환경오염이 잔존하는 지역의 친환경적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간의 행정협약을 통해 규정되었다. 이 행정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신탁관리청/연방주 간에 구성된 공동 실무그룹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대지(Altlasten) 문제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이들이 내부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만든 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 1991년 3월 22일에 제정된 장애물제거법(상업지역과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
-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간에 1992년 12월 1일 그리고 1995년 1월 1일에 체결된 행정협약(환경오염지역의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할권)
- 1993년 6월 11일에 공동 실무그룹에서 결정한 사항(환경오염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에 60:40으로 부담)
- 1993년 10월 26일에 결정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지침(연방정부와 주정부가 75:25로 재정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환경오염제거 프로젝트의 조건과 실행)
- 1996년 9월 20일에 결정된 비용보전을 위한 규정(신탁관리청이 각 주정부에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

출처_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nicht veröffentlicht)

문서 번호 58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청 설치에 대한 법률(1999. 10. 25)

1999년 10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환경부

내용_

작센-안할트주는 이 법을 바탕으로 오염토지를 복구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무 집행 권한을 가진 "주오염지역복구의무면제청(Landesanstalt für Altlastenfreistellung, LFA)"을 설치한다.

이 관청은 환경기본법 1조 4항 3호에 따라 오염 복구의무 면제 제안 및 해당 조치 시행을 담당한다. 관련 임무는 다음과 같다.

면제 제안 결정, 장기 재무계획 조정을 위한 복구전략 및 복구계획 수립, 복구조치 결정, 공고 및 위임 안내, 프로젝트 모니터링, 복구조치 최종 검사

행정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토지계획 및 환경부(Ministerium für Raumordnung und Umwelt, MRU) 관계자 2인, 재무부(Ministerium für Finanzen), 기술경제부(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노동, 여성 및 사회복지부(Ministerium für Arbeit, Frauen und Soziales) 관계자 각 1인, 하위 관청 관계자 1인, 토지계획 및 환경부 하위 관청 관계자 1인, 주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원 1인 자금 조달은 연방자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출처_ Gesetz-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999, S. 336-342

문서 번호 59

환경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환경보호: 임무 및 해결, 신탁관리공사(1993. 3)

1993년 3월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의 환경보호/오염토지관리국

내용_

오염된 토지는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경제적 위험부담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관리청은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 차후에 오염제거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의 많은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개발되었다. 신연방지역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1992년까지 약 1,000회 측정이 이루어졌다. 1993년에 1,000회의 측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탁관리청 내에서 환경보호/오염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오염지역에 관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였다. 거기에는 오염지역, 오염 측정 결과, 위험 제거 조치를 위한 비용 등을 위해 신탁관리청이 책임져야 할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66-373 (Aufgabenspektrum und Lösungswege).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60

신탁관리공사와 계약된 동독시절 환경부담 위험, 재무부가 신탁관리공사 총재에게 보낸 서한(1990. 11)

1990년 11월 27일

담당자 / 기관_ 호스트 쾰러 연방재무차관, 신탁관리청 이사

내용_

연방재무차관이 연방경제부와 합의 하에 신탁관리청과 계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오염위험이 있는 토지의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을 신탁관리청에 송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염의 위험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람 또한 일정한 정도의 자기 부담을 감당해야만 한다. 신탁관리청이 오염된 토지의 처리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오염제거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관리청과 합의해야만 한다.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탁관리청의 동의 하에 감정평가사를 불러야만 한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74-378.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61

장애제거법(동독 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1991. 3. 22)

1991년 3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기업 사유화의 장애 제거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Gesetz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 12조는 동독 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통일조약을 통하여 인용됨).

기업 부지 및 시설의 소유권자, 소유주, 취득자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책임면제는 1년 이내에 연방주 관청에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승인할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주가 피해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0, S. 766-789

문서 번호 62

정부에 의한 환경피해 책임 면제/Senat, 신탁관리공사(1991. 7)

1991년 7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의 법무국장, 환경보호/오염토지관리국장

내용_

신탁관리청 소속 기업의 상황에 대한 이 서신은 소위 말하는 "면제신청서"의 문제를 언급한다. 동독 환경기본법 I조, 4항 3번 문항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해당 관청이 상업목적의 토지와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오염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 단 해당 환경오염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책임면제 조항의 목표는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의 민영화에서 오염처리 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민영화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해당기관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기초단체가 담당하고 일부 주에서는 연방주의 최고위 관청에서 관할한다. 해당관청은 신청자의 이해관계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염토지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이 자동적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91-39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63

사유화 계약에서 과거 부담과 관련한 합의 기본 원칙, 법률과 환경보호 부서 서한(1991. 8)

1991년 8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의 법무국장, 환경보호/오염토지관리국장

내용_

신탁관리청이 체결한 민영화계약과 관련하여 오염토지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주의하여야 한다: 오염지는 토지 또는 지하수가 환경을 위협하는 특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관리청 또는 토지의 매각자는 대지와 지하수가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장할 수 없다. 신탁관리청/매각자가 계약 체결 시 이미 확인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될 재정적 부담을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신탁관리청/매각자가 지는 부담은 복구작업의 현실적 필요성과 예상되는 복구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2.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적정한 수준에서 복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일정한 수준까지의 "기본금액 (Sockelbetrag)"은 취득자가 모두 부담하며, 그것을 넘어서 "최고한도금액"까지는 취득자와 신탁관리청이 분담하여 부담한다. 취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최소한 10%이다.
3. ""최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은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그 상대가 중소기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관리청이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4. 신탁관리청/매각자가 오염처리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전문평가사를 초빙하여야 한다. 나아가 취득자는 매각자/신탁관리청에 복구를 위한 견적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매각자/신탁관리청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지 5년 이내에 오염의 존재 여부를 통보해야만 한다.
6. 취득자는 매각자/신탁관리청이 공동으로 위험부담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환경기본법 1조 4항 3문항에 따라 책임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99-40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64

환경부담을 지닌 기업에 대한 사유화 기본 원칙, 신탁관리공사 위원회 결정 (1993. 3)

1993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이사

내용_

오염토지의 복구비용이 민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관리청은 민영화계약을 체결할 때 오염토지의 처리비용 부담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주의해야 한다:

1. 정의 : 오염토지(Altlasten-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구 채무)는 산업용지 또는 상업용지 중에 공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인해물질에 의해 오염된 토지를 말한다.
2. 오염토지로 인해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청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신탁관리청이 오염토지 복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4. 신탁관리청/매각자가 부담할 위험비용의 규모는 예상되는 복구비용과 복구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5.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적정한 수준에서 복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일정한 수준까지의 "기본금액 (Sockelbetrag)"은 취득자가 모두 부담하며, 그것을 넘어서 "최고한도금액"까지는 취득자와 신탁관리청이 분담하여 부담한다. 취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최소한 10%이다.
6. "최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은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그 상대가 중소기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관리청이 이 비용을 부담한다.
7. 신탁관리청/매각자가 오염처리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전문평가사를 초빙한다. 나아가 취득자는 매각자/신탁관리청에 복구를 위한 견적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8.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매각자/신탁관리청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지 5년 이내에 오염의 존재 여부를 통보해야만 한다.
9. 취득자는 매각자/신탁관리청이 공동으로 위험부담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환경기본법 1조 4항 3문항에 따라 책임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415-421.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65

사유화 계약에서 비롯된 환경부담 책임 관련 신탁관리공사의 비용억제 조치, 신탁관리공사(1994. 11)

1994년 11월 9일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내용_

민영화계약에서 오염토지 복구비용의 분담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신탁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1. 오염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에서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를 확보하여 신탁관리청의 비용부담을 제한: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신탁관리청에 의해 교육된 엔지니어 사무소에 취득자가 제안하고 실행한 조치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엔지니어 사무소는 신탁관리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아가 토지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 후에 취득자는 신탁관리청과 합의 하에 복구조치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면제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의사결정 참여의 권리를 확보하여 신탁관리청의 비용 부담을 제한: 연방주와 기초단체행정의 해당 관청은 환경기본법 1조 4항 1문항에 따라 토지의 오염을 제거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은 매도계약이 체결된 후 5년의 기간 내에 취득자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오염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환경 오염에 복구 비용 규정에 대해 1992년 12월 1일에 체결된 연방-연방주-행정협약에 의해 오염제거 의무의 면제를 방해하는 요인이 제거되었다. 이 행정협약은 연방주에 의해 오염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연방과 신탁관리청이 일부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계약 당사자가 적어도 10%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서 신탁관리청이 전체 비용의 60%,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75% 비용을 부담한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493-499.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66

신연방주 내 갈탄 채굴로 인한 오염지대의 정화를 위한 정보(2009. 5. 20)

2009년 5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

내용_

동독의 집중적인 갈탄 채굴 작업으로 인해 약 120,000 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이 오염되었다. 특히 수자원 관리에 있어 그리고 채굴작업으로 발생한 산업 잔존물로 인하여, 경관 보호적 측면(채굴로 인해 생성된 경사면 등)에 있어 심각한 생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잔존하는 환경오염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약 1,000 km에 이르는 경사면을 포함한 215개의 노천채굴광의 보호, 정화, 매립, 조형
- 57개 석탄공장, 48개 산업용 발전소의 철거 및 제거
- 산업 폐기물 또는 독성 폐기물이 존재하는 약 1,250개 오염의심지대 정화
- 수자원 관리능력 회복, 특히 지하수 부족 정정, 잔존 채굴광구 물 채우기

이러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조달 기반은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에 맺어진 특수 행정협약(VA I-IV)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1990년-2008년까지 약 85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2009년까지 기본정화, 폐석 수송, 철거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출처_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braunkohlesanierung_2012_bf.pdf

문서 번호 67

주정부 내 황폐화된 지대 정화를 위한 계획(2009. 9. 22)

2009년 9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환경부

내용_

인구가 변동하고 과거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와 같은 농촌지역에는 많은 건물과 부동산이 방치된 채로 남아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지역의 풍경을 해칠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에도 해가 된다. 이 문서를 통해 제시된 농촌지역의 황폐한 공간을 복구하기 위한 구상에서는 먼저 부동산의 문제가 설명된다. 그를 통해 황폐화된 공간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가능성과 잠재

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5. Wahlperiode, Drucksache 5/2816, S. 1-45, 22.09.2009

문서 번호 68

독일연방토지관리공사(BVVG)의 자연보호구역 양도(2003. 5. 26)

2003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토지매각 관리회사

내용_

1. 2009년 9월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재산보완법(Vermögensrechtsergänzungsgesetz)을 통해 신연방주에서 2000년 2월 1일까지 법적으로 확인되었거나 이미 확정된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리고 생물 서식지 지역으로 총 100,000 헥타르의 면적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제1단계에서는 총 50,000 헥타르까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나머지 50,000 헥타르는 신연방주가 자연보호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과거에 국유였던 농업 및 임업 면적의 민영화 작업을 위탁받은 토지관리공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에서 지정한 자연보호단체 또는 자연보호재단에 직접 양도할 수도 있다.
3. 브란덴부르크주에는 지금까지 총 4,719 헥타르의 자연 보호구역에 대한 무상 양도 공증계약서가 체결되었다(2003년 5월 26일 기준). 그 중에서 브란덴부르크주는 약 2,979 헥타르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약 1,740 헥타르는 재단에서 양도하였다.

출처_ Internet-BRAFONA, Rubrik "Forstliche Betriebswirtschaft/Marketing", S. 13, Ausgabe 5, Mai/Juni 2003

문서 번호 69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 폐쇄-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 입장 표명(1995. 4. 27/28)

1995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 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그라이프스발트 원자력 발전소(Kernkraftwerk Greifswald, KGR) 중단 계획에 대하여 연방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990년 12월 18일까지 가동 중인 5개의 원자로 블록이 가동 정지되었으며 6-8개의 원자로 블록 건설이 중단되었다. 북 에너지플랜트 유한책임회사(Energiewerke Nord GmbH, EWN)는 1993년 3월 5일 폐쇄 및 철거를 신청하였다.
- 원자로안전위원회와 방사능방호위원회는 안전기술 및 방사능방호기술적 측면에서 폐쇄 및 철거를 권고하였으며 북부 에너지플랜트 유한책임회사의 계획을 지지한다

출처_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ion Band 39, S.1-13, 27./28.04.1995

문서 번호 70

폐수공과금법에 대한 4차 개정법

1994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 퇴퍼, 연방환경장관, 균터 렉스로트 연방경제장관

내용_

하수배출법은 하수(폐수와 빗물)를 배출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하수배출을 위한 요금은 이 법의 3항 1문항에 의거하여 하수의 오염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수배출법의 4차 개정안은 하수구 당 지불하는 요금이 약간 인상되었고 그것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폐수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하수로 규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유해물질의 목록을 보충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41, S. 1453-1464

문서 번호 71

임야 반환과 국가 임업사업장 청산을 위한 신탁관리청과 신연방주 합의

1993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신탁관리청 결의안으로 신연방주에 대한 산지의 반환 및 국가 임업경영체 청산을 통한 수익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연방주들이 임업경영체의 구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임업분야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인수하는 것도 법적으로 규명되어야만 한다. 신탁관리청으로부터 유리하게 차환된 구 채권은 신연방주에서 인정받는다. 이에 관한 협정이 신탁관리청과 브란덴부르크주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간에 체결되었으며 나머지 신연방주에 대한 계약 초안을 제출하였다.

출처_ Dokumentation 1990-1994, Band 8, S. 324-328.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요약

10. 경계지역(문서번호 72~76)

문서 번호 72

1990년/91년의 기반시설 지원자금의 보장 및 동서독 접경지역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규정

1990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 라이헨바흐 동독 총리실 장관

내용_

과도기 동독 정부는 신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독의 과도정부와 서독 정부가 협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통해 동독이 다양하고 현대적인 경제구조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1, 14.08.1990, S. 999-1000

문서 번호 73

"스비네뮌데 정화시설" 공동 환경보호 프로젝트

1994년 4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환경부, 폴란드 환경보호부, 폴란드 스비네뮌데시

내용_

접경지역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프로젝트 "스비네뮌데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4개의 협의서가 존재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생활하수와 산업하수로 인해 많이 오염된 폴란드 쪽 스비네강 하구에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정부가 이천만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폴란드 쪽의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된 후에 독일 쪽에도 동일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마련되었다.

독일 쪽에서 나오는 하수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하수처리시설은 총 십팔만오천명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독일과 폴란드 간의 협력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이견은 중재재판소에서 해결되었다. 이 재판소의 판사는 폴란드 측이 1명, 독일 측이 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의 제 삼의 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되며, 그 재판장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임명된다.

"스비네뮌데 하수처리장의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공동 성명"에는 앞으로 근무하게 될 폴란드 인력은 독일 측에 지어질 정화시설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독일에서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독일 연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는 스비네뮌데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4, Nr. 27, S. 766-773

문서 번호 74

체코와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4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아돌프 리터 폰 바그너 독일 외무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환경장관

내용_

독일과 체코는 이 계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자원의 변화; 수로의 확장과 관리; 하천수리시설과 수질 측정시설의 건설 관리 운영; 홍수와 냉해방지; 경고와 신고체계와 같은 수질에 중대한 변화가 왔거나, 예외적인 수리학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책; 수력 발전; 상수와 하수; 하천의 수질 개선; 수질보호지역;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시설과 활동; 바이오톱의 보호와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하천의 보호. 이 협정은 어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경지역의 하천오염문제보다 먼저 하천보호문제가 다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7, Nr. 17, S. 924-932

문서 번호 75

그린벨트-행동지침서(2002. 11)

2002년 11월

담당자 / 기관_ 프로젝트사무소 그린벨트, 독일 연방자연보호청, 독일 환경자연보호연맹

내용_

1. 동서독 국경을 따라 형성된 비오톱(생태서식공간)인 “그린벨트”는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큰 비오톱(생태서식공간) 연계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태서식공간은 신연방주의 국경을 따라 1,400 킬로미터 이어진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한 동물 및 식물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보호와 생태서식공간연계를 위한 정책은 연방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밀도가 높고 활용도가 매우 높은 넓은 땅에서 국가가 생태서식공간 연계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제가 대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그린벨트의 자연보호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는 특히 (대부분의 경우 불법적인) 집중적인 농업경영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나아가 1996년에 제정된 장벽대지법 및 연방예산규정에 의거한 연방정부 소유(연방재정부)의 대지양도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원소유주에게 다시 재양도하는 문제도 자연보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3. “그린벨트”로 불리는 이 접경지역의 비오톱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보호 운동은 1989년부터 각 연방주의 환경청과 연방환경부(BMU)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꾸준히 높은 언론의 관심과 높은 사회적인 지지도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출처_ http://www.bund.net/fileadmin/bundnet/publikationen/gruenes_band/20021000_gruenes_band_leitfaden.pdf, S. 1-78, 14.11.2010

문서 번호 76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뀌다(2004. 9. 9)

2004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_ 국제자연보호연맹, 연방자연보호청

내용_

1. "유럽그린 벨트"이니셔티브는 과거 철의 장막의 "폐허"에서 유일무이한 환경 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모인 유럽 자연보호가들의 회의에서 2004년 9월 9일에 발족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그린벨트가 유럽에서 자연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의 상징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린벨트 지역에 근접한 국가에서 온 22명의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협력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2. 유럽연합은 2004년 5월부터 10개의 새로운 회원 국가를 추가하였으며, 이 중 8개 국가는 그린벨트에 참여하였다. 이 국가들은 지금부터 자연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나투라 2000(Natura 2000)의 보호구역 프로그램의 구축이 포함된다. 그린벨트는 확장된 유럽연합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지속발전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회의 참가자들은 유럽 그린벨트를 위한 실무 프로그램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처_ Pressemit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문서 요약

11. 연관체계의 통합(문서번호 77~80)

문서 번호 77

건축시행령 법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인민회의 의장

내용_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 대지와 건축
- 건축물(건축물의 형식, 건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완공 건축물, 시설과 건축양식, 계단, 비상구, 승강기와 출입구, 화재경보장치, 휴게실과 주택, 특히 공사현장)
- 건축 참여자(건축주, 설계사, 건설사, 건축책임자)
- 건설 감독관청과 행정절차 및 위법사항과 법규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50, 13.08.1990, S. 929-951

문서 번호 78

단일 건축법 시행에 대한 연방하원 의결사항

BT-Drs.12/4317

1993년 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서독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신연방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이 법에는 특히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투자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항과 주거목적의 건축지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절차 완화와 신속한 처리, 환경보호법과 관련된 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도시건축법의 계약요소 강화, 도시공간규정 심사절차의 간소화 또는 생략, 건축법과 자연보호법의 조화로운 조정, 쓰레기처리장 건설의 신속한 허가 및 신연방주에서 행정분쟁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의 일시적 간소화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16, S. 466-488

문서 번호 79

지리정보 관련 문서 준비에 대한 규정

1990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로타 아렌트 동독 내무부장관

내용_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측량과 지도제작을 허가 주문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측량의 산물에는 국가적인 측량지점 기준, 중력측정 기준과 고도측정 기준점이 포함된다.

지도제작의 산물로는 지도, 중력지도, 지구본, 학교지도 그리고 국가경계 또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지형물 또는 다른 대상을 보여주는 특별지도가 있다.

동독 영토의 일부를 보여주는 중력장지도와 지형도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eil I, Nr. 21, 30.03.1990, S. 205-207

문서 번호 80

건물통계 및 주택통계 조사에 관한 법률(주택통계법)(1993. 3. 18)

1993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통일독일의 주택공급은 동서 간의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주택정책 특히 주택산업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건물과 주택에 대한 통계를 실행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199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주택현황을 조사한 것과 1993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독일 전역에서 건물과 주택 1%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표본조사를 통해 주택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조사 뿐만 아니라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었다.

이에 반해 1987년에 행해진 건물과 주택에 관한 센서스와 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독 전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괄적인 데이터자료가 만들어졌었다. 이러한 조사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답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95년에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행해진 건물과 주택에 관한 조사의 경우 신연방주의 통계청들과 협의한 연방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연방주에게 팔천만 마르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자체협의회의 추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약 팔천육백만 마르크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1993년에서 독일연방 전역에서 행해진 1% 건물과 주택에 대한 표본조사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삼천백오십만 마르크의 비용이 들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10, S. 337-341

문서 요약

12. 추가 자료(문서번호 81~100)

문서 번호 81

"독일통일기금" 설치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회의

내용_

독일통일기금은 동독과 서독이 체결한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의 28조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 기금은 1994년까지 총 1,150억 마르크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다(1990년 220억 마르크, 1991년 350억 마르크, 1992년 280억 마르크, 1993년 200억 마르크, 1994년 100억 마르크). 이 기금의 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매월 지출될 것이다. 통일기금은 본의 법원에 등록하여 운영되며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이 기금을 관리한다. 이 기금의 행정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 기금의 이사회는 4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동등한 권리를 같게 된다. 기금의 최종적인 책임은 연방정부가 진다. 연방 재무장관은 기금의 연례회의에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예산결산의 부록으로 첨가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20, S. 533-534

문서 번호 82

2008년도 작센주 동부 재건 성과 보고서

2008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 재무부

내용_

연대협약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은 연대협약의 재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 매년 동부 재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 배분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따라 신연방주와 베를린 주정부는 매년 다음과 같은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인프라 시설 격차 극복의 경과
- 연방정부의 추가지원금과 특별기금의 사용내역
-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재정상황과 실질적인 채무 현황

출처_ http://www.lsf.sachsen.de/download/fortschrittsbericht_aufbau_ost_2008.pdf

문서 번호 83

동독 사회 시설과 연결된 구 채무 문제-발전과 해결

2005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용_

구 동독의 교육, 보건, 문화 등의 사회시설의 건설은 대부분 외상으로 융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7월 1일에 화폐, 경제, 사회연합이 설치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구 채무의 총합은 대략 50억 마르크에 달했다. 통일 후 동독의 지자체들이 사회 시설의 대다수를 인수했는데,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먼저 이러한 사회시설과 연결된 채무를 인지하지도 않았고, 변제하지도 않았다. 연방정부도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았다. 1996년 연방정부와 연방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채무의 일부를 인수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연방주가 갚아야 하는 채무는 대부분 구 동독의 정당과 대중 조직의 재산으로 지불될 계획이다.

1997년 3월 구 채무조정법이 실시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주 정부가 구 동독 정당 재산으로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법으로 규정된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의 재원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의 UMTS(이동통신) 허가 경매계획 때문에 남은 구 채무의 완불은 2035년에 아니라 2011년에 종결될 전망이다.

출처_ Monatsbericht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März 2005, S. 65-70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Monatsberichte/Publikationen_Migration/2005/03/Altschulden-fuer-gesellschaftliche-Einrichtungen-in-den-neuen-Laendern-Entstehung-und-abschliessende-Loesung-pdf.pdf?__blob=publicationFile&v=2

문서 번호 84

배상 및 보상급부법

1994년 9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수상, 연방 재무장관, 연방 내무장관, 연방 법무장관

내용_

이 법의 정식명칭은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 규정 및 점령권 또는 점령고권에 의한 몰수재산의 국가적 조정급부법에 따른 보상법(보상 및 조정급부법(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 - EALG)"이며, 총 10개의 법 또는 개정법을 포함하는 강령법이다. 이 법을 통해 재산권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즉 동독 정부에 의해 박탈된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통일조약에 의해 통일독일의 입법기관에서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던 소련 점령기간에 박탈된 재산에 대한 배상 문제가 규정되었다. 이 법은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 소유하였던 토지를 반환받지 못하는 원소유자들을 위한 배상문제를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원소유자에게 재산반환이 불가능할 때 원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정부가 그들에게 채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2004년 1월 1일이며 매년 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신연방지역의 주민 중에서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이전에 독일령에 속했던 동부유럽 지역으로부터 피난해 온 실향민으로 1990년 10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동독에 거주하였던 사람은 실향보상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동산의 경우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박물관 전시물과 같은 문화재의 경우 개인소유라고 하더라도 20년 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시되지 않은 소장품의 경우 연구자들에게는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65, S. 2624-2639

문서 번호 85

인구변동의 조건 하에서 인프라 시설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연방 내무부/독일 도시연구소의 조사연구

2010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 연방정부 내무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

내용_

연대협약 II가 종료되면 신연방주에 제공되는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을 위해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구조지원재원 또한 종결된다. 동시에 신연방주들의 사회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이들 지자체의 수입을 늘일 수 있는 새로운 재원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_ http://www.beauftragter-neue-laender.de/SharedDocs/Downloads/BODL/Themen/Demografie/expertise_finanzierung.pdf?__blob=publicationFile

문서 번호 86

도시재건과 주민참여-연방 교통건설 도시개발부

2009년

담당자 / 기관_ 건설과 공간계획을 위한 연방관청 산하 건설, 도시와 도시계획 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도시 발전에 관한 주민들의 평가, 빈 주택과 건물철거 정책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철거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 여부 그리고 선호하는 주거형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도시정비정책의 계획과 실천에 관한 정보, 주민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도시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참여 등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다. 나아가 구 동독지역의 도시재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협력문제에 관한 테제와 다른 도시재건 과정에 주민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http://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BMVBS/Forschungen/2009/Heft140_DL.pdf;jsessionid=514F01ED6E855D1015F4B753EBAB6B82.live2053?__blob=publicationFile&v=2

문서 번호 87

투자촉진법에 관한 연방정부의 실무지침

199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군청과 시청의 공무원 그리고 투자신청자를 위한 설명서로 작성된 것이다. 투자법은 신연방주의 국유재산에 대한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으로 인해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를 위해서는 특별한 투자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목적은 예를 들어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새로이 창출하는 것 또는 주택수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증명, 재정계획 그리고 완공시기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시와 군에서 위의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투자자가 해당관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무효화조항을 포함시킨다. 투자증명서의 발행을 거부당한 투자자는 이의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출처_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Heft 5, S. 186-188

문서 번호 88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 평가

2008년 10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내용_

이 평가서는 서문에서 동부 도시재건 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조사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부 도시재건과 서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각 연방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 지에 관해 비교 기술한다.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에는 지원대상이 된 기초자치단체, 도시 내에서의 재원분배, 현대화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도시건설개발 방안, 지역구분, 중점사안, 이 프로그램의 원칙과 목표, 활동영역, 조직형태와 협력구조, 참가자집단, 시민참여, 재원 등과 관련하여 이 프로그램이 지차체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전망을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것이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문서는 마지막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문제,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실행방안과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출처_ http://www.stadtumbau-ost.info/aktuelles/Evaluierungsbericht-klein.pdf

문서 번호 89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

2009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의원(기민당/기사당 사민당 원내단체)

내용_

기민당/기사당 그리고 사민당의 원내단체는 연방의회가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적어도 2016년까지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연방정부가 "동부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환영하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원을 배정하고, 그 재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연방의회에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구 동독지역의 도시중심에 보수되어야할 고건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연방주의 주정부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서 실행된 조치의 집행 상황에 대해 지역적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규합하여 연방정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6/12284

문서 번호 90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경제적 연계

2006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통건설 농업개발부

내용_

독일에는 구조적, 경제적으로 상이한 지역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연결하여 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개의 지역에서 지역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지역의 파트너쉽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 파트너쉽의 틀에서 3개의 부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것은 연방주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한 업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계, 협력의 장려와 협력을 위한 조건의 개선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기계와 금속산업, 식품가공과 물자수송 분야에 집중되었다.

출처_ http://www.regierung-mv.de/cms2/Regierungsportal_prod/Regierungsportal/de/vm/Themen/Landes-_und_Regionalentwicklung/Laenderuebergreifende_Zusammenarbeit/Ueberregionale_Partnerschaften/Projekt_Kooperation_und_Vernetzung_im_Nordosten/index.jsp#dud

문서 번호 9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과 인프라 정책의 틀에서 지자체 간의 협력 형태

2005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도시계획청

내용_

이 보고서는 지난 십년 간 지자체 간의 협력에 관해 설명하면서 보고서 작성 당시 진행되던 개혁논의도 함께 분석하였다. 지자체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된 분야는 주로 생활안정, 지역 경제와 지역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었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지자체 간의 협력 형태와 조직 그리고 그런 협력의 장점과 단점, 지자체 차원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문제, 경쟁력 문제, 사업효과의 평가문제 등 이 프로그램의 핵심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비터펠트-볼펜시, 우커마르트-토겔로우-에게신 지역의 네트워크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출처_

문서 번호 92

작센삼각지 메트로폴지역의 예를 통해서 본 신연방주의 광역 경제협력

2007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내용_

이 보고서는 먼저 "메트로폴지역"이라는 단어의 이론적, 개념적 틀을 설명하고, 신연방지역의 발전전망을 소개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과 작센 삼각지역과 같은 메트로폴지역이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갖게 되는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분야에서 실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유럽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출처_ http://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BMVBS/WP/2008/heft54_DL.pdf;jsessionid=A1B67AA66A09836CC0DFD3EEA5A236CA.live1042?__blob=publicationFile&v=2

문서 번호 93

초지역적 파트너쉽-지역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책임을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

2008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내용_

구 동독지역에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파트너쉽을 체결한 세 개의 모델지역이 있다. 그것은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북독/메트로폴지역, 베를린을 중심으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으로 이어지는 북동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으로 이어지는 작센삼각주 메트로폴지역 등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들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출처_ http://www.bbsr.bund.de/BBSR/DE/FP/MORO/Forschungsfelder/2008/UeberregionalePartnerschaften/DL_Regionen.pdf?__blob=publicationFile&v=2

문서 번호 94

초지역적 파트너쉽-공간계획의 모델

2008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통건설도시계획부

내용_

이 보고서에는 독일과 알프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협력체의 모델이 소개되어 있다. 구 동독지역에 존재하는 세 개의 지역협력 네트워크도 여기에 포함된다.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북독/메트로폴지역, 베를린을 중심으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으로 이어지는 북동 지역의 협력네트워크,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으로 이어지는 작센삼각주 메트로폴지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_ http://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BMVBS/MORO/3/moro3_4.pdf?__blob=publicationFile&v=2

문서 번호 95

세계화와 지역화 과정의 맥락에서 본 신연방주의 지역경제 지원

1995년 6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사회연구소, 프랑크푸르트대학

내용_

이 문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화와 지역화 그리고 기업, 독일의 생산요소의 지역적 분배형식, 신연방주의 경제지원정책 등이다. 1990년에서 1993년에 진행된 1기에는 신연방주를 위한 공동체적 지역 구조정책, 그리고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2기에는 유럽공동체의 구조정책이 소개되었다.

출처_ http://www.fastev-berlin.org/glokalisierung_eu-ddr_1995.pdf

문서 번호 96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대한 자료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 내무부, 연방의회

내용–

연방 내무부에 의해 작성된 연방정부의 보고서는 연방의회에 토론자료로 제출되었으며 총 600페이지에 달한다. 9장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1장에서 통일의 길, 2장 외교 안보정책, 3장 국가기구 헌법 행정과 사법, 4장 형법과 범법행위의 처리, 5장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통합의 완수, 6장 교육, 학술과 연구, 7장 가족, 여성, 청소년정책 및 노인정책, 8장 문화, 언론, 스포츠, 9장 국제사회에서의 독일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는 총 200개의 표와 그림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통일과정의 초기상황 그리고 1993년 6월 30일까지 신연방주의 발전현황에 관해 설명한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문서 번호 97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대한 자료
1995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 내무부, 연방의회

내용_

독일 연방정부의 내무부는 199년 2월에 처음으로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건설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후에 100개 이상 도표를 포함한 500페이지의 후속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기존의 자료집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995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새로운 자료와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 후속 자료집을 통해 신연방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 후 5년 간 연방정부와 연방 그리고 지자체들에 의해 집행된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집에는 그 동안 달성한 성과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문서 번호 98

2010 동부 혁신지도-풍부한 아이디어와 확실한 장래

2010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연구부

내용_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가 1990년 이후 신연방주를 위해 취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이다. 그 내용을 보면 신연방주의 대학과 연구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1991년에서 1996년까지 대학과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이라는 모토 하에 2,430억 마르크), 대학특별 프로그램(1996년에서 2000년 사이 36억 마르크),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구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대학 학술 프로그램(2001년에서 2003년 7천 2백만 마르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천 5백만 마르크), 혁신연구단(1994-2000,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 간의 협력 강화와 대학의 구조 강화), 구 동독지역의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작업의 지원(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산학협력의 강화를 위해 2억 마르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출처_ http://www.bmbf.de/pub/innovationsatlas.pdf

문서 번호 99

2002년 경과 작센 보고서

2002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재무부

내용_

연대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은 매년 "동부 재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대협약 재원의 사용내역에 관해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연방정부와 신연방주의 재정균형 배분법의 11조 4항에 따하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해마다

-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의 경과
- 특별수요에 의해 지원받은 금액과 연방 추가지원의 사용내역
- 신연부와 지자체의 순채무의 상한액을 포함한 제정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002년의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 2002년에는 낙후한 기존의 인프라 시설을 보수 개선의 수요에 따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의 제거를 위해서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위해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은 규정에 따라 전액 집행될 수 있었다.
- 지난 몇 년 간 작센주에서는 서독의 연방주에서 훨씬 많은 금액이 인프라 시설에 투자되었다. 특히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출처_ http://www.smf.sachsen.de/download/fortschrittsbericht_aufbau_ost_2002.pdf

문서 번호 100

베를린을 포함 신연방주에서 2014-2020의 기간에 유럽 구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실무방안

2010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경제기술부

내용_

이 조사보고서에는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경제발전, 신연방주와 베를린에서 진행된 유럽연합의 구조정책과 국가적 지원정책, 2000-2006년 사이에 선별된 영역에서 본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의 효과(상업 투자지원, 투자지원, 연구 개발, 경제와 도시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지원, 교통 인프라, 환경, 노동시장 그리고 인력개발) 등과 같은 주제 외에 2000-2006년,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유럽 구조기금의 효과와 2014-2020년 사이의 유럽구조기금의 예상 효과 그리고 남은 과제와 실행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_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Publikationen/anforderungen-und-handlungsoptionen-einsatz-europaeische-strukturpolitik,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